

KREI

일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수입보험

김미복 · 김태후 · 하인혜 · 최경환



KREI

일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수입보험

김미복·김태후·하인혜·최경환



연구 담당

김미복 | 연구위원

김태후 | 부연구위원

하인혜 | 연구원

최경환 | 한국농촌복지연구원 원장

R872 연구자료-1

일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수입보험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9. 10.

발 행 인 | 김홍상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세일포커스(주)

I S B N | 979-11-6149-368-8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제1장 들어가며 1

제2장 일본 농업인재해보험

1. 노재보험: 농업인을 위한 특별가입제도 11

2. JA공제 23

3. 농림수산성의 농작업안전대책 25

4. 소결: 문제점 및 시사점 27

제3장 일본 농업경영수입보험

1. 수입보험 추진 경과 31

2. 수입보험제도의 내용 35

3. 기존 농업재해보상제도(농업공제)의 수정 60

부록

농업경영수입보험사업 실시요령 77

참고문헌 163

표 차례

제2장

〈표 2-1〉 최근의 노재보험 특별가입자 수(농업) 추이	16
〈표 2-2〉 급부기초일액·보험료 알람표	20
〈표 2-3〉 노재보험 급부 내역	21
〈표 2-4〉 연령대별 농작업중상해공제 가입한도	24
〈표 2-5〉 특별농기구상해공제 대상 농기구	25
〈표 2-6〉 특정농기구상해공제 가입한도	25
〈표 2-7〉 농작업 사망사고 발생 상황(건수)	26
〈표 2-8〉 산업별 10만 명당 사망사고 발생 건수 추이 비교	26
〈표 2-9〉 요인별 농작업 사망사고 발생 상황(2017)	27

제3장

〈표 3-1〉 청색신고와 백색신고의 기장방법 및 장부의 상이(소득세의 경우)	36
〈표 3-2〉 청색신고 실적 기간별 보험방식 보상한도액	36
〈표 3-3〉 농업소득자의 청색신고자 수 추이	37
〈표 3-4〉 수입감소 정도에 따른 보전 상황	44
〈표 3-5〉 기준수입에 관한 수입감소영향완화대책(나라시대책)과 수입보험의 비교	45
〈표 3-6〉 보험방식과 적립방식의 차이	45
〈표 3-7〉 타 제도에서의 보상한도 및 지불률	47
〈표 3-8〉 보상한도별 보험료율 및 위험단계별 보험료율	49
〈표 3-9〉 농업인이 부담할 금액	51
〈표 3-10〉 수입감소 정도에 따른 보전금액	52
〈표 3-11〉 수입감소를 보전하는 기능을 갖는 유사제도	58

〈표 3-12〉 인수방식의 개요	63
〈표 3-13〉 발작물공제 및 과수공제의 보상비율 확충	65
〈표 3-14〉 농업공제 수정 내용의 개요	75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1〉 노재보험 특별가입 절차	16
-----------------------------	----

제3장

〈그림 3-1〉 수입보험 대상수입의 산정방법	40
〈그림 3-2〉 수입보험제도의 보전방식	43
〈그림 3-3〉 수입보험제도에서의 보상한도액과 지불률	47
〈그림 3-4〉 수입보험 가입 및 지불 등의 프로세스(개인의 경우)	56
〈그림 3-5〉 정부재보험 실시 체제	57
〈그림 3-6〉 유사제도와와의 관계	59
〈그림 3-7〉 일필반손특례(신설)의 구조	65

제1장
들어가며



1

들어가며¹⁾

- 농업은 타 산업에 비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 이는 자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산업적 특성 때문임.
 - 자연조건의 호·불호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변동하나, 인력으로 자연의 영향력을 축소·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영농 과정에서 비료, 농약, 농기계 등 각종 농자재를 이용하는데, 자칫 오·남용이나 오작동 및 부주의 등이 발생하는 경우 농업 종사자는 치명적인 재해를 입게 됨.
 - 농작업 특성상 육체적 노동이 불가피하여 동일한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하다보면 직업성 질병에 걸리기 쉬움.
 - 농산물은 기후 조건에 의해 풍흉이 결정되고 변질되거나 부패하기 쉬워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특성상 수급 조절이 어려워 농산물 가격 변동이 심해

1) 본 자료집은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보험정책 발전 방안에서 위탁한 최경환(2019)의 “주요국 농업인안전보험 및 일본의 수입보험” 원고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함.

농업소득의 불안정을 초래함.

- 농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은 더 커지고 있어 농가 수준에
서의 대응은 더 어려워졌음.

○ 농업경영 과정에서 당면하는 다양한 위험(재해)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농업인²⁾은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 대처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으며, 심한 경우 폐농으로까지 이어짐.

- 내재해성 품종 선택부터 철저한 영농관리 등으로 가뭄, 호우, 우박,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에 대응하나 불가항력적인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제
적 손실을 막을 수 없음.
- 여러 작목의 다각경영으로 특정 작목의 실패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분산함
으로써 농업경영 불안정을 완화하고 있으나 자연조건에 따른 풍흉과 이로
인한 농산물 시장의 변동에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각종 농기계를 사용함으로써 농작업이 한층 수월해졌으나 고장이나 파손
및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체상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농업경영의 불안정을 심화시킴.
- 농가 나름대로 영농계획을 세워 농업경영 과정에서의 각종 재해를 제거·회
피·완화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나 농가 개별적으로 대응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농업경영 상의 각종 위험을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농
업보험이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농업보험을 개발하여 시
행하고 있음.

²⁾ 농업인은 농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을 통칭함.

- 보험은 동일적이거나 유사한 위험(재해)에 노출된 다수가 모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다수가 분담(위험분산)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것임.
-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각종 농업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로 제도를 수정하고 있음.
- 보험시장이 발달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농업보험은 국가가 적극 관여하는 정책보험으로 실시되고 있음.
 - 우박보험 등이 일부 민영보험으로 실시되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농업보험은 정책보험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농업위험의 특성상 시장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임.³⁾

○ 농업보험은 각국의 농업 여건에 맞추어 개발·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농업보험이 존재함.

- 보장 대상이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 인(人)보험(생명보험)과 물(物)보험(손해보험)으로 구분됨.
 - 인보험에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등이 해당함.
 - 물보험에는 농축산물 대상 보험들과 농기계보험 등이 해당함.
- 보장 대상이 품목인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원예(시설)보험, 가축재해보험 등으로 구분됨.
 - 이 밖에 초지보험, 양봉보험, 양식수산물보험 등도 있음.
- 보장 대상이 생산량이나 가격(소득)이냐에 따라 수량보험과 가격보험 및 소득(조수입)보험으로 구분됨.
- 이 밖에도 지역보험 및 지수보험(강우, 생장) 등이 있음.

³⁾ Barry K. Goodwin and Vincent H. Smith(1995)(최경환·박대식 2001: 33-34).

- 농업보험은 국가마다 실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명명되기 때문에 동일한 보험 내용이라도 명칭은 다를 수 있으며, 여건 변화에 따라 보험 내용을 수정할 경우 명칭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유형 구분은 예시 정도임.

○ 우리나라도 가축재해보험(1997년)을 시작으로 농작물재해보험(2001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2012년), 농업수입보장보험(2015년) 등이 실시되고 있음.

- 가축재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은 일부 품목(축종)을 제외하고 가입률이 저조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제도를 실시한 지 20년 가까이 되면서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농업수입보장보험은 아직 시범사업 단계로 시범사업을 통해 계속 제도를 수정·보완해야 할 것임.

- 농업인안전재해보험도 2012년부터 보험 형태를 갖추고 2015년에는 근거 법령이 제정·시행됨으로써 제도적 기반은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보장 내용이 산재보험에 비해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 보장 내용이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에 비해 미흡하여 농업인들은 보장수준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함.
- 더욱이 국가가 농업인 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기는 하나 민영 손해보험사인 농협생명의 일반 보험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사회보험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오래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선진국의 제도들을 벤치마킹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 벤치마킹은 농업인안전재해보험뿐만 아니라 농업보험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업보험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임.

- 이 연구에서는 사회보험 성격 강화에 대한 요구가 강한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일본 사례를 검토하고자 함.
 - 일본은 우리 농업 여건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함.

- 아울러 우리나라 농업보험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농업보험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서는 올해부터 농업수입보장보험을 실시하는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기로 함.
 - 그동안 큰 변동 없이 실시되던 일본 농업보험이 금년 1월부터 농업수입보장보험을 시작하였는데, 그 배경과 준비 과정 및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수입보장보험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유용할 것임.

제2장

일본 농업인재해보험



2

일본 농업인재해보험

1. 노재보험: 농업인을 위한 특별가입제도⁴⁾

- 일본의 노재보험제도는 노동자의 업무상 사유 또는 통근에 따른 노동자의 상병(傷病)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험금 지급으로 피해노동자의 사회복귀 촉진 등의 사업을 하는 제도임.
 -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의해 충당되고 있음.
- 노재보험은 원칙적으로 1인이라도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업종의 규모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적용됨.
 - 노재보험에서의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에 사용되는 자로 임금을 받는 자'를 말하며, 노동자라면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등의 고용 형태는 관계없음.

4) 厚生労働省・都道府県労働局・労働基準監督署. 2019. 3. 労災保険: 農業者のための特別加入制度のしおり.

○ 일본 노재보험의 특별가입제도

- 노재보험은 본래 노동자의 업무 또는 통근에 따른 부상, 질병, 장애, 사망에 대해 보험급부를 하는 제도이지만, 노동자 이외에도 그 업무의 실태, 재해의 발생상황 등으로 보아 특히 노동자에 준하여 보호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임의가입을 인정하는 것이 특별가입제도임.

○ 농업인의 경우 다음의 3가지 구분 중 하나인 경우에 특별가입할 수 있음.

- ① 특정농작업종사자 ② 지정농업기계작업종사자 ③ 중소기업주 등.

가. 특별가입할 수 있는 범위

(1) 특정농작업종사자

○ 특정농작업종사자란 다음의 ①~③의 전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① 「연간 농업생산물(축산 및 양잠에 관한 것을 포함)의 총 판매액이 300만 엔 이상」 또는 「경영경지면적이 2ha 이상」의 규모(이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영농집단등을 포함)를 소유하고 있음.
- ②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배·채취, 가축(가금 및 꿀벌을 포함)·누에의 사육 작업의 어느 것을 하는 농업인(노동자 이외의 가족종사자등을 포함)임.
- ③ 다음의 어느 작업에 종사함.
 - (가) 동력에 의해 구동(驅動)하는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나) 높이가 2m 이상인 곳에서의 작업
 - (다) 사일로, 방 등의 산소결핍위험장소에서의 작업

(라) 농약 살포 작업

(마) 소, 말, 돼지에 접촉하거나 또는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업

(2) 지정농업기계작업종사자

○ 지정농업기계작업종사자란 농업인(노동자 이외의 가족종사자 등을 포함)로 다음의 기계를 사용해 토지의 경작, 개간 또는 식물의 재배, 채취작업을 하는 사람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동력경운기 기타의 농업용 트랙터 ② 동력구굴기 ③ 자동전식기 ④ 자동 스피드 스프레이, 기타의 자동방제용기계 ⑤ 자동동력예취기, 콤파인, 기타의 자동수확용기계 ⑥ 트랙터 기타의 자동운반용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⑦ 다음의 정치식(定置式) 기계 또는 휴대식 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력양수기 · 동력예취기 · 동력 커터 · 동력적채기 · 동력탈곡기 · 동력전정기 · 동력전지기 · 체인 톱 · 단궤조식운반기 · 컨베이어 ⑧ 무인항공기 (농약, 비료, 종자, 혹은 제설제의 살포 또는 조사에 이용하는 것에 한함)
---	---

(3) 중소사업주 등

○ 중소사업주 등이란 농업의 경우에는 상시 300인 이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노동자 이외에 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특별가입할 수 있는 사업주의 가족종사자 등)을 말함.

- 노동자를 연간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1년간에 100일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함.

※ 「특정농작업종사자」, 「지정농업기계작업종사자」, 「중소사업주등」은 중복해서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 가입해야 함.

나. 특별가입 절차

(1) 특정농작업종사자 또는 지정농업기계작업종사자로 가입하는 경우

○ 특별가입단체로서 승인되어 있는 단체(JA, 현중앙회 등)에 신청하며, 가입수속은 그 단체가 함.

※ 가까운 JA·현중앙회가 특별가입단체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도부현 노동국 또는 노동기준감독서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가입수속은 가입자의 성명, 작업의 구체적 내용, 업무경력 및 희망하는 급부 기초일액 등을 기입한 신청서를 특별가입단체가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이하 「감독서장」이라고 함)을 경유하여 도도부현노동국장(이하 「노동국장」이라고 함)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 또, (1)에서 새로이 특별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가입단체에서 원칙적으로 사진첨부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여 본인 확인을 함.

※ 이미 특별가입한 사람이 성명이나 작업내용 등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를 특별가입단체로부터 감독서장을 경유하여 노동국장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주 등으로서 가입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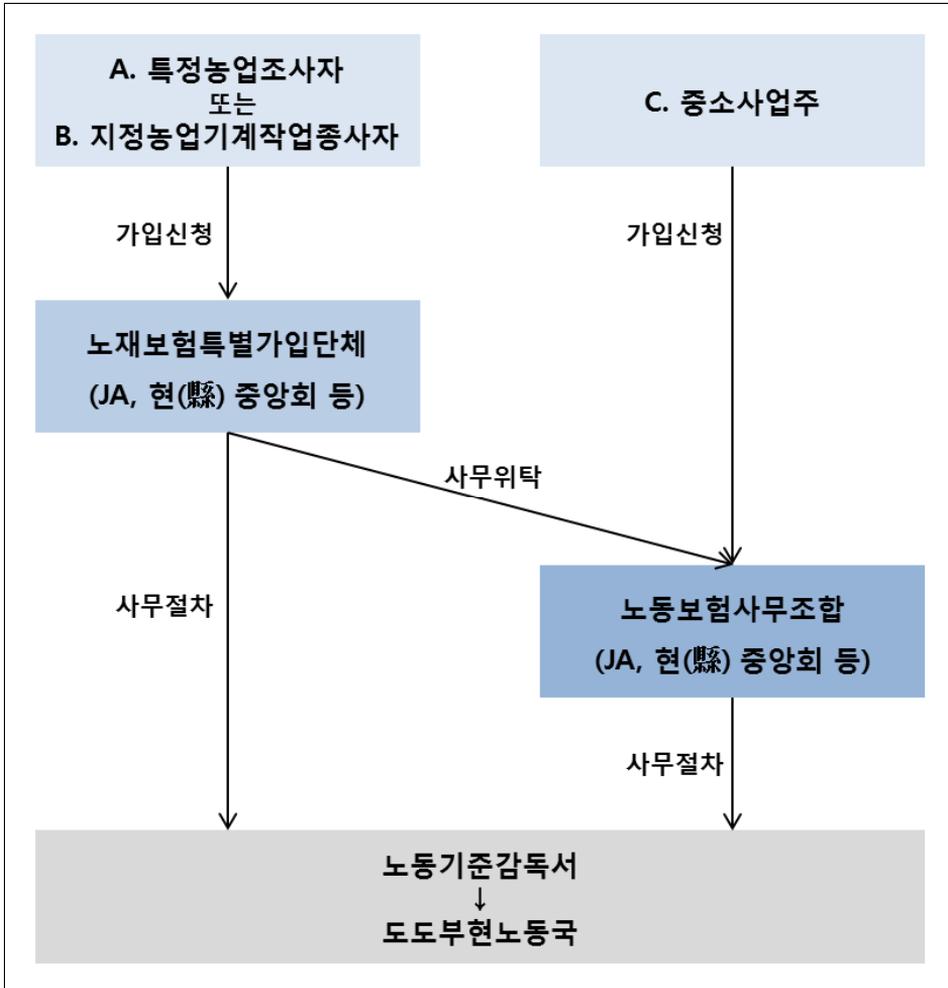
○ 농업인이 중소기업주 등으로 특별가입하기 위해서는 ① 고용하는 노동자에 대해 노동보험관계가 성립해 있을 것, ② 노동보험의 사무처리를 노동보험사 무조함에 위탁하고 있을 것 등 2가지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음.

○ 가입의 범위

- 원칙: 사업주 본인 포함, 가족종사자, 노동자 등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전원을 포괄하여 특별가입 신청을 할 필요가 있음.
- 예외: 질병요양 중, 고령 기타 사정에 의해 실제로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주는 포괄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신청수속을 할 때는 가입자의 성명,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업무경력 및 희망하는 급부기초일액 등을 「특별가입신청서」에 기재하고, 노동보험사무조합을 통해 감독서장을 경유하여 노동국장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음.

그림 2-1 노재보험 특별가입 절차



주: 특정농업종사자 또는 지정농업기계작업종사자는 특별가입단체를 통해 가입신청을 하고, 중소기업주는 노동보험사무조합을 통해 가입신청을 함.

자료: 農林水産省·厚生労働省. “必見! 農業者の皆さん 労災保険の特別加入をご存じですか!!”

표 2-1 최근의 노재보험 특별가입자 수(농업) 추이

연도	2015	2016	2017
특별가입자 수(명)	128,297	128,947	129,339

자료: 農林水産省. 2019. 1. 28. 農作業安全対策について. p. 15.

다. 보상 대상이 되는 범위

(1) 업무재해

○ 업무재해에 대해서는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험급부가 이루어짐.

① 특정농작업종사자

○ 농업인이 농작업장에서 하는 경작 등의 작업(「토지의 경작이나 개간」, 「식물의 재배나 채취」, 「가축(가금 및 꿀벌을 포함)이나 누에의 사육 작업」중 다음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그 작업에 직접 부대하는 행위를 포함)

- (가) 농작업장에서 동력에 의해 구동하는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작업
- (나) 농작업장에서 높이가 2m 이상인 곳에서 하는 작업
- (다) 농작업장에서 소·말·돼지에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업
- (라) 농작업장에서의 산소결핍위험장소에서 하는 작업
- (마) 농작업장에서 농약을 살포하는 작업

※ 양계나 양봉 등에서 ‘가~마’의 작업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는 부상 등(꿀벌에 쏘이는 등)이 발생해도 보험급부는 이루어지지 않음.

② 지정농업기계작업종사자

- (가) 농업인이 농작업장에서 지정농업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작업 및 여기에 직접 부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나) 농업인이 지정농업기계를 농작업장과 격납장소와의 사이에서 운전 또는 운반하는 작업(묘, 방제용 약, 퇴비 등을 공공육묘시설 등으로부터 농작업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포함) 및 여기에 직접 부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중소기업주 등

- (가) 특별가입신청서의 「업무 내용」란에 기재된 노동자의 소정 노동시간 (휴식시간을 포함)내에 특별가입한 사업을 위해 하는 행위 및 여기에 직접 부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나) 노동자의 시간 외 노동 또는 휴일노동에 따라 취업하는 경우
- (다) '가' 또는 '나'의 전후로 행해지는 업무(준비·마무리 행위를 포함)를 중소기업주 등만으로 행하는 경우
- (라) '가', '나', '다'의 취업시간 내에서의 사업장시설의 이용 중 및 사업장 시설 내에서 행동 중인 경우
- (마) 사업 운영에 직접 필요한 업무(사업주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제외)를 위해 출장하는 경우
- (바) 통근 도중에서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
 - (ㄱ) 노동자의 통근용으로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기관 이용 중
 - (ㄴ) 돌발사고(태풍, 화재 등)에 의한 예정 외의 긴급한 출근 도중
- (사) 사업 운영에 직접 필요한 운동경기회 기타 행사에 대해 노동자(업무 수행성이 인정되는 자)를 동반하여 출석하는 경우

(2) 통근재해

① 특정농작업종사자 또는 지정농업기계작업종사자의 경우

○ 통근재해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음.

- 단, 농작업을 위해 농업용 트랙터·콤바인 등에 승차하여 차고로부터 농작업장으로 향하는 도중에 부상한 경우는 업무재해로서 보상대상이 됨.

② 중소기업주 등의 경우

○ 일반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보상됨.

- 구체적으로는 취업에 관해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①~③의 이동 중에 재해가 일어난 경우에 보상대상이 됨.

- ① 주거와 농작업장과의 사이의 왕복
- ② 취업의 장소로부터 타 작업 장소로의 이동
- ③ 부임 전 주거와 귀성 전 주거와의 사이의 이동

○ 합리적인 경로를 일탈·중단한 후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음.

- 예외로서 그 일탈·중단이 일용품의 구매 등 일상생활상 필요한 행위를 중단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최소한도로 이루어진 경우는 합리적인 경로로 환원한 후의 이동은 통근으로 인정됨.

라. 급부기초일액·보험료

○ 급부기초일액이란 보험료와 휴업(보상)급부 등의 급부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것으로 신청에 근거하여 노동국장이 결정함.

- 급부기초일액이 낮은 경우는 보험료가 저렴하게 되지만, 그만큼 휴업(보상)급부 등의 급부액도 적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유의하여 적정한 금액을 신청해야 함.

○ 급부기초일액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는 사전(3월 2일~3월 31일)에 「급부기초일액변경신청서」를 감독서장을 경유하여 노동국장 앞으로 제출함으로써 익년도부터 변경할 수 있음.

- 또, 노동보험의 연도갱신기간 중에도 당년도에 적용되는 급부기초일액의 변경이 가능함.
- 단, 재해발생 전에 신청하는 것이 전제가 됨. 급부기초일액의 변경신청 전에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는 당년도의 급부기초일액 변경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급부기초일액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사람은 사전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함.

표 2-2 급부기초일액·보험료 일람표

단위: 엔

급부기초일액 A	보험료 산정기초액 B=A×365일	연간 보험료		
		특정농작업종사자 B × 9/1,000	지정농업기계작업종사자 B × 3/1,000	중소사업주 등 B × 13/1,000
25,000	9,125,000	82,125	27,375	118,625
24,000	8,760,000	78,840	26,280	113,880
22,000	8,030,000	72,270	24,090	104,390
20,000	7,300,000	65,700	21,900	94,900
18,000	6,570,000	59,130	19,710	85,410
16,000	5,840,000	52,560	17,520	75,920
14,000	5,110,000	45,990	15,330	66,430
12,000	4,380,000	39,420	13,140	56,940
10,000	3,650,000	32,850	10,950	47,450
9,000	3,285,000	29,565	9,855	42,705
8,000	2,920,000	26,280	8,760	37,960
7,000	2,555,000	22,995	7,665	33,215
6,000	2,190,000	19,170	6,570	28,470
5,000	1,825,000	16,425	5,475	23,725
4,000	1,460,000	13,140	4,380	18,980
3,500	1,277,500	11,493	3,831	16,601

주 1) 특별가입자 전원의 보험료산정기초액을 합계한 금액에 천 엔 미만의 단수가 생길 때는 단수를 절사함.

2) 2018년 현재 보험료율은 특정농업조사자 0.9%, 지정농업작업종사자 0.3%, 중소기업주등 1.3%임.

자료: 厚生労働省·都道府縣労働局·労働基準監督署, 2019. 3. 労災保険: 農業者のための特別加入制度のしおり.

마. 급부의 종류

○ 특별가입자에 대한 보험급부의 종류는 <표 2-3>과 같음.

표 2-3 노재보험 급부 내역

보험급부의 종류 ¹⁾	지급 사유	급부 내용	특별지급금	구체적 사례 (급부기초일액 1만 엔인 경우)
요양보상급부 요양급부	업무재해 또는 통근재해에 의한 상병에 대해 병원 등에서 치료하는 경우	필요한 치료를 무료로 받음 ²⁾	특별지급금은 없음	(급부기초일액과는 관계없이) 필요한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음
휴업보상급부 휴업급부	업무재해 또는 통 근재해에 의한 상 병의 요양을 위해 노동할 수 없는 날 이 4일 이상 된 경 우 ³⁾	휴업 4일째 이후, 휴업 1일에 대해 급부기초일액의 60% 상당액이 지 급됨	휴업특별지급금은 휴업 4일째 이후 휴업 1일당 급부 기초일액의 20% 상당이 지급됨	(20일 휴업의 경우) ① 휴업(보상)급부 1만엔×60%×(20일-3일) =10만 2천 엔 ② 휴업(보상)특별지급금 1만엔×20%×(20일-3일) =3만 4천 엔
장해보상급부 장해급부	(장해보상연금· 장해연금) 업무재해 또는 통 근재해에 의한 상 병이 치료한 후에 장해등급 제1급 부터 제7급까지 에 해당하는 장해 가 남은 경우 (장해보상일시 금·장해일시금) 업무재해 또는 통 근재해에 의한 상 병이 치료한 후에 장해등급 제8급 부터 제14급까지 에 해당하는 장해 가 남은 경우	장해(보상)연금의 경우, 제1급은 급 부기초일액의 313일분~제7급 은 급부기초일액 의 131일분이 지 급됨 장해(보상)일시금 의 경우, 제8급은 급부기초일액의 503일분~제14 급은 급부기초일 액의 56일분이 지 급됨	장해특별지급금 은 제1급 342만 엔~제14급 8만 엔이 일시금으로 지급됨	(제1급의 경우) ① 장해(보상)연금 1만 엔×313 = 313만 엔 ② 장해특별지급금(일시금) 342만 엔
유족보상급부 유족급부	(유족보상연금· 유족연금) 업무재해 또는 통 근재해에 의해 사망 한 경우(연금액은 유족의 수에 따라 다름)	유족의 수가 1인인 경우, 급부기초일 액의 153일분 또는 175일분이 지급됨 ⁴⁾	유족특별지급금 은 유족의 수에 관 계없이 300만 엔 이 일시금으로 지 급됨	(유족(보상)연금에서 유족이 4인인 경우) ① 유족(보상)연금 1만 엔×245일=245만 엔 ② 유족특별지급금(일시금) 300만 엔

(계속)

보험급부의 종류(주1)	지급 사유	급부 내용	특별지급금	구체적 사례 (급부기초일액 1만 엔인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유족일시금) (a) 유족보상연금, 유족연금의 수급 자격을 가진 유족이 없는 경우 (b) 유족보상연금,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실권하고, 아울러, 그 외에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자격을 가진 자가 없는 경우에, 이미 지급된 연금의 합계액이 급부기초일액의 1,000일분에 달하지 않은 경우	2인인 경우 201일분, 3인인 경우 223일분, 4인 이상의 경우 245일분이 지급됨 유족(보상)일시금의 경우로 왼쪽란의 (a)의 경우에는 급부기초일액의 1,000일분이 지급됨. (b)의 경우에는 급부기초일액의 1,000일분에서 이미 지급된 연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이 지급됨		(유족(보상)일시금 지급사유 (a)로 유족이 4인인 경우 ① 유족(보상)일시금 1만 엔×1,000일 =1,000만 엔 ② 유족특별지급금(일시금) 300만 엔
장제료 장제급부	업무재해 또는 통근재해에 의해 사망한 사람의 장제를 하는 경우	31만5천엔에 급부기초일액의 30일분을 가산한 금액 또는 급부기초일액의 60일분 중 높은 쪽이 지급됨	특별지급금은 없음	① 31만5천 엔+(1만 엔×30일) = 61만 5천 엔 ② 1만 엔×60일=60만 엔 높은 금액인 ①이 지급됨
상병보상연금 상병연금	업무재해 또는 통근재해에 의한 상병이 요양개시 후 1년 6개월을 경과한 날에 (a)상병이 치료되지 않은 것 (b) 상병에 의한 장애 정도가 상병등급에 해당할 것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동일 후 어느 것이나 해당하게 된 경우	제1급은 급부기초일액의 313일분, 제2급은 277일분, 제3급은 245일분이 지급됨	상병특별지급금은 제1급은 114만 엔, 제2급은 107만 엔, 제3급은 100만 엔이 일시금으로 지급됨	(제1급에 해당하는 경우) ① 상병(보상)연금 1만 엔 × 313일=313만 엔 ② 상병특별지급금(일시금) 114만 엔
개호보상급부 개호급부	업무재해 또는 통근재해	(상시개호의 경우) 개호의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105,290엔(165,150엔)을 상한)이 지급되지만, 친족등의 개호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개호 비용이 지출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출한 금액이 57,190엔(70,790엔)을 밑도는 경우는 일률정액으로 57,190엔(70,790엔)이 지급됨 (수시개호의 경우) 개호의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52,650엔(165,150엔)을 상한)이 지급되지만, 친족등의 개호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개호 비용이		

보험급부의 종류(주1)	지급 사유	급부 내용	특별지급금	구체적 사례 (급부기초일액 1만 엔인 경우)
		지출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출한 금액이 28,600엔(35,400엔)을 밑도는 경우는 일률정액으로 28,600엔(35,400엔)이 지급됨 ⁵⁾		

- 주 1) 「보험급부의 종류」란의 상단은 업무재해, 하단은 통근재해에 대해 지급되는 보험급부의 명칭임.
 2) 원칙적으로 급부의 범위는 건강보험에 준거하고 있음.
 3) 휴업(보상)급부에 대해서는 특별가입자의 경우 소득상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요양을 위한 보상의 대상이 되어 있는 범위(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업무 또는 작업에 대해 전부 노동 불능일 필요가 있음. 전부노동불능이란, 입원중 또는 자택침상가료중 또는 통원가료중으로, 보상의 대상이 되어 있는 범위(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업무 또는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임.
 4)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1인이며, 55세 이상 또는 일정 장애 상태에 있는 처(妻)의 경우에는 급부기초일액의 175일분이 지급됨.
 5) 표에서의 금액은 2019년 3월 1일 현재임. ()의 금액은 2109년 4월 1일 개정예정액임.

자료: 厚生労働省·都道府縣労働局·労働基準監督署, 2019. 3. 労災保険: 農業者のための特別加入制度のしおり.

2. JA공제

○ JA공제는 일본농업협동조합그룹 중 공제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다양한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민영보험이기 때문에 국고보조는 없음.

○ 갑작스런 재해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에 대비한 상해공제 상품도 다양하게 구비하여 판매하고 있음.

- 상해공제⁵⁾ 상품은 크게 8가지인데 그 중 2가지가 농작업재해에 대한 공제임.
 - 보통상해공제 - 일상생활 전반의 불의의 사고 대비
 - 농작업중상해공제 - 농작업 중의 사고 대비
 - 특정농기구상해공제 - 농기구 사용에 따른 사고 대비
 - 취업중상해공제 - 취업 중 사고 대비
 - 교통사고상해공제 - 교통사고 대비

⁵⁾ JA共済. 2019. 4. 傷害共済-突然の災害による死亡・ケガに備えられる充實のプラン(리플릿).

- 여행상해공제 - 여행 중의 사고 대비
- 임시작업상해공제 - 임시작업 중의 사고 대비

○ 농작업중상해공제

- 본인은 물론 그 가족, 고용된 사람들이 농작업 중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 공제금을 지불함.
- 기명피공제자확정특약을 부가하면 집락영농·농업법인의 오퍼레이터 등의 농업종사자를 개별적으로 보장할 수 있음.
- 0세부터 99세까지 가입할 수 있음.
- 연령에 따른 가입한도가 정해져 있음.

표 2-4 연령대별 농작업중상해공제 가입한도

공제금액 \ 가입연령	0세~69세	70세~80세	81세~99세
사망공제금액	1,000만 엔	500만 엔	50만 엔
부위·증상별 치료공제금	5,000엔	2,000엔	2,000엔

주: 단체가입의 경우는 가입한도가 다름. 위의 표 외에 상해공제는 통산가입한도가 있음.
 자료: JA共濟. 2019. 4. p. 4.

○ 특정농기구상해공제

- 계약된 트랙터, 탈곡기, 콤바인 등 농업기계의 사공에 의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 공제금을 지불함.
- 이 공제에서 인수할 수 있는 주요 농기구의 범위는 아래 <표 2-6>과 같음.

표 2-5 특별농기구상해공제 대상 농기구

급별	주요 기종명
1급	발전기, 로터리(부속기), 전식기, 브로드캐스터(부속기), 건조기, 정곡(미)기, 바인더, 동력분무기 등
2급	보행용 트랙터, 예초기, 자동곡류수확기, 탈곡기, 매갈이기, 자동동력분무기, 자동예취기, 고소작업차 등
3급	승용트랙터, 자동스피드스프레어, 자탈형콤바인, 사료세단기, 승용식곡류수확기, 승용식예취기, 자동포레지하비스터, 승용식동력분무기, 트레처 등

자료: JA共濟. 2019. 4. p. 5.

표 2-6 특정농기구상해공제 가입한도

공제금액	가입연령	연령에 관계없이
사망공제금액		1,000만 엔
부위·증상별 치료공제금액		5,000만 엔

주: 상기 외에 상해공제에는 통산가입한도가 있음.

자료: JA共濟. 2019. 4. p. 5.

3. 농림수산성의 농작업안전대책⁶⁾

○ 농림수산성은 농작업 과정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농림수산성이 농작업안전대책으로 추진하는 사항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음.
 - 전국농작업안전확인운동
 - 농작업안전 계발 자료
 - 농작업사망사고 조사
 - 농작업안전관계통지
 - 열중증 대책
 - 농업인을 위한 노재보험의 특별가입제도
 - 농업기계·농작업 안전 연수
 -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보급
 - 형식검사·안정성검사 등

⁶⁾ 農林水産省 農業安全對策(www.maff.go.jp/j/seisan/sien/sizai/s_kikaika/anzen/index.html).

○ 2017년도 농작업사고 발생 상황⁷⁾

- 2017년 농작업사고 사망자 수는 304명으로 전년에 비해 8명이 감소함.
- 그렇지만 농업취업 인구 당 농작업 사고 사망자 수는 증가경향이며, 80세 이상이 약 4할을 차지함.

표 2-7 농작업 사망사고 발생 상황(건수)

연도	65세 미만	65~80세 미만	80세 이상	계
2008	78	190	106	374
2009	84	203	121	408
2010	77	187	134	398
2011	85	160	121	366
2012	72	140	138	350
2013	77	152	120	350
2014	55	150	145	350
2015	54	126	158	338
2016	58	135	119	312
2017	47	128	128	304

자료: 農林水産省. 2019. 1. 28. 農作業安全對策について. p. 1.

표 2-8 산업별 10만 명당 사망사고 발생 건수 추이 비교

연도 산업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산업	2.0	1.7	1.9	1.6	1.7	1.6	1.7	1.5	1.4	1.5
건설업	8.0	7.2	7.3	6.8	7.3	6.9	7.5	6.5	6.0	6.5
농업	12.5	14.1	15.3	14.1	13.9	14.6	15.4	16.1	16.2	16.7

주: 사망자수 농작업사망사고조사(농림수산성), 사망재해보고(후생노동성), 취업인구 농업센서스, 농업구조동태조사(농림수산성), 노동력조사(총무성)

자료: 農林水産省. 2019. 1. 28. 農作業安全對策について. p. 1.

⁷⁾ 農林水産省. 2019. 1. 28. 農作業安全對策について.

표 2-9 요인별 농작업 사망사고 발생 상황(2017)

요인별		발생 건수 (비율)
농업기계작업 관련 사고	승용형 트랙터	92 (30.3)
	보행형 트랙터	28 (9.2)
	농용운반차	26 (8.6)
	자탈형 콤바인	11 (3.6)
	동력방제기	6 (2.0)
	동력예불기(刈拂機)	12 (3.9)
	기타	36 (11.8)
농업용시설작업 관련 사고		13 (4.3)
기계·시설 외 작업 관련 사고	포장·도로에서의 전도·추락	23 (7.6)
	열중증	22 (7.2)
	벼짚 등 소각 중의 화상	17 (5.6)
	나무 등 높은 곳에서의 추락	10 (3.3)
	기타	8 (2.6)
합계(비율)		304 (100.0)

자료: 農林水産省. 2019. 1. 28. 農作業安全對策について. p. 2.

4. 소결: 문제점 및 시사점

○ 가족 및 종사자에 대한 재해보장 미비

- 일본의 농업인재해보험은 농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가족종사자에 대한 보장은 미흡함.
- 가족 및 농업종사자의 경우 별도로 노재보험이나 JA공제에 가입해야 함.

○ 국가 지원은 없음

- 일본은 농업인 재해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은 없음.
- 경영주든 가족이든 개인의 책임 하에 필요한 보험(제도)에 가입해야 함.

○ 직업병에 대한 보장 없음

- 농부증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직업병으로서의 농업인 질환을 별도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농작업 사고 예방 노력

- 농업인안전보험 관련 국가지원은 없지만 농림수산성은 농작업 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음.
- 현장에서 관련 기관·조직들이 농작업 사고 예방·교육·홍보 등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음.
- 농작업 사고 예방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우리나라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농작업 사고 관련 통계 생산 적극적

- 일본은 매년 농작업 사고 관련 통계를 수집·축적하고 있음.
- 지역별, 연령계층별, 요인별 등 농작업 사고 자료는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함.
- 우리나라도 농작업 재해 관련 통계를 매년 체계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음.

제3장

일본 농업경영수입보험



3

일본 농업경영수입보험

1. 수입보험 추진 경과

1.1. 수입보험의 도입 배경

- 일본은 1947년부터 농작물보험(농업공제)을 실시하고 있으며, 70여 년간 농업인들이 각종 재해(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음.

- 그러나 농업 여건이 변화하면서 현행 농업공제의 농업경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음.⁸⁾
 - 첫째, 농업공제는 자연재해에 의한 수량감소를 대상으로 하나, 가격저하로 인한 수입감소는 대응할 수 없음.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변동이

⁸⁾ 農林水産省. 平成30年(2018年) 6月. 収入保険制度の導入と農業共済制度の見直し.

심한 상황에서 수확량 보장만으로는 농업경영의 안정을 기하기 어려움.

- 둘째, 대상품목도 수량 확인이 가능한 품목에 한정되어 다수의 품목은 커버되지 못함. 또, 전국적으로는 공제대상 품목으로 되어 있더라도 해당 지역(공제조합)에서 취급하지 않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셋째, 가입단위도 품목별로 되어 있어 농업경영 전체를 커버하지 못함.
- 넷째, 손해평가를 필지별로 실시함으로써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모됨. 평가 인력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러한 평가체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음.

○ 한편, 농업의 성장 산업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경영 판단에 근거하여 수익성이 높은 신규 작물의 생산과 새로운 판로 개척 등에 도전하는 의욕적인 농업경영자들을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커졌음.

○ 이러한 상황에서 수입보험제도는 의욕 있는 농업경영자의 안전망(Safety net)으로써 품목별 관점에서가 아니라 농업경영자별 수입(收入) 전체를 보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험제도로 추진됨.

○ 수입보험 실시에 따라 기존 농업공제제도도 대대적으로 수정됨.

- 농업인의 감소·고령화 등 시대의 변화를 토대로,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 및 효율적인 사업집행에 의한 농업인의 부담경감이라는 관점에서 근본적인 수정이 이루어졌음.

1.2. 수입보험제도 도입 구상과 준비 작업⁹⁾

- 일본에서 수입보험에 관한 학술적 검토는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지만,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준비한 것은 2014년부터임.
 - 농림수산성이 예산을 확보하여 5,000개 농업경영체(개인 4,000, 법인 1,000)의 과거 7년치의 수입(收入)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음. 수입보험은 농업경영체의 수입 파악이 기본이기 때문임.
 -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5년산(농업경영 실적)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를 실시함. 전국에서 1,000개의 경영체(개인 750, 법인 250)의 협력을 얻어 도상연습을 실시하면서 기본설계의 실현 가능성, 문제점 및 타 제도와의 중복 문제 등을 검토하여 보완하였음.

- 이러한 조사와 아울러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작업도 진행됨.
 -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2015. 3. 31.)에 후계자의 경영소득안정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수입보험제도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2016년 11월 「농업경쟁력 강화프로그램」에서 구체화되었음.

-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17년 6월 「농업재해보상법」의 일부를 개정하였음.
 - 법률 명칭까지 「농업보험법」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개정으로 지금까지 실시해온 농업공제제도도 많은 변화가 불가피하였음.
 - 개정된 법률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수입보험은 2019년 1월부터 시작되었음.

⁹⁾ 최경환(2018. 8.: 49-50).

1.3. 농업경영 안전망 정비와 활용 촉진

- 수입보험 실시에 따라 기존의 농업공제제도도 많이 수정되었음.
 - 기존의 농업공제제도는 농업인의 감소·고령화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및 효율적 사업집행에 의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관점에서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음.

- 수입보험이 실시되면 일본의 농업경영 안전망은 농업공제, 수입보험, 수입감소 영향완화대책, 야채가격안정제도 및 육용우비육경영안정특별대책 등 다양해짐.
 - 선택폭이 다양해진 만큼 복잡해졌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각 제도들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수단들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졌음.

-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준비하면 걱정 없다」는 농업생산체제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수입보험을 도입하고 농업공제제도를 수정하였음. 이들 제도가 농업인의 안전망으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
 - 이에 일본 정부는 농업인들의 수입보험이나 농업공제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주체인 농업공제단체가 농협(JA)과 농업위원회 등 관련 조직과 협력하도록 하고 있음.
 - 수입보험과 수정된 농업공제 업무를 담당할 농업공제단체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수차례 실시함은 물론, 권역별·지역별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함과 아울러, 각종 설명 자료와 동영상 자료를 제작·배포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관심과 가입 촉진을 독려하고 있음.

2. 수입보험제도의 내용

2.1. 대상자

2.1.1. 대상자

- 수입보험은 농업인별 수입(收入)감소를 보전하는 것이므로 농업인 개인의 수입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수입보험은 청색신고(靑色申告)를 하고 경영관리를 적절히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함.

- 일본에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청색신고와 백색신고의 두 가지가 있음.
 - 국세통칙법(1962년 법률 제66호)에는 ①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개인, 법인세는 모든 법인에 대해 판매금액 등을 기재한 확정신고서의 제출의무, ② 거래 내용을 기장한 장부·서류의 작성의무 및 일정 기간의 보존의무, ③ 국세청 등의 직원에 의한 장부, 서류 및 기타 물건의 검사, ④ 부정행위에 의해 세(稅)를 면한 자 등에 대한 벌칙 등의 규정이 있음.
 - 청색신고는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소득 관련 장부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에 신고하며, 관련 장부를 일정 기간 보관하게 되어 있음. 백색신고는 청색신고에 비해 장부 작성이 간단함.

- 수입보험에서 청색신고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① 소득(수입)이 누락 없이 신고되고, 증거가 되는 세무관련 서류도 일정기간 보존되며, ② 청색신고에서는 백색신고와 달리 복식부기 등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 장부의 신뢰도가 높으며, ③ 청색신고에서 복식부기를 하면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이 적절히 작성되고, 농업인의 경영관리능력의 향상에 기여함과 아울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 받는 것도 용이하기 때문임. 한마디로 수입 파악을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임.

표 3-1 청색신고와 백색신고의 기장방법 및 장부의 상이(소득세의 경우)

	청색신고	백색신고
장부 등의 기장방법	복식부기 등의 의무	간단한 방법으로 가능
장부 등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개장, 총계정원장(손익과 자산·부채) (거래연월일, 상대방,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매일 매상의 합계액 등을 기재) · 손익계산서 (농산물수확고, 농산물의 매상고 등의 수입 및 종묘대, 농구비, 인건비 등의 필요경비를 기재) · 대차대조표 (현금, 외상액, 농산물 등의 자산 및 외상매입금, 차입금 등의 부채 등을 기재) · 재고표 (수량, 단가 등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장부(손익만) (거래연월일, 상대방, 금액, 매일 매상의 합계액을 기재) · 수지내역서 (농산물 등의 매상고 등의 수입 및 종묘대, 농구비, 인건비 등의 필요경비를 기재) · 재고표 (수량, 단가 등을 기재)

주: 소득세법(1965년 법률 제33호), 동법시행규칙, 동법관련고시에 의해 정리.

자료: 農林水産省. 平成30年(2018年) 6月. 収入保険制度の導入について. p. 4.

- 청색신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준수입을 설정할 때 평균적인 수입을 적절히 파악하기 위해 청색신고를 5년간 계속하고 있는 농업인을 기본으로 함.
 - 단, 수입보험을 처음 시작하는 상황에서는 청색신고(간이방식을 포함) 실적 가입신청 시에 1년분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때 5년간의 청색신고 실적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를 고려하여 보험방식의 보상한도액 상한은 청색신고 실적에 따라 <표 3-2>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상함.

표 3-2 청색신고 실적 기간별 보험방식 보상한도액

가입신청 시의 청색신고 실적	보험방식의 보상한도액의 상한
1년	기준수입의 70%
2년	기준수입의 75%
3년	기준수입의 78%
4년 이상(주)	기준수입의 80%

주: 보험기간 개시 후에 얻어지는 가입신청 연도분의 실적을 포함해 5년 이상이 됨.

자료: 農林水産省. 2018. 6a. p. 6.

- 수입보험 가입 여부는 농업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임의가입).
- 2016년 현재 청색신고를 한 농업인은 44.5만 명임<표 3-3>.
 - 청색신고를 하는 농업인들이라도 주 품목 및 전·겸업 등 각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수입보험에 가입한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청색신고자로 한정함으로써 대다수 농업인이 제외되기 때문에 청색 신고 간이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3-3 농업소득자의 청색신고자 수 추이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청색신고자 수	42.0	42.2	42.4	43.0	44.0	44.5
개인	40.6	40.8	41.0	41.5	42.1	42.4
법인	1.4	1.4	1.4	1.5	1.9	2.1
주업농가 수	35.6	34.4	32.5	30.4	29.4	28.5
인정농업인 수	23.8	23.3	23.1	23.8	24.6	24.2

단위: 만 명

주: 국세청사무연보(개인·농업소득용), 국세청회사표본조사, 농림업센서스, 농업구조동태조사.

인정농업인수는 각 연도말 수치.

자료: 農林水産省. 2018. 6a. p. 6.

- 청색신고에는 「정규 부기」와 「간이방식」이 있음. 이 구분은 필요한 서류와 장부의 차이를 기준으로 함.¹⁰⁾
 - 정규 부기는 복식부기 원칙에 따라 분개장, 총계정원장,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일정기간 보관해야 함.
 - 간이방식은 정규 부기까지는 요구하지 않지만, 백색신고에서는 요구되지 않는 현금출납장, 매출장부, 매입장부, 고정자산대장을 정비하고, 매일매일의 거래를 잔고까지 기장해야 함.

¹⁰⁾ 農林水産省. 平成30年(2018年) 6月. 収入保険制度の導入について.

○ 청색신고를 권장하기 위해 특례가 주어지고 있음.

- 하나는 청색신고특례공제로 「정규 부기」의 경우는 65만 엔을, 「간이방식」의 경우는 10만 엔을 소득으로부터 공제 받을 수 있음.
- 또 하나는 손실의 이월(繰越)과 환입(繰戻)이 가능함.
 - 손실액을 익년(翌年) 이후 3년간(법인은 9년간)에 걸쳐 이월하고, 각 연도분의 소득으로부터 공제 받을 수 있음.
 - 이월과 반대로, 손실액을 전년에 환입하고, 전년분의 소득세의 환부(還付)를 받는 것도 가능함.

○ 새롭게 청색신고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우 3월 15일까지 가장 가까운 세무서에 「청색신고승인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음. 이 신청을 하면 그 연도분의 소득부터 청색신고를 할 수 있음.

2.1.2. 수입의 파악방법

○ 수입의 파악방법은

- ① 농업인이 자기신고에 의해 농산물의 판매금액 등을 기재한 가입신청서와 보조 양식(청색신고서의 판매금액을 농산물의 종류별로 구분하기 위한 서류)과 아울러, 청색신고서 등의 세무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 ② 실시주체(전국연합회)가 제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함.

2.2. 대상수입

○ 수입보험제도에서는 농업인 자신이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의 판매수입 전체를 대상으로 함.

- 농업경영 과정에서의 소요 비용은 개인에 따라 다르고, 고액의 기계를 구입한 경우 적절한 비용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소득」이 아닌 「수입」을 대상으로 함.

글상자 1 비용(코스트)의 제외방법 차이에 의한 소득 차이의 예

※ 당년도에 비싼 기계(2천만 엔)를 구입한 경우는, 싼 기계(1천만 엔)를 구입한 경우에 비해 비용이 높아지며, 소득이 낮아짐.

글상자 표 1 2천만 엔의 기계를 구입한 경우

수입①		2,000
비용②		1,480
	기계 이외의 비용	1,200
	기계의 감가상각비	280
소득(① - ②)		520

글상자 표 2 1천만 엔의 기계를 구입한 경우

수입①		2,000
비용②		1,340
	기계 이외의 비용	1,200
	기계의 감가상각비	140
소득(① - ②)		660

※ 구입가격을 7년으로 균등하게 상각하는 것을 전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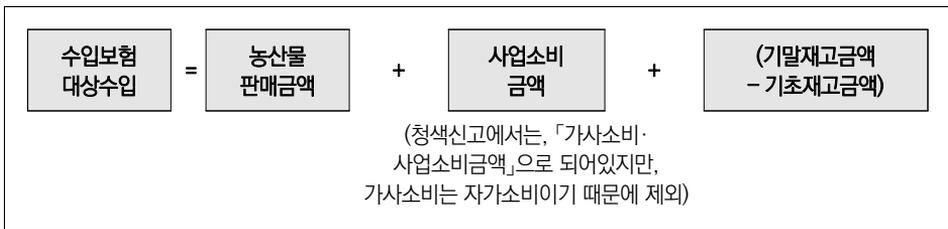
자료: 農林水産省, 2018. 6a. p. 9.

○ 한편, 농업인 중에는 6차산업화에 집중하여 농산물 가공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도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① 가공품은 농산물 이외의 원재료의 가치가 매우 큰 경우도 있고, ② 농업을 하지 않고 가공만 하는 사업자와의 경쟁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공품에 대해서는 판매수입에 포함하지 않음.

- 단, 농업인이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간단히 가공한 것에 대해서는 판매수입에 포함함.

- 예를 들어 정미(精米), 모찌, 황차(荒茶), 수제차(手製茶), 매실장아찌(우메보시), 다다미거죽, 꽃감, 건표고 및 우유 등은 판매수입에 포함됨.
- 또한,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사업소비로 하는 경우에는 조세체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산물을 판매했다고 보고 그만큼을 농산물의 판매수입에 포함시킴.
 - 재고에 대해서도 조세체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산물의 판매수입에 포함시킴.
- 그러나 보조금은 정책판단으로 개폐되는 것으로 보험에는 관련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수입에 포함되지 않음.
 - 단, 비용 할인을 보전하는 발작물 직접지불교부금(맥, 대두 등), 감미자원 작물교부금(사탕수수), 전분원료용고구마교부금 및 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의 수량불(數量拂)에 대해서는 실제로 판매수입과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으므로 판매수입에 포함시킴.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농산물 판매수입(수입보험의 대상수입)은 아래와 같이 산정됨.

그림 3-1 수입보험 대상수입의 산정방법



자료: 農林水産省. 2018. 6a. p. 10.

2.3. 대상요인

2.3.1. 대상요인

- 수입보험제도에서는 자연재해에 의한 수량감소에 덧붙여, 수급변동에 의한 가격저하 등 농업인의 경영노력으로는 피할 수 없는 수입감소를 보상 대상으로 함.
 - 그러나 경작포기나 거래처와 결탁한 의도적인 염가판매 등으로 발생한 수입감소는 보상 대상으로 하지 않음.

- 이 외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 수입보험의 대상이 됨.¹¹⁾
 - 기계의 고장이나 질병, 부상에 의해 수입이 감소한 경우에도 보상 대상이 됨.
 - 단, 사고발생 통지를 받고, 다른 기계로의 대처나 지역의 후계자에 대한 작업위탁 등 영농을 계속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 개별적으로 사정을 확인하여 판단함.
 - 농산물 수확 후 보관 중에 발생한 요인(침수, 곰팡이 발생 등)에 의해 수입이 감소한 경우에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
 - 단, 사고발생 통지를 받고,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 개별적으로 사정을 확인하여 판단함.
 - 가격이 현저히 저하하여 출하해도 적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확을 중지함으로써 수입이 감소한 경우에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
 - 단, 사고발생 통지를 받고, 수확 중지가 야채수급균형종합추진대책사업과 같이 지역 전체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개별적으로 사정을 확인하여 판단함.
 - 수출 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수입감소 및 거래처가 도산하고 타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감소도 보상 대상이 됨.¹²⁾

¹¹⁾ 農林水産省. 2018. 10. 収入保険に関するQ&A.

2.3.2. 보험금의 부정수급방지책

○ 수입보험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는 보험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① 농업인은 재해 등의 사고발생 시에 실시주체(보험사업자)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함과 아울러 증거(농작업 일지 등)를 보존하고, ② 실시주체는 필요에 따라 현지조사 등으로 확인을 함.
- 또한, 농업인 측에 ① 부정(不正)이 있는 경우 면책(免責)으로써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는 외에, ② 중대한 부정이 있는 경우에는 익년 이후의 가입을 금지함.

○ 구체적으로 농업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열거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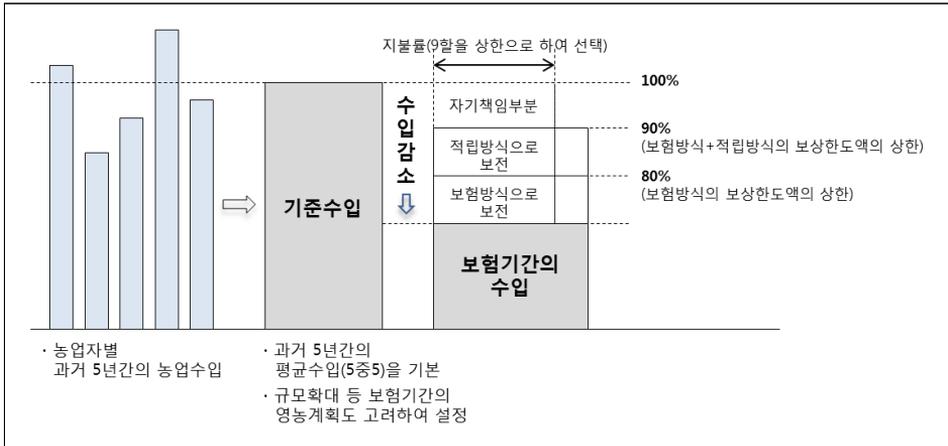
- ① 가입신청 시에 이미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산물이 있는 등 수입감소가 예상되는 사유가 있는 것을 통지하지 않고, 가입신청서 등에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한 경우
- ②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③ 농작업 일지의 작성·보존이나 영농계획의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④ 경작포기나 의도적인 염가판매를 행하는 등 농업인이 통상적으로 하는 농업경영 노력을 태만한 경우
- ⑤ 사고발생 통지를 태만한 경우 등이 해당됨.

12) 農林水産省. 2018. 8. 収入保険がはじまります!.

2.4. 보상내용

-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수입은 농업인별 과거 5년간의 평균수입(5중 5)을 기본으로 하고, 보험기간의 영농계획도 고려하여 설정함.

그림 3-2 수입보험제도의 보전방식



주: 5년 이상의 청색신고실적이 있는 경우의 예시

자료: 農林水産省. 2018. 6a. p. 13.

- 농업인에 대한 수입보험의 보전금¹³⁾은 보험기간의 수입이 기준수입의 9할(보상한도액)을 밑도는 경우에, 밑도는 금액의 9할(지불률)에 대해 「소멸되는 보험방식(보험금)」과 「소멸되지 않는 적립방식(특약보전금)」을 조합하여 보전됨.

- 이를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이 <그림 3-2>임.

- 농업인이 5년 이상의 청색신고실적이 있고, 보험방식과 적립방식에 가입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음.

¹³⁾ 보전금(補填金)은 보험방식의 보험금과 적립방식의 특약보전금으로 구분됨. 적립방식은 특약 형태로 농업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음. 즉, 보전금은 보험금과 특약보전금을 포괄하는 용어임.

표 3-4 수입감소 정도에 따른 보전 상황

당년의 수입감소 정도	보전 상황
20%	기준수입의 89%까지 회복
30%	기준수입의 88%까지 회복
40%	기준수입의 87%까지 회복
50%	기준수입의 86%까지 회복
60%	기준수입의 85%까지 회복
70%	기준수입의 84%까지 회복
80%	기준수입의 83%까지 회복
90%	기준수입의 82%까지 회복
100%	기준수입의 81%까지 회복

주: 보상한도를 9할, 지불률을 9할로 한 경우임.
 자료: 農林水産省, 2018. 6a. p. 13.

2.4.1. 기준수입

○ 보전의 기준이 되는 기준수입은 농업인별 과거 5년간의 평균수입(5중 5)을 기본으로 함.

- 단, 농업인이 ① 경영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단위면적당 평균수입 및 보험기간의 경영면적을 이용하여 상향 조정하고, ② 과거의 수입에 상승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5년간의 평균수입 및 각 연도의 수입 상승 경향의 평균치를 이용하여 상향 조정하며, ③ 경영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나 단수·단가가 낮은 작물로 전환하는 경우 등은 이들을 감안하여 하향 조정하되, 객관적인 산정 툴(tool)을 이용하여 산정함.

○ 나라시대책은 5년 중 중용 3년 평균(5중 3)으로 하고 있지만, 나라시대책은 지역별 가격 데이터 및 수량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준수입을 산정하기 때문에 농업인은 부정할 수 없는 구조인데 비해, 수입보험에서는 농업인 개개인의 수입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델 해저드와 연결될 우려가 있어 5중 3은 채용하지 않음.

표 3-5 기준수입에 관한 수입감소영향완화대책(나라시대책)과 수입보험의 비교

나라시대책	수입보험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도부현 등 지역별, 대상품목별 가격 데이터 및 수량 데이터를 사용하여 산정 • 농업인의 조작은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개개인의 수입 데이터를 사용하여 산정 • 농업인의 조작이 가능

자료: 農林水産省. 2018. 6a. p. 14.

2.4.2. 보전방식

○ 보험료가 경영에서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멸되는 보험방식」과 「소멸되지 않는 적립방식」이 조합되도록 함.

- 적립방식에 가입할지 여부는 농업인이 스스로 선택함.

○ 보험방식과 적립방식은 각각 특징이 있음.

- 보험방식은 보험의 보상한도액을 크게 할수록 소멸하는 보험료가 많아지며, 수입이 안정되도록 노력하는 경영자의 경우 보험료는 매년 지불하지만 보험금을 받을 기회는 적어짐.

- 이에 비해 적립방식은 적립의 보상한도액을 크게 할수록 적립금인 보험료가 많아지지만, 경영자 자신의 적립금이 되어 소멸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자신의 적립금만으로 보전하기 때문에 적립금을 초과하는 큰 수입감소에는 대처할 수 없는 단점이 있음.

표 3-6 보험방식과 적립방식의 차이

보전방식	비 고
보험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의 보상한도액을 크게 할수록 소멸하는 보험료가 많아짐 • 수입이 안정되도록 노력하는 경영자는 보험료를 매년 지불하지만 보험금을 받는 것은 적음
적립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립의 보상한도액을 크게 할수록 적립금인 보험료가 많아지지만 경영자 자신의 적립금이 되고 소멸되지 않음 • 적립제도뿐이라면 자신의 적립금만으로 보전하기 때문에 적립금을 초과하는 큰 수입감소에는 대처할 수 없음

자료: 農林水産省. 2018. 6a. p. 16.

2.4.3. 보상한도액 및 지불률

- 수입보험에서는 보험기간의 수입이 기준수입의 9할 수준(5년 이상의 청색신고가 있는 경우의 보상한도액의 상한)을 밑도는 경우에 밑도는 금액의 9할(지불률)을 상한으로 하여 보전금을 지불함.

- 수입보험은 농업인 개개인의 수입에 착안한 구조이기 때문에 기준수입을 조금이라도 밑도는 경우에 보전하는 것으로 하면, 매년 상당수의 농업인에게 보전이 이루어지게 되어 사무비가 증가하고 보험료도 높아지는 문제가 있어 보상한도액을 설정함(이는 농업공제에서도 마찬가지).

- 또, 수입보험은 농업공제와 달리 자연재해 이외에 의해 발생하는 수입감소도 보상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기간의 수입이 보상한도액을 밑도는 것이 명확할 때, 이후의 경영노력을 태만히 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상한도액 중 지불을 받는 보전금의 비율, 즉 지불률을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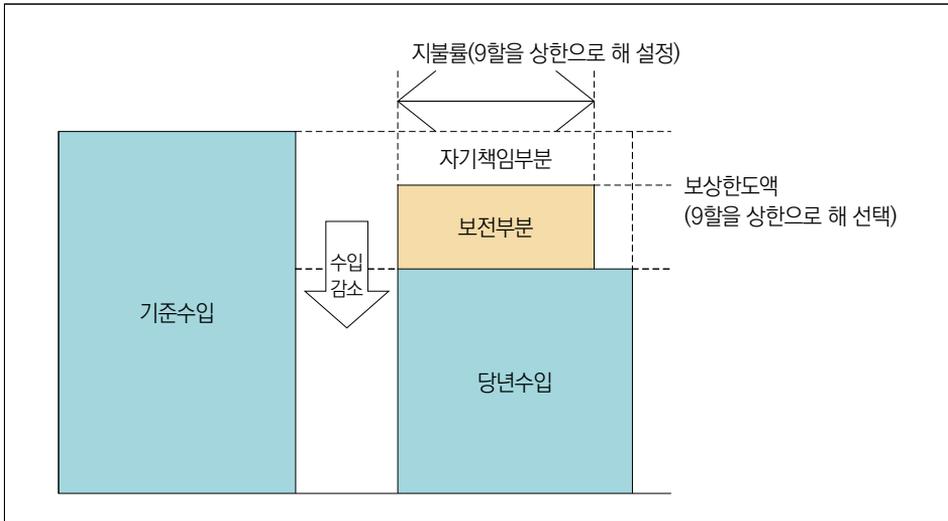
- 보상한도액 및 지불률은 농업인이 보험료 부담을 감안하여 보상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의 선택지를 설정함.
 - ① 보험방식의 보상한도액은 기준수입의 80%(5년 이상의 청색신고실적이 있는 경우)를 상한으로 70%, 60%, 50%의 4가지
 - ② 적립방식의 보상폭은 기준수입의 10% 또는 5%의 2가지
 - ③ 지불률은 90%를 상한으로 80%, 70%, 60%, 50%의 5가지
 - 그런데, 지불률에 대해서는 보험방식과 적립방식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적립방식의 지불률은 보험방식의 지불률 이하의 비율에서만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표 3-7 타 제도에서의 보상한도 및 지불률

제도명	구조	보상한도	지불률
수입감소영향 완화대책 (나라시대책)	지역 데이터를 이용해 수입감소를 보전	10할 (개인별로는 아니며, 지역 데이터를 근거로 보전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10할이라도 사무량의 대폭적인 증가는 초래하지 않음)	9할
농업공제 (麥·재해수입 공제방식)	개인 데이터를 이용해, 자연재해에 의한 수입감소를 보전	7~9할 (농업인이 선택)	4~10할 농업인이 선택 (공제사고를 자연재해에 의한 수량감소라는 타율적인 요인 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럴 해저드의 억제를 제도적으로 담보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상한을 설정하지 않음)

자료: 農林水産省. 2018. 6a. p. 17.

그림 3-3 수입보험제도에서의 보상한도액과 지불률



자료: 農林水産省. 2018. 6a. p. 17.

2.4.4. 보험료·적립금

- 수입보험은 농업인의 농업경영 전체에 착안하여 수입감소를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보험의 보험료·적립금은 전 경영체 공통으로 설정함.
- 한편, 수입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량 경영체가 가입하기 쉬운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수입감소가 빈발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공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보험료는 위험단계별로 설정하여 보험금의 수령이 적은 자의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내리는 구조로 함.
- 구체적으로는 보험료표준율을 중심으로 하여 상하 10구분(전체 21구분)의 보험료율을 설정하고, 최저구분 「-10」의 보험료율은 구분 「0」(보험료표준율)의 5할 수준으로 함.
 - 보험료표준율은 보험방식의 보상한도가 높으면 높게 보상한도가 낮으면 낮게 설정됨<표 3-8>.

표 3-8 보상한도별 보험료율 및 위험단계별 보험료율

보상한도별 보험료율		위험단계별 보험료율 (보험방식의 보상한도 80%인 경우)	
보험방식의 보상한도	보험료율(국고보조 후)	위험단계 구분	보험료율(국고보조 후)
80%	1.080%	10	2.574%
78%	0.953%	9	1.578%
75%	0.792%	8	1.522%
70%	0.587%	7	1.467%
60%	0.335%	6	1.412%
50%	0.212%	5	1.356%
		4	1.301%
		3	1.246%
		2	1.190%
		1	1.135%
		0	1.080%
		-1	1.024%
		-2	0.969%
		-3	0.913%
		-4	0.858%
		-5	0.803%
		-6	0.747%
		-7	0.692%
		-8	0.637%
		-9	0.581%
		-10	0.540%

자료: 農林水産省. 2018. 6a. p. 19.

○ 농업인별로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음.

- 먼저, 가입 1년째는 구분 「0」의 보험료율을 적용함.
 - <표 3-8>은 보험방식의 보상한도가 80%인 경우의 보험료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구분 「0」의 보험료율은 1.080%임.
- 다음에, 가입 2년째 이후는 가입자별로 보험금의 수취실적을 기준으로 손해율(보험금 ÷ 보험료)을 계산하고, 손해율의 크기에 따라 보험료율의 위험단계를 상하로 조정하여 해당하는 단계(구분)의 보험료율을 적용함.
 - 보험금의 수취가 없으면 기본 1단계씩 내려가며(10년에 반액 수준이 됨), 반대로 보험금의 수취가 있으면 단계는 올라가지만 가입자 부담이 극단적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연간 최대 3구분 상향까지로 제한함.

○ 보험료에 대해서는 50%, 적립금에 대해서는 75%의 국고보조가 있음.

2.4.5. 세무상 취급

○ 수입보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소득세 신고 장부에 기재되므로 적합한 항목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보험료와 사무비는 보험기간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損金)에 산입(算入)하고, 적립금은 예치금으로 처리하며, 보험금과 특약보전금 중 국고보조 상당분은 보험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2.4.6. 수입보험의 보험료·적립금과 보전금액 시산¹⁴⁾

○ 지금까지 살펴본 수입보험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살펴 보기로 함.

- 여기에서는 기준수입이 1,000만 엔인 농업인이 보상한도 90%(보험방식 80% + 적립방식 10%), 지불률 90%를 선택한 것으로 가정함.

○ 먼저, 농업인이 지불해야 할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됨.

- 보험료 = 기준수입 × 보전한도 × 지불률 × 보험료율
- 농업인은 보전한도 80%, 지불률 90%를 선택했으며, 보험료율은 1.080%
이므로 이 농업인의 보험료는
- 보험료 = 1,000만 엔 × 0.8 × 0.9 × 0.01080 = 77,760엔(7.8만 엔)이 됨.

¹⁴⁾ 農林水産省. 平成30年(2018年) 6月. 収入保険制度の導入について.

○ 마찬가지로 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

- 적립금 = 기준수입 × 적립폭 × 지불률 × 1/4
- 농업인은 적립금 적립폭 1할, 지불률 9할을 선택했고, 국가가 75%(3/4)를 지원하므로 농업인 부담은 1/4이므로 농업인이 지불할 적립금은
- 적립금 = 1,000만 엔 × 0.1 × 0.9 × 1/4 = 225,000엔(22.5만 엔)이 됨.

표 3-9 농업인이 부담할 금액

	〈가입 1년째〉	〈2년째 이후〉
보험료(소멸)	7.8만 엔	7.8만 엔 ± α
적립금(불소멸)	22.5만 엔	(22.5만 엔) 전년에 적립금의 삭감이 없으면, 0
사무비	2.2만 엔	2.1만 엔
합계	32.5만 엔	

주 1) 보험료에는 50%의 국고보조가 있으며, 보상한도 80%의 경우 보험금액의 1.080%임.

2) 적립금에는 국고보조가 있으며, 적립금액의 25%임.

3) 사무비에는 50%의 국고보조가 있으며, 가입자할 (1년째 4,500엔, 2년째 이후 3,200엔), 보상금액할(보험금액 및 적립금액 1만 엔당 22엔)이 있음.

자료: 農林水産省. 2018. 6a. p. 21.

○ 한편, 사무비는 가입자할과 보상금액할로 구성됨.

- 가입자할은 1년째는 가입자별로 4,500엔이며, 2년째 이후로는 3,200엔임.
- 보상금액할은 보험금액 및 적립금액 1만 엔당 22엔임.
- 따라서 이 농업인이 부담할 사무비는,

$$\begin{aligned} \text{사무비} &= 4,500\text{엔} + 900 \times 22\text{엔} \\ &= 4,500\text{엔} + 19,800\text{엔} = 24,300\text{엔}(2.415\text{만 엔}) \end{aligned}$$

○ 따라서 가입 1년차에 농업인이 부담할 금액은 32.5만 엔이 되며, 2년차부터는 보험금과 특약보전금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달라짐.

15) 이 수치는 <표 3-9>의 사무비 계산값(2.2만 엔)과 차이가 있음. 원자료 작성 과정에서의 착오로 판단된다. 그러나 설명의 편의상 원자료의 수치를 따르기로 함.

○ 농업인이 32.5만 엔을 지불하고 가입한 수입보험에서 수입감소에 따라 어느 정도의 보전을 받는지를 살펴보기로 함.

- <표 3-10>은 수입감소 정도에 따른 보전금액 수준을 나타냄.
 - 수입감소가 20%일 때는 보험방식의 자기부담비율이 20%(보상한도 8할)이므로 보험금 지급은 없고 적립보전금(1할)만 90만 엔 보전 받음.
 - 반대로 수입이 100%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금으로 720만 엔(= 1,000만 엔 × 0.8 × 0.9)과 특약보전금 90만 엔(1할)을 합해 810만 엔을 보전 받음.
-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수입보험으로 최대한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기준수입의 89%수준까지라는 점임.

표 3-10 수입감소 정도에 따른 보전금액

수입감소의 정도 (보험기간의 수입)	보전금의 합계	보험방식	적립방식	보전금을 포함한 보험기간의 수입 (대 기준수입)
		(보험금)	(특약보전금)	
20%(800만 엔)	90만 엔	0만 엔	90만 엔	890만 엔(89%)
30%(700만 엔)	180만 엔	90만 엔	90만 엔	880만 엔(88%)
50%(500만 엔)	360만 엔	270만 엔	90만 엔	860만 엔(86%)
100%(0만 엔)	810만 엔	720만 엔	90만 엔	810만 엔(81%)

자료: 農林水産省. 2018. 6a. p. 21.

2.5. 가입·지불시기

○ 수입보험의 가입 및 지불 시기는 조세제도와 맞추어 간소하게 함으로써 농업인에게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함.

2.5.1. 보험기간

○ 수입보험제도의 수입 산정기간은 조세제도의 수입 산정기간과 일치시키도록 하기 위해 개인의 경우는 1월~12월, 법인의 경우는 사업연도(각 법인이 설정)의 1년간으로 함.

2.5.2. 가입 시기

- ‘사고가 있기 때문에 가입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보험기간 개시 전까지 가입신청을 하고, 보험료·적립금을 납부해야 함.
- 따라서 수입보험에 가입하려는 농업인은 사업실시주체의 사무처리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매년 11월까지(법인은 사업연도의 1개월 전까지) 가입신청을 하고, 보험기간 개시 전까지 보험료·적립금·사무비를 납부함.
 - 보험료·적립금은 분할납부도 가능함.
- 세(稅) 신고상의 사업연도 및 세무신고 기간
 - 개인은 1월~12월
 - 그 해의 익년의 2월 16일~3월 15일까지의 기간에 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
 - 법인은 사업연도 1년간
 - 사업연도 종료일의 익일부터 2개월 이내에 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예를 들면, 사업연도가 4월 1일~3월 31일까지 1년간인 경우, 확정신고서는 5월 31일까지 제출)

2.5.3. 보전금 지불 시기

- 수입보험에서는 확정 신고 후 보험기간의 수입을 세무관련 서류에 의해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수입감소의 보전금 지불은 보험기간 종료 후의 소득세 신고 후(개인인 익년 3월~6월)로 함.
 - 단, 손해 발생부터 보전금 지불까지 사이의 자금 상환(회수)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실시주체가 재해 등에 의해 상당한 수량감소가 발생할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무이자 용자를 실시함.

2.6. 실시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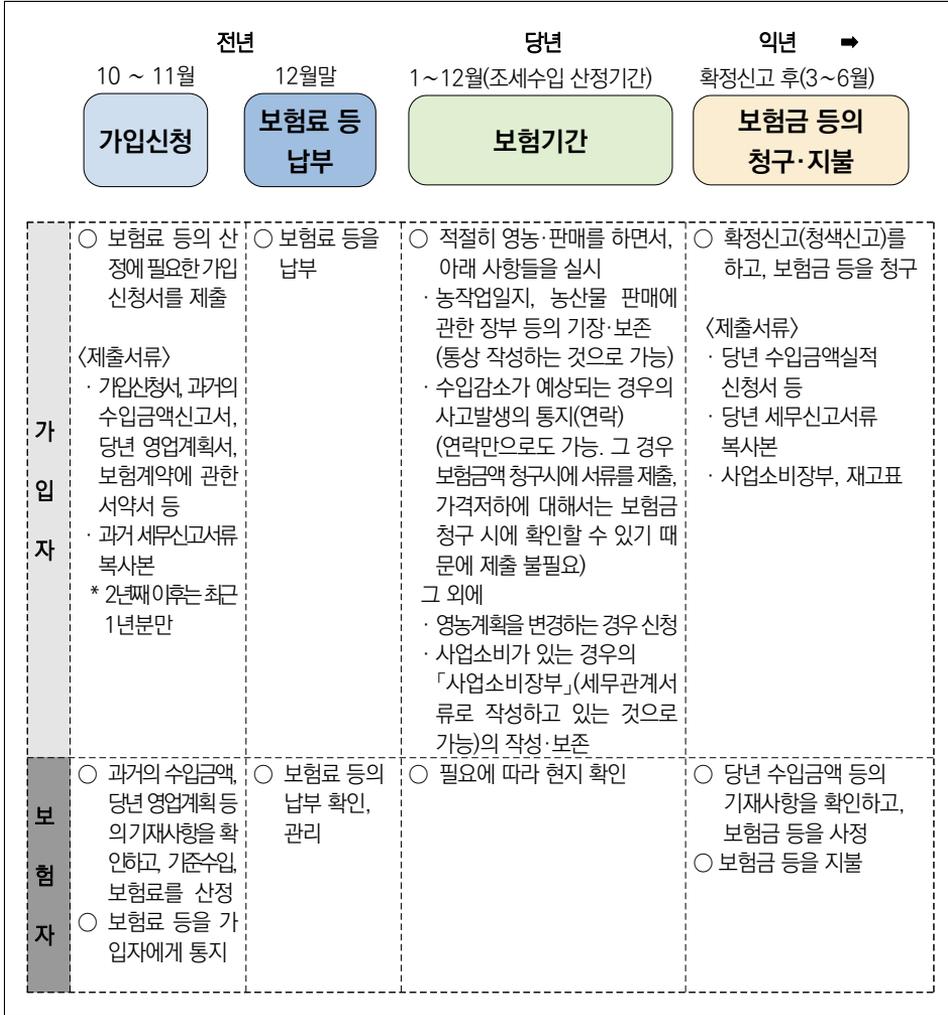
- 수입보험의 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실시주체가 이를 감당할 요건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함.
- 일본 정부는 수입보험 사업실시주체의 구비 요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실시주체를 선정함.
 - 첫째, 사업실시주체는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수입보험의 가입(대상)자는 모든 판매농가는 아니며, 청색신고자로서 지역 별로 가입자 수가 편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집단을 안정적으로 확보함과 아울러 위험분산을 위해서는 사업영역은 될 수 있는 한 광역일 필요가 있음.
 - 둘째,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함.
 - 보험사업을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농산물의 가격 형성과 판매 등에 관여하는 등 가입자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립적인 입장일 필요가 있음.
 - 셋째, 보험업무에 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함.
 -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료의 산정·징수, 손해의 사정, 보험금의 지불 등의 보험업무에 관한 노하우를 보유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농업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
 - 농업인에 대해 가입 추진을 할 필요가 있으며, 손해발생 시에 가입자의

영농행위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농산물의 종류별 재배방법 등 농업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실시주체는 전국을 구역으로 하는 농업공제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로 결정하였음.

- 전국연합회는 농업공제조합, 시정촌등에게 수입보험의 가입신청의 접수, 보험금 지불 등의 절차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음.
- 또한,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연합회는 민간손보회사와 국가 등과도 적극적으로 기술적인 협력을 도모하도록 함.

그림 3-4 수입보험 가입 및 지불 등의 프로세스(개인의 경우)



자료: 農林水産省. 2018. 6a. p. 24.

2.7. 정부재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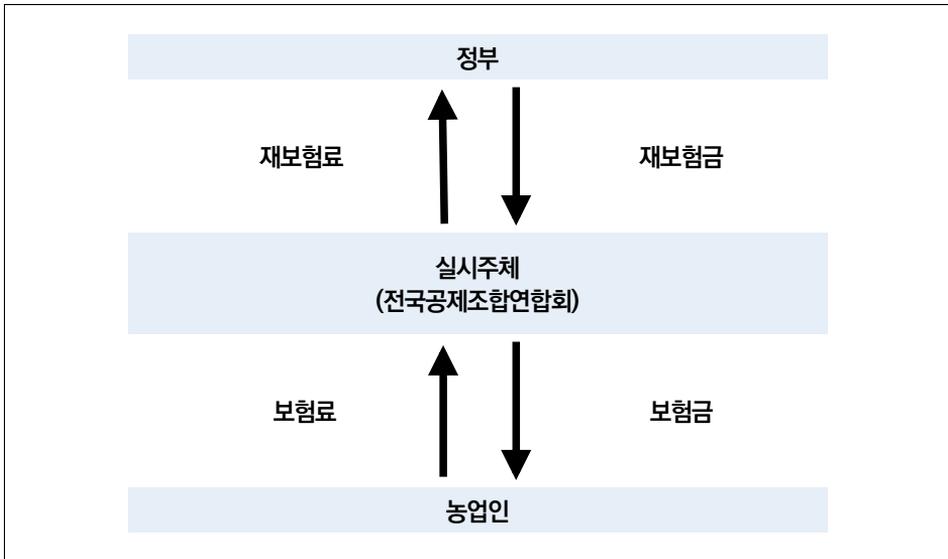
- 농업공제와 어업공제 등 타 정책보험의 경우, 보험책임의 일부를 정부에게 전가하는 「정부재보험」이 설치되어 불가항력적인 대손실 발생 시에는 정부재보험이 발동하여 농업인에게 확실하게 공제금이 지불되게 되어 있음.

- 수입보험에 대해서도 대손실 발생 시에 농업인에게 확실하게 보험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재보험을 설치함<그림 3-5>.

○ 수입보험의 추진체제는 <그림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 - 재보험의 2단계 구조임.

- 전국연합회는 전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입보험 가입신청을 받고, 보험금을 지불함. 위험분산을 전국적으로 하는 것임.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수입 손실이 발생하여 전국연합회 수준에서 보험금 지불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하여 전국연합회는 정부에 재보험을 들고 정부는 대규모 수입 손실 발생 시 재보험금을 지불함.

그림 3-5 정부재보험 실시 체제



자료: 農林水産省. 2018. 6a. p. 27.

2.8. 유사 제도와의 관계

- 현재 일본에서는 수입보험처럼 수입감소를 보전하는 유사한 기능을 갖는 제도들이 다양하게 실행되고 있음.
 - 농업공제를 비롯하여 수입감소영향완화대책, 야채가격안정제도 및 육용우 비육경영안정특별대책사업 등이 이에 해당함<표 3-11>.
- 수입보험과 유사 제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각 제도의 대상자, 보상내용 등이 상이하지만, 국비의 이중 지원을 피하고, 농업인이 각자의 경영형태에 적절한 안전망(safety net)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업인이 선택가입하는 것으로 함<그림 3-5>.
 - 단, 수입감소만이 아닌 비용 증가도 보전하는 육용우비육경영안정특별대책사업의 대상인 육용우, 육용자우, 육용돈, 계란은 수입보험의 대상품목으로는 하지 않고, 그들과 타 품목과의 복합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품목만 수입보험의 대상으로 함.

표 3-11 수입감소를 보전하는 기능을 갖는 유사제도

제도명	대상품목	대상자	보전내용
농업공제	농작물공제	논벼, 맥, 밭벼	수량(收量)감소를 보전
	밭작물공제	고구마, 콩, 팥 등 13종류	
	과수공제	감귤, 사과, 포도 등 16종류	
	가축공제	소, 말, 돼지	수량감소(가축의 사망·폐용)를 보전
수입감소영향완화 대책(나라시대책)	쌀, 보리, 콩, 사탕수수, 전분원료용 고구마	인정농업인 집락영농 인정신규취농자	수입감소를 보전
야채가격안정제도	야채	야채의 계획적인 생산·출하에 종사하는 자(지정산지 등)	가격하락을 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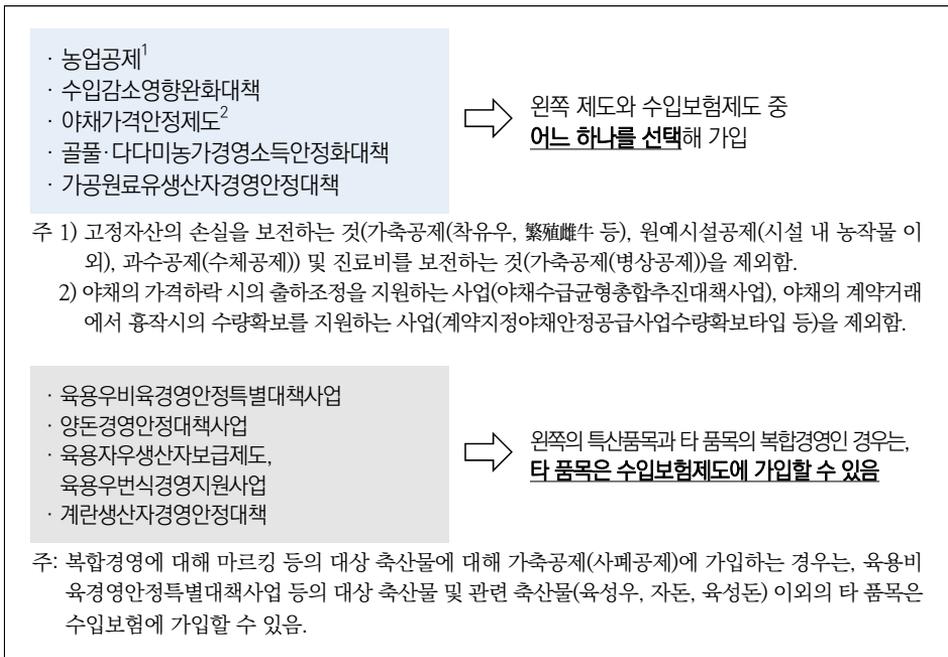
(계속)

제도명	대상품목	대상자	보전내용
골풀·다다미농가 경영소득안정화대책	다다미거죽(疊表)	골풀·다다미거죽의 생산·판매를 하는 자	가격하락을 보전
육용우비육경영안정 특별대책사업	비육우	비육우의 생산·판매를 하는 자	판매가격과 생산비용의 차이를 보전
양돈경영안정 대책사업	양돈	육돈의 생산·판매를 하는 자	판매가격과 생산비용의 차이를 보전
육용자우생산자보급제도, 육용우번식경영지원사업	육용자우	육용자우의 생산·판매를 하는 자	판매가격과 생산비용의 차이를 보전
계란생산자 경영안정대책	계란	계란의 생산·판매를 하는 자	가격하락과 비용 증가 등을 보전
가공원료유생산자 경영안정대책	가공원료유	가공원료유의 생산·판매를 하는 자	가격하락을 보전

주: 농업공제 중 고정자산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가축공제(착유우, 繁殖雌牛 등), 원예시설공제(시설 내 농작물 이외), 과수공제(수채공제)) 및 진료비를 보전하는 것(가축공제(병상공제))은 수입감소를 보전하는 것은 아니며, 수입보험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본 표에는 포함하지 않음.

자료: 農林水産省. 2018. 6a. p. 28.

그림 3-6 유사제도와와의 관계



자료: 農林水産省. 2018. 6a. p. 29.

3. 기존 농업재해보상제도(농업공제)의 수정

- 수입보험이 실시되면서 기존 농업공제제도는 변화가 불가피함.
 - 농업공제나 수입보험 모두 국가가 적극 관여하는 정책보험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한 중복 지원은 피해야 하기 때문임.
-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수량감소와 가격저하로 인한 수입감소를 보장하는 수입보험의 가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도 기존의 농업공제제도는 수정될 필요가 있음.
- 수입보험 도입 작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농업공제제도의 수정 작업도 전면적으로 이루어져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많이 해소하는 기회가 되었음.

3.1. 농작물공제의 당연가입제를 임의가입제로 변경

- 지금까지 농작물공제(논벼, 밭벼, 맥류)는 대상품목별로 일정규모 이상을 경작하는 자는 가입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었음(당연가입제).
- 이는 농업공제제도 창설 당시(1947년) 국가가 식량관리법 하에서 미맥(米麥)을 전량 매입, 관리하고, 미맥의 재생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손실 보전에 대해 일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임.
- 그렇지만, 70여 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크게 바뀌었음.
 - 쌀(米)은,

- 1) 생산자수가 일관되게 감소함과 아울러, 생산금액도 최고 시(1984년)와 비교해 약 4할 수준으로 감소하고, 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쌀(米)의 비율도 34%에서 17%로 감소하였고,
- 2) 생산 및 유통 구조도 1995년에 전량관리의 식량관리법이 폐지되고, 현재는 식량법 하에서 농업인·농업인단체가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으며,
- 3) 2013년 12월의 쌀정책 개혁에 의해 생산조정이 수정되어 2018년산부터 행정에 의한 생산수량목표 배분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책정하는 수급전망 등을 토대로 하여 생산자나 집하업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원활히 수요에 대응한 생산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는 등, 당연가입제 도입 시와는 상황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

- 맥류(麥類)도

- 1) 생산자 수가 크게 감소함과 동시에 생산금액도 1985년과 비교해 약 1/4의 수준으로 감소하고, 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맥류(麥類)의 비율도 1.7%에서 0.5%로 감소하였으며,
- 2) 생산 및 유통 구조도 1995년에 식량관리법이 폐지되고, 식량법하에서 농업인·농업인단체가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등 당연가입제 도입 시와는 상황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

○ 한편, 리스크 대비책인 수입감소영향완화대책(나라시대책)이나 육용우비육 경영안정특별대책 등의 여타 경영안정대책은 농업인이 창의력을 발휘하여 경영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전부 임의가입제로 되어 있으며, 이번에 새롭게 실시하는 수입보험제도도 임의가입제로 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농작물공제의 당연가입제는 식량관리법이 폐지되는 등 제도 자체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는 것과 아울러 수입보험제도 등의 경영안정대책이 모두 임의가입제로 되어 있으므로 임의가입제로 변경함.¹⁶⁾

- 그러나 농작물공제 외에 발작물공제와 과수공제의 가입 촉진을 위해 ① 집단으로 농업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방식(농업공제자격단체)의 요건을 완화(경리 일원화 요건을 철폐)하고, ② 전상쇄방식 및 재해수입공제방식 대상자를 확대하여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건조조제시설의 계량 결과나 출하자료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덧붙여, 농업협동조합 이외 건조조제시설의 계량 결과나 청색신고서 등에서 수확량 확인이 가능한 자를 추가하며, ③ 자동계속특약¹⁷⁾을 모든 공제사업으로 확대함.

3.2. 수확공제(농작물공제, 발작물공제, 과수공제)의 인수방식의 변경

- 농작물공제, 발작물공제 및 과수공제에서는 보상 단위 및 손해평가 방법이 상이한 복수의 인수방식 중에서 농업인이 선택하게 되어 있음<표 3-12>.
- 이 중에서 일필방식 및 과수원단위방식은 모든 피해 포장의 수확량을 현지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① 다수의 농업공제조합 조합원인 농업인이 손해평가원(14.3만 명)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농업인의 감소와 고령화로 이러한 조사방식이 어려워지고 있고, ② 이 방식은 사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업인이 부담하는 부과금도 공제료와 비교해 비율이 높으며, ③ 보상단위가 포장별이고, 농업인의 경영 전체로서의 수확량 감소를 커버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안정 측면에서는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16) 농작물공제 당연가입제의 임의가입제로의 변경에 대한 검토는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이번에 수입보험 실시를 계기로 변경하였음(농업재해보상제도검토회보고서, 2002년 12월).

17) 농업공제의 가입자로부터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는 다음의 공제책임기간에 대해서도 공제관계의 갱신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취급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말함.

- 한편, 수입감소영향완화대책이나 미국의 수량보험의 일부에서는 지역의 통계단수 등의 객관적 지표를 이용함으로써 현지조사를 하지 않고 손해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 또, 과수공제에서는 특정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만을 보상대상으로 함으로써 공제로 부담을 억제하는 특정위험방식이 있지만, ① 손해평가에서 수확량 감소를 대상으로 하는 자연재해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할 필요가 있어 사무비가 크게 발생하고, 18) ② 최근에는 과거에 예가 없는 재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보상대상 외의 자연재해에 의해 손해를 입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음.
- 또한, 농작물공제에서는 농업인이 공제로 부담을 감안하여 보상금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제금의 발동기준이 되는 보상비율이 복수로 설정되어 있지만, 밭작물공제와 과수공제에는 보상비율이 한 종류만으로 되어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음.

표 3-12 인수방식의 개요

인수방식	지불기준	보상단위	손해평가방법
일필방식 과수원단위방식	수확량 감소	포장	현지조사
반상채방식	수확량 감소	농업인	현지조사
전상채방식	수확량 감소	농업인	출하자료
재해수입공제방식	수확량 감소 및 생산금액 감소	농업인	출하자료
일필방식 과수원단위방식	포장별로 수확량이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에 공제금을 지불		
반상채방식	농업인별로 피해포장의 감수량의 합계가 일정비율을 초과한 경우에 공제금을 지불		
전상채방식	농업인별로 수확량의 합계가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에 공제금을 지불		
재해수입공제방식	농업인별로 수확량이 감소한 경우에 생산금액의 합계가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에 공제금을 지불		

자료: 農林水産省. 2018. 4b. p. 10.

18) 특정위험방식 이외의 현지조사는 수확기에만 하지만, 특정위험방식의 현지조사는 재해 발생 시마다 하고 수확기에도 해야 함.

○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수확공제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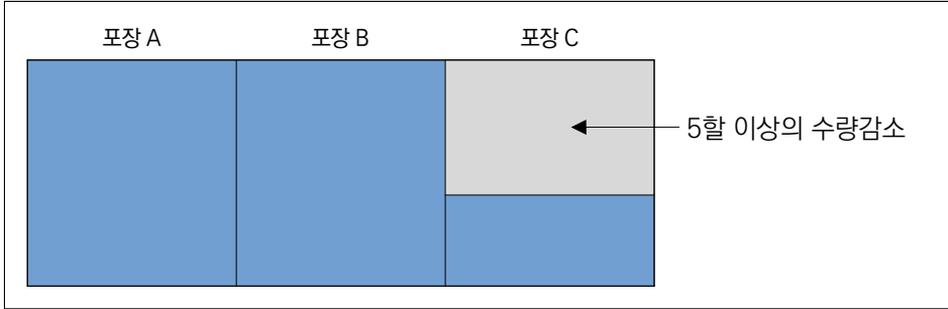
- ① 인수방식

- 가. 일필방식 및 과수원단위방식은 농업인에 의한 손해평가와 소위 「평예」에 의한 사정(査定)방식 등은 장래에는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업집행에 의한 농업인의 부담경감의 관점에서 2021년 산까지(대재해 등의 경우는 1년 또는 2년 연장) 폐지함.
- 이때, 농작물공제의 전상쇄방식, 반상쇄방식 및 재해수입공제방식에 농업인의 선택에 따라 수확량의 감소가 50% 이상인 포장에 대해 평예(坪刈)등을 하지 않고 50% 감수로 간주하여 공제금을 지불하는 ‘일필반손 특례’를 설정하여 종래 일필방식에 가입해 있던 자가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함<그림 3-7>.
- 또, 반상쇄방식에서 실시하는 모든 피해포장의 현지조사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사업집행에 의한 농업인의 부담경감의 관점에서 농가신고발취조사¹⁹⁾로 변경함.
- 다음에,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통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제금을 지불하는 지역인덱스방식²⁰⁾을 신설함.

19) 농업인이 피해포장별 수확량을 신고하면, 공제조합이 해당 피해 포장 중에서 일정 수를 추출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농업인이 신고한 수확량을 보정하여 피해 포장 전체의 수확량을 결정하는 방법임.

20) 통계 데이터에 의한 수확량이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에 공제금을 지불하는 방식임.

그림 3-7 일필반손특례(신설)의 구조



주 1) 전상쇄방식에서는 포장A~C의 수확량의 합계가 평년의 9할을 밑돌지 않으면 공제금이 지불되지 않지만, 전상쇄 + 일필반손특례에서는 목측으로 5할 이상의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는 포장C는 평예등을 실시하지 않고 「5할 감수」라고 평가하여 지불함. (이 경우 공제금은 일필방식에서는 3할을 초과하는 감수 부분에 공제금이 지불되는 것을 토대로, 평년의 2할분(5할 감수 - 3할 감수)을 지불함)

2) 현행 일필전손특례(「10할 감수」라고 평가하여 평년의 7할분을 지불)는 계속 조치됨.

자료: 農林水産省. 2018. 4b. p. 17.

- 나. 과수공제 특정위험방식은 농업인이 장래 발생할 리스크를 예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보상의 종합화를 위해 2021년산까지 폐지함.
- 다. 또, 발작물공제의 팔 및 강낭콩에 대해서는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의 관점에서 현행 반상쇄방식에 추가하여 전상쇄방식을 도입함.

- ② 보상비율

- 발작물공제 및 과수공제의 보상비율은 농업인이 공제로 부담을 고려하여 보상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작물공제와 마찬가지로 현행 보상비율을 상한으로 하여 3가지의 보상비율을 <표 3-13>과 같이 설정함.

표 3-13 발작물공제 및 과수공제의 보상비율 확충

공제별	보상비율
발작물공제	· 전상쇄방식 및 재해수입공제방식 : 8할, 7할, 6할 (단, 콩, 감자 및 사탕무우는 9할, 8할, 7할) · 반상쇄방식 : 7할, 6할, 5할 (단, 콩은 8할, 7할, 6할)
과수공제	· 반상쇄방식 및 전상쇄방식 : 7할, 6할, 5할 · 재해수입공제방식 : 8할, 7할, 6할

주: 밑줄 친 부분이 추가된 것임.

자료: 農林水産省. 2018. 4b. p. 19.

3.3. 가축공제의 조정

3.3.1. 사폐(死廢)사고와 병상(病傷)사고의 분리

○ 사폐사고 보상은 가축이 사망, 폐용(廢用)으로 된 경우 가축 1두당 자산가치를 보전하는 것이며, 병상사고 보상은 가축이 질병, 상해를 입은 경우에 진료비를 보전하는 것임.

- 기존의 가축공제에서는 보험인수 사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폐(死廢)사고와 병상(病傷)사고를 세트로 가입하게 되어 있음.

○ 그러나 사폐사고(자산의 손실)와 병상사고(비용)는 성격이 다른데, 손실 보상을 하나의 공제로 함께 취급하고 있어 농업인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았음.

- 농업인은 어느 한쪽의 보상만을 필요로 해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임.

- 더 큰 문제는 사폐사고와 병상사고의 보상금액은 자산가치에 일정비율을 곱해 설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임. 세트로 가입하므로 사폐사고와 병상사고에서 필요로 하는 보상비율을 별개로 선택할 수 없어 농업인의 요구에 맞지 않았음.

○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하여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가축공제는 사폐공제와 병상공제로 분리하고, 한 쪽만의 보상 및 별개의 보상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3.3.2. 사폐사고에서의 가축의 자산가치 평가 조정

○ 가축에는 비육우와 같은 재고자산적 가축과 착유우나 번식우와 같은 고정자산적 가축이 있음.

- 재고자산은 성장에 따라 매일매일 자산가치가 증가하지만, 고정자산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산가치가 감소함.

○ 그러나 가축공제의 보상금액은 재고자산적 가축과 고정자산적 가축 모두 공제로 기간(1년간)의 기초(期初)의 자산가치를 사용하여 설정되고 있음.

- 때문에 재고자산적 가축이 공제로 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기초부터 사망 시까지에 자산가치가 증가하였음에도 그 증가분이 보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음.

○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매일매일의 가치가 증가하는 비육우등의 사폐사고 보상금액은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의 관점에서 기초(期初)가 아니라 사고발생 시의 자산가치로 평가함.

3.3.3. 소(牛) 백혈병의 취급

○ 소 백혈병(牛白血病)은 도축장에서 도살·해체 후에 처음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축공제에서는 공제에 가입해 있는 농업인이 출하하고, 도축장에서 소 백혈병이라고 진단된 소에 대해 공제금 지불대상으로 하였음.

○ 그런데 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농업인으로부터 가축상이 구입한 소가 도축장에서 소 백혈병이라고 진단된 경우에는 공제관계가 종료했기 때문에 공제금의 지불대상으로 하지 않음. 이 때문에 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농업인이 가축상으로부터 소의 판매대금의 반환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으며, 그 결과 농업인이 손실을 입는 사태가 발생함.

○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소 백혈병에 대해서는 공제에 가입한 농업인으로부터

가축상이 구입하여 도축장에서 소 백혈병이라고 진단된 경우에는 농업인 스스로가 출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제금의 대상으로 함.

3.3.4. 가축의 사고 저감의 인센티브 대책(자기부담비율 책정)

- 가축공제 중 병상사고의 보상(진료비의 보전)은 현재 초진료는 농업인의 자기 부담으로 하고, 초진료 이외는 일정한 지불한도액까지는 공제금에서 전액 보상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음.
- 그러나 병상사고의 발생률은 농업인별로 차이가 있어 사고 저감 대책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
 - 병상사고 저감 노력이 도모되면, 농업인은 소득이 증가하고 경영상 커다란 메리트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가축공제) 경영에서도 공제료가 저감되어 국고부담 경감과 직결됨.
 - 사람의 병상(病傷)에 대해 보험급부를 하는 건강보험에서는 초진료를 포함한 진료비 전체에 정률(원칙 3할)의 자기부담을 설정함으로써 진료비 억제를 꾀함.
-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초진료 이외의 진료비가 전액 보상되어 사고저감의 인센티브로 연결되지 않는 현재의 병상사고의 공제금은 2020년 1월부터 초진료를 포함한 진료비 전체에 일정한 자기부담을 설정하는 것으로 변경됨.
 - 자기부담비율은 현행 자기부담 총액과 동 수준이 되도록 진료비의 1할로 함.

3.3.5. 대기간(待其間)의 취급

- 가축은 질병의 원인의 발생시점을 판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축 입식 후 2주간 이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제금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이를 대기간(待其間)이라 함).²¹⁾

○ 그렇지만, 발생 시점이 증명 가능한 사고에 대해서는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농업인에게 인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또, 공제가입자 간에 거래된 가축은 도입 전의 가축 사육 상황에 대해서는 농업공제조합에 의해 점검되고 있기 때문에 대기간(待其間)을 설정할 필요성이 부족함.

○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가축공제의 대기간(待其間)에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고(外傷 등)를 가입자가 철저히 인지하도록 하고, 공제가입자 간에 거래된 가축에 대해서는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함.

3.3.6. 포괄공제 사무의 간소화

○ 가축공제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가축을 선택해 가입하는 역선택 방지를 위해 가축의 종류별로 전두(全頭)가입(포괄공제)이 의무로 되어 있었음.

- 이 때문에 소, 말, 종돈이 변동이 있을 때, ㉠ 농업인은 농업공제조합에 신고하고, ㉡ 농업공제조합은 변동된 가축을 확인하고, ㉢ 공제가액(가축의 자산가치의 합계)을 변경함.

- 또, 공제료의 추납(追納) 및 반환의 수고를 줄이기 위해 공제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부보비율(공제가액에 대한 공제금의 지불비율)을 자동적으로 증감시키는 방법으로 조정함.

²¹⁾ 단, 사고의 발생이 가축 도입 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음.

- 그 결과 농업인 및 농업공제조합에게 신고나 확인 사무의 엄청난 노력과 사무부담이 발생함과 아울러 가축의 변동 시 부보비율이 변동하기 때문에 동일 가치의 가축이더라도 사폐사고의 발생 시점에 따라 공제금 지불액에 차이가 발생함.
- 한편, 가축의 변동에 대해 가축공제 중 육돈에 대해서는 대략 월별로 사육예정두수를 농업인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예정두수로 월별 공제가액을 설정함으로써 변동 시의 신고, 확인, 공제가액의 변경이라는 업무를 생략하는 구조가 이미 구비되어 있음.
 - 또한, 공제료에 대해서도 분할납부 구조가 있기 때문에 공제가액이 증감한 경우에 곧바로 공제료의 추납이나 반환을 할 필요는 없고, 사후적으로 공제료를 조정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음.
-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포괄공제 사무는 효율적인 사무집행에 의한 농업인의 부담경감 관점에서 가축의 변동 시 농업인이 신고하는 현재의 방식을 폐지하고, 기초(期初)에 연간 사육계획을 신고하고, 기말(期末)에 공제료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간소화함.

3.3.7. 재보험 지불방식

- 농업공제에는 농업인에 대한 공제금 지불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 재보험이 구비되어 있음.
 - 농작물공제, 발작물공제, 과수공제 및 원예시설공제의 경우 미리 농업공제 단체와 정부의 책임분담을 정해두고, 대재해 발생에 의해 공제금 지불이 1년간의 농업공제단체의 지불책임을 초과하는 경우에 국가가 재보험금을 지불하는 구조임.

- 한편, 가축공제는 공제사고 1건별로 공제금의 5할을 국가의 재보험으로 부담하고 있음. 단, 일부의 전염병, 격심재해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제금 전액을 재보험금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음.
 - 때문에 농업공제단체의 지불 재원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재보험금이 지불됨과 아울러 공제사고 1건별로 재보험금 청구 및 지불 사무(연간 약 300만 건)가 발생하여 농업공제단체 및 국가의 부담이 됨.
-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가축공제의 재보험 지불방식은 효율적인 사업집행에 의한 농업인 부담경감이라는 관점에서 다른 공제와 마찬가지로 연간 공제금 지불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경우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3.4. 원예시설공제 단기가입 폐지와 공제금액 상향 조정

- 원예시설공제는 원예시설 본체를 설치하고 있는 기간을 통해 가입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농업인의 선택에 의해 시설 본체의 설치기간 중 피복하고 있는 기간만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그렇지만, 최근에는 과거에 예가 없는 재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피복하지 않은 기간에도 수해, 설해(雪害) 등에 의해 원예시설이 손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원예시설공제의 피복기간만의 단기가입 옵션은 농업인이 장래 발생할 리스크를 예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보상의 종합화를 기하기 위해 폐지함.
- 또한 공제금 지불대상이 되는 피해는 원예시설 1동별로 3만 엔 또는 공제가액

(자산가치)의 10% 초과 피해로 되어 있지만(소손해 불보전(不補填)),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의 관점에서 ① 3만 엔 또는 공제가액의 5% 초과 피해, ② 10만 엔 초과 피해, ③ 20만 엔 초과 피해 중에서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다음에 원예시설공제의 공제료 국고보조는 1농가당 공제금액 8천만 엔까지가 한도로 되어 있었지만, 이 한도를 2배(1억 6천만 엔)로 인상함.

3.5. 위험단계별 보험료율 적용 및 무사고환급 폐지

- 공제료는 원칙적으로 농업공제조합 내에서 품목별·인수방식등별로 동일한 요율이 적용되지만, 농업공제조합의 판단에 의해 농업인별 피해 발생 상황에 따라 요율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였음(위험단계별 공제료율).

- 그러나 동일한 요율에서는 ① 공제금 지불이 많은 농업인이나 적은 농업인이나 동일한 부담이기 때문에 공평성이 확보되지 않고, ② 농업인이 피해 저감에 노력해도 공제료 부담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저감의 인센티브가 작동하지 않고, ③ 자신의 피해 상황과 공제료가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우량 농업인의 가입에 장애가 되는 문제가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위험단계별 공제료율은 각 조합별로 설정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전체의 2할 정도의 도입에 머무르고 있음.

- 한편, 과거의 공제금 지불액이 부담한 공제료의 일정액을 밀도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업공제조합의 판단에 따라 공제료의 일부를 환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무사고환급).

- 무사고환급은 공제료의 소멸감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① 농업공

제조합에 적립금이 없으면 실시되지 않고, 또 적립금이 있어도 농업공제조합의 판단에 따르기 때문에 농업인의 사고저감 인센티브가 약하며, ② 무사고환급의 금액 산정에 사무비용이 발생함.

- 어업공제에도 무사고환급이 있지만, 어업공제에서는 무사고환급을 시행하는 경우 어업자 및 국가의 쌍방에 환급을 하고 있는 반면, 농업공제에서는 농업인에게만 환급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① 공제료는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위험단계별 공제료율을 모든 농업공제조합에서 도입하고, ② 무사고환급은 2021년도까지 폐지함.
 - 다만, 이 기간 중에 무사고환급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농업인 및 국가의 쌍방에게 환급하도록 함.

3.6. 운영조직의 효율화

- 농업공제는 각 지역에 설립된 농업공제조합(또는 시정촌)이 실시주체가 되어 관내의 농업인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징수하며, 피해 입은 농업인에게 공제금을 지불하며, 조합 내에서 리스크 분산을 도모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었음.
- 또한, 조합등의 공제금 지불이 거액이 될 수 있는 대재해에 대비하여 도도부현별 농업공제조합연합회 및 정부가 보험 및 재보험을 하고 있음.
- 지금까지 농업공제조합은 리스크 풀링으로 발생하는 리스크 분산에 의한 안

정적 사업 운영과 업무 효율화에 의한 운영비 삭감 등을 위해 합병을 추진해 오고 있음.

- 현실적으로 몇 개의 군 단위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있는 반면, 도도부현의 구역(1현 1조합)으로 되어 있는 조합도 있음(현행 제도에서는 도도부현 구역까지 광역화가 가능).

○ 그렇지만, 현재의 운영조직은 몇 가지 문제가 있음.

- 첫째, 조합이 지역별로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 ㉠ 보험으로서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위험분산기능의 경우, 농업인이 감소하고 있어 충분한 보험모집단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있음. 동일본 대지진 피해와 2014년의 설해와 같이 손해가 광역적이고 심대하게 발생하는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재해가 발생하면 조합 전역에 손해가 미치기 때문에 리스크 분산이 되지 않음.
 - ㉡ 농업인의 감소에 수반하여 부과금 수입도 감소하여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음.
 - ㉢ 공제 실시품목은 각 조합별로 설정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공제사업이 실시되지 않는 품목이 있어 공제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농업인이 존재함.
 - ㉣ 농업공제단체에서 통일적인 내부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버넌스가 불충분하게 됨.
- 둘째, 농업공제단체의 운영 경비에는 거액의 국비와 조합원의 부과금이 투입되어 있으며, 사무비의 효율화·합리화가 필요함.

○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농업공제단체는 조직의 효율화와 거버넌스 강화를 도모하도록 함.

- 첫째, 전국을 구역으로 하는 농업공제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연합회는 수입보험사업의 운영 외에 조합이 실시하고 있지 않는 품목의 공제사업과 임의공제사업의 재보험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둘째, 특정조합(1현 1조합)끼리의 합병, 전국연합회와 특정조합의 합병, 조합으로부터 전국연합회로의 공제사업의 양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셋째, 도도부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가가 조합의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보험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비밀유지의무 등을 강화함.

표 3-14 농업공제 수정 내용의 개요

현행	수정 후
쌀·밀의 당연가입제 ○ 쌀·밀은 공제의 가입이 의무	○ 임의가입제로 이행함
인수방식 ○ 쌀·밀의 일필방식 · 피해포장의 전체 필지를 농업인이 현지조사 등을 하여 손해평가 하는 방식 ○ 과수의 특정위험방식 및 원예시설 공제의 단기가입 · 재해의 종류나 기간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방식	○ 폐지하지만, 예취를 하지 않고 목측으로 판정하는 일필 전손특례·일필반손특례를 설정함으로써, 포장별 심한 피해를 보상함 ○ 보상의 종합화를 위해 폐지함
가축공제 ○ 사패(死廢)공제와 병상(病傷)공제의 일괄가입 ○ 공제기간 개시 시의 가치로 보상 ○ 도축장에서 발견되는 우백혈병 ○ 초진료는 자기부담, 기타 진료비는 공제금에서 보상 ○ 가축의 입식으로부터 2주간 이내의 사고는 공제금의 청구가 불가	○ 사패(死廢)공제와 병상(病傷)공제로 분리하고, 한쪽만의 선택도 가능하도록 함 ○ 매일매일의 가치가 증가하는 비육우등은 사고 발생 시의 가치로 보상함 ○ 농업인이 출하한 경우도 가축상 경우의 경우도 공제금의 대상으로 함 ○ 진료비 전체(초진료 포함)의 1할을 자기부담으로 함(현행의 자기부담총액과 동일한 수준) ○ 공제가입자간에 거래된 가축은 공제금의 대상으로 함
원예시설공제 ○ 공제금의 지불대상이 되는 피해 · 1동당 만 엔 또는 보상가액의 10% 초과 피해 ○ 공제료의 국고보조의 한도 · 1농가당 공제금액 8천만 엔까지	○ 3만 엔 또는 보상가액의 5% 초과 피해가 있으면 공제금을 지불함 ○ 2배(1억 6천만 엔까지)로 인상함
공제료(보험료) ○ 공제료율은 농업인 일률로 설정 ○ 무사고환급	○ 공제금의 수취가 적은 농업인은 공제료율의 단계를 낮춰감 ○ 무사고 환급금 2021년까지 폐지

자료: 農林水産省. 2018. 4. 農業共済の見直しについて.

농업경영수입보험사업 실시요령²²⁾

농림수산성 경영국장 통지

제 정 : 2018년 9월 28일자 30경영제1431호

일부개정 : 2018년 10월 23일자 30경영제1546호

목 차

제1장 통칙

제1절 취지

제2절 실시주체

제1. 실시주체

제2. 업무의 위탁

제3. 농업경영수입보험사업의 보급·추진

제3절 수입보험

제4절 보험자격자

²²⁾ 일본의 농업경영수입보험사업 실시요령을 번역하여 재구성하였음.

제5절 보상내용

제1. 보험기간

제2. 보험금액

제3. 보전대상금액

제6절 농업수입금액

제1. 대상농산물등

제2. 농업수입금액

제3. 실적농업수입금액

제4. 예상농업수입금액

제7절 기준수입금액

제1. 산정방법의 원칙

제2. 산정방법의 특례

제8절 보험료 및 적립금

제1. 보험료 산정방법

제2. 적립금 산정방법

제9절 사무비

제10절 보험료등의 상쇄의 제한

제11절 피보험자가 준수할 사항

제12절 보험사고 방지 의무등

제13절 조사

제14절 보험금 및 특례보전금 지불

제1. 보험금 지불

제2. 특약보전금 지불

제3. 배상금등의 취급

제15절 보험금 및 특약보전금 지불의 면책

제2장 보험계약 체결

제1절 가입신청

제1. 가입신청서 제출

제2. 「가입신청서」 작성

제3. 「과거의 농업수입금액신고서」작성

제4. 「대상 농산물등의 종류별 판매금액 정리를 위한 보조 양식(form)」 작성

제5. 「농업경영에 관한 계획」 작성

제6. 가입신청서 접수

제7. 기준수입금액 산정

제8. 「보험증권」 및 「보험료 및 적립금통지서」 작성 및 송부

제9. 불승낙 통지

제2절 보험료, 적립금 및 사무비 징수

제3절 가입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농업수입금액신청서 제출에 관계되는
기준수입금액등의 수정

제4절 독촉 및 연체금

제3장 영농계획 변경

제1절 영농계획 변경 통지

제1. 영농계획 변경 통지

제2. 기준수입금액 변경

제2절 보험료, 적립금 및 사무비 추가징수 및 반환

제1. 보험료, 적립금 및 사무비의 추가징수

제2. 보험료, 적립금 및 사무비 반환

제4장 사고발생 통지

제1절 사고발생 통지

제1. 사고발생 통지

제2. 사고발생 통지의 접수, 확인 및 지도

제3. 사고발생등통지서 반송

제2절 자기 사정에 따른 재배 또는 사육 중지의 통지

제1. 자기 사정에 따른 재배 또는 사육중지의 통지

제2. 재배 또는 사육 중지의 통지 접수

제3. 농업수입금액 감소액 산정 방법

제5장 보험금 및 특약보전금 청구 및 지출

제1. 「보험기간의 농업수입금액실적신고서 겸 보험금등청구서」제출

제2. 「보험기간의 농업수입금액실적신고서 겸 보험금등청구서」접수 및 확인

제3. 보험금등 예상금액의 통지

제4. 보험금등 청구

제5. 보험금등 지불

제6.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취득

제6장 연결자금 대부

제1절 대부 대상자

제2절 신청절차

제3절 연결자금 대부

제4절 연결자금 상환 및 반환

제1. 연결자금 상환

제2. 연결자금 반환

제3. 독촉 및 연체금

제7장 재보험 절차

제1절 재보험료 납입

제1. 농림수산대신에 대한 통지

제2. 재보험료 납입

제2절 재보험금 청구

제1. 농림수산대신에 대한 통지

제2. 재보험금 청구

제3. 재보험금 개산불(概算拂) 청구

제8장 기타

제1절 농업경영의 양도

제1. 사망, 해산 등의 경우의 권리의무의 승계

제2. 보험기간 개시일 전 농업경영의 승계 또는 양도

제2절 보험계약의 종료

제1. 보험계약의 실효

제2. 보험계약의 취소

제3. 보험계약의 무효

제4.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계약 해제

제5. 전국연합회에 의한 보험계약 해제

제6. 해제의 효력

제3절 기타

제1. 시효

제2. 유사제도로부터 수입보험으로 이행하는 경우의 유의점

제3. 청색신고에 수정신고가 발생한 경우의 취급

제4. 금융상품의 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권유방침의 책정

제5. 전국연합회 문서의 보존기간

(별지1) 기준수입금액 산정방법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수입금액 조정방법

(별지2) 수입보험 위험단계별 보험료율 설정방법

(별지3) 면책의 범위 및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험금 및 특약보전금 계산
방법

제1장 통칙

제1절 취지

농업보험법(1947년 법률 제185호. 이하「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수입보험사업의 실시에 대해서는 법, 동법 시행령(2017년 정령 제263호. 이하「령」이라고 한다.), 동법 시행규칙(2017년 농림수산성령 제63호. 이하「규칙」이라고 한다.), 농업경영수입보험 기준수입금액 설정준칙(2018년 농림수산성 고시 제711호), 농업경영수입보험 손해인정준칙(2018년 농림수산성 고시 제712호), 2018년 농림수산성 고시 제660호(농업보험법 시행규칙 제175조 제4항(동령 제183호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 승계에 관계되는 청색신고서 제출기간의 통산(通算) 방법을 정하는 건)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본 실시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또, 본 실시요령에서의 어귀(語句)의 정의는 법, 령, 규칙과 동일하다.

제2절 실시주체등

제1. 실시주체

전국을 그 구역으로 하는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이하「전국연합회」라고 한다.)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농업경영수입보험사업을 실시한다.

- ① 피보험자의 농업수입 감소에 대하여 해당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또는 특약보전금을 지불하는 사업(이하「수입보험」이라고 한다.)
- ② 수입보험 피보험자에 대하여 해당 피보험자의 농업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이하「연결자금」이라고 한다.)을 대부하는 사업

제2. 업무의 위탁

(1) 전국연합회는 농업경영수입보험사업 관련 업무 중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① 수입보험 인수 업무(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신청의 승낙 결정에 관계되는 것을 제외한다.)
- ② 보험료 징수 업무
- ③ 농업수입 감소가 그 농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고 한다.) 수령 업무
- ④ 사무비 징수 업무
- ⑤ 연결자금 대부 업무(대부 결정에 관계되는 것을 제외한다.)
- ⑥ 연체금 징수 업무
- ⑦ 보험금 지불 업무(보험금 금액의 결정에 관계되는 것을 제외한다.)
- ⑧ 특약보전금 지불 업무(특약보전금 금액의 결정에 관계되는 것을 제외한다.)
- ⑨ 농업경영수입보험사업 실시에 필요한 조사 업무
- ⑩ 보험사고 발생의 방지 업무

(2) 전국연합회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자로 한다.

- ① 농업공제조합
- ② 도도부현(都道府縣)의 구역을 그 구역으로 하는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이하 「도도부현연합회」라고 한다.)
- ③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시정촌(市町村)
- ④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연합회
- ⑤ 은행법(1981년 법률 제59호)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은행, 신용금고 및 신용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연합회, 노동금고 및 노동금고연합회, 농림중앙금고 및 손해보험회사

제3. 농업경영수입보험사업의 보급·추진

1. 전국 단계

전국연합회는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일반사단법인 전국농업회의소, 공익사단법인 일본농업법인협회, 일반사단법인 전국청색신고회총연합등의 협력을 얻어 농업경영수입보험사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한 보급·추진체제를 구축한다. 또, 국가는 전국연합회가 농업경영수입보험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함과 아울러 지도 및 조언을 한다.

2. 도도부현 단계

전국연합회는 도도부현, 도도부현농업협동조합중앙회, 도도부현농업회의, 농업공제조합, 도도부현연합회 등의 협력을 얻어 농업경영수입보험사업 보급·추진의 대처에 대한 방침 및 역할 분담을 결정한다. 또, 지방농정국, 북해도 농정사무소 및 오키나와(沖縄)종합사무국은 전국연합회가 실시하는 농업경영수입보험사업 보급·추진의 대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3. 지역 단계

전국연합회는 시정촌, 농업협동조합, 농업위원회, 농업공제조합, 도도부현연합회 등의 협력을 얻어 “2”에서 결정한 방침 및 역할분담에 기초하여 농업경영수입보험사업에 관한 문의창구 설치, 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한다.

제3절 수입보험

(1) 전국연합회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 중 농업수입금액이 보험한도액에 달하

지 않은 때에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불하는 계약(이하 「보험 방식」이라고 한다.)을 체결한다.

(2) 전국연합회는 보험방식 체결과 아울러 수입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이하 「보험자격자」라고 한다.)의 신청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내용의 특약(이하 「적립방식」이라고 한다.)을 할 수 있다.

- ① 피보험자가 적립금을 전국연합회에 적립하는 것.
- ② 전국연합회가 피보험자의 보험기간 중 농업수입금액이 보전한도액에 달하지 않는 때에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 특약보전금을 지불하는 것.
- ③ 전국연합회가 보험기간 만료 후 적립금 금액에 잔여가 있을 때는 그 잔여 금액을 해당 피보험자에게 되돌려주는 것.

제4절 보험자격자

(1) 보험자격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전부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 ① 다음에 열거하는 기간이 청색신고 제출 연도에 해당할 것.
 - 가. 개인의 경우 가입신청 날(이하 「가입신청일」이라고 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
 - 나. 법인의 경우 가입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연결친법인(해당 연결친법인에 의한 연결완전지배관계에 있는 연결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에 있어서는 연결사업연도. 이하 동일)의 前사업연도
- ② 장부서류를 비치하고 거래를 기록하며, 아울러 해당 장부서류를 보존하고 있을 것.
- ③ 제2장 제1절 제5의 「농업경영에 관한 계획」(양식 4호)을 작성하고 있을 것.
- ④ 보험기간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업(이하 「유사제도」라고 한다.)을 이용하고 있지 않을 것.
 - 가. 법에 근거한 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고 한다.) 중 다음에 열거하는 것

- (ㄱ) 농작물공제 또는 과수공제 중 수확공제 또는 발작물공제(공제책임기간의 종료일이 해당 보험기간 외인 공제관계는 제외한다.)
 - (ㄴ) 원예시설공제 중 시설 내 농작물을 공제목적으로 하는 것(시설 내 농작물의 재배기간이 해당 보험기간 외인 공제관계는 제외한다.)
 - (ㄷ) 가축공제 중 사망폐용공제(이하 「사망폐용공제」라고 한다.)에서 다음의 가축을 공제목적으로 하는 것
 - 규칙 제101조 제1항 제3호의 육성유우
 - 규칙 제101조 제1항 제6호의 육성·비육마
- 나. 야채생산출하안정법(1966년 법률 제103호),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규칙(1966년 농림성령 제36호) 및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진흥기구법 시행규칙(2003년 농림수산성령 제103호)에 근거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사업(동 사업에 관계되는 교부금의 대상으로 하는 기간이 해당 보험기간 외인 경우는 제외한다.)
- (ㄱ) 지정야채가격안정대책사업실시요령(2003년 9월 29일자 15생산제 4157호 농림수산사무차관 통지(通知))에 근거한 지정야채가격안정대책사업
 - (ㄴ) 계약지정야채안정공급사업실시요령(2003년 9월 29일자 15생산제 4157호 농림수산사무차관 통지)에 근거한 계약지정야채공급사업 중 가격차보급금을 교부하는 사업
 - (ㄷ) 특정야채등공급산지육성가격차보급사업실시요령(1966년 10월 1일자 식류제5508호)에 근거한 특정야채등공급산지육성가격차보급사업
 - (ㄹ) 계약특정야채등안정공급촉진사업실시요령(2002년 8월 2일자 14생산제3627호 농림수산사무차관 통지)에 근거한 계약특정야채등안정공급촉진사업 중 가격차보급금을 교부하는 사업
 - (ㄴ) 계약야채수입확보모델사업실시요령(2011년 3월 31일자 22생산제10948호)에 근거한 계약야채수입확보모델사업 중 수입보전 타입(type)

- 다.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진흥기구법 시행규칙(2003년 농림수산성령 제 103호)에 근거한 가공원료유생산자경영안정대책사업(동 사업에 관계되는 보전금의 대상으로 하는 기간이 해당 보험기간 외인 경우는 대상 외로 한다.)
- 라. 농업 후계자에 대한 경영안정을 위한 교부금 교부에 관한 법률(2006년 법률 제88호. 이하 「후계자경영안정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한 경영소득안정대책등실시요강(2011년 4월 1일자 22경영제7133호 농림수산사무차관 통지)에 근거한 수입감소영향완화교부금을 교부하는 사업(동 사업에 관계되는 교부금의 대상으로 하는 농산물의 수확기가 해당 보험기간 외인 경우는 제외한다.)
- 마. 골풀·다다미거죽 농가경영소득안정화대책사업실시요강(2014년 3월 20일자 25생산제3364호 농림수산사무차관 통지)에 근거한 골풀·다다미거죽 농가경영소득안정화대책사업(동 사업에 관계되는 지원금의 대상으로 하는 기간이 해당 보험기간 외인 경우는 제외한다.)
- (2) (1)의 「청색신고제출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연결친법인을 포함한다.)별로 그 제출하는 청색신고서(소득세법(1965년 법률제33호) 제2조 제1항 제40호에 규정하는 청색신고서, 법인세법(1965년 법률 제34호) 제2조 제37호에서 규정하는 청색신고서 또는 동조 제32호에서 규정하는 연결확정신고서를 말한다. 이하 동일.)의 대상이 되는 연도(사업연도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를 말한다. 단, 1년이 되지 않는 사업연도, 소득세법 제67조의 규정을 적용 받은 연도 이전의 연도 및 그 기간의 수입에 대해 청색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연도의 이전 연도를 제외한다.
- ㉞ 제8장 제1절 제2의 1(2)의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의 승계 또는 양도가 있었던 경우에는 1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연도를 청색신고제출년도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제5절 보상 내용

제1. 보험기간

수입보험의 보험기간은 다음에 열거하는 대로 한다.

- ① 개인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1년간
- ② 법인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의 1년간(연결친법인은 해당 연결친법인의 연결사업연도의 1년간)

제2. 보험금액

(1) 보험방식의 보험금액은 다음 식에 의해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text{보험금액} = \text{보험한도액} \times \text{보험방식의 지불율}$$

주: 산정 결과 엔 미만의 끝자리가 발생한 경우는 잘라버리는 것으로 한다.

(2) 보험방식의 지불율은 보험자격자가 90%, 80%, 70%, 60% 또는 50% 중에서 선택한다.

(3) 보험한도액은 다음 식에 의해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text{보험한도액} = \text{기준수입금액} \times \text{보험방식의 보상한도}$$

주: 산정 결과 엔 미만의 끝자리가 발생한 경우는 잘라버리는 것으로 한다.

(4) 기준수입금액은 제6절에서 정한 농업수입금액을 이용하여 제7절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전국연합회가 정한다.

(5) 보험방식의 보상한도는 가입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前) 사업연도까지의 보험자격자의 청색신고제출년(제7절 제1의 (1)의 (주2)의 신

청을 한 경우는 동 항의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연도를 제외한다.)의 연수(年數) 또는 사업연도수에 따라 보험자격자가 다음 표의 우측 란에 열거한 비율 중에서 선택한다.

가입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까지의 청색신고제출년	보험방식의 보상한도
4년 이상	80%, 70%, 60%, 50%
3년	78%, 70%, 60%, 50%
2년	75%, 70%, 60%, 50%
1년	70%, 60%, 50%

제3. 보전대상금액

(1) 적립방식의 보전대상금액은 다음 식에 의해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text{보전대상금액} = \text{기준보전금액} \times \text{적립방식의 지불률}$$

주: 산정 결과 엔 미만의 끝자리가 발생한 경우는 잘라버리는 것으로 한다.

(2) 적립방식의 지불률은 보험자격자가 90%, 80%, 70%, 60% 또는 50% 중에서 선택한다. 단, 제2의 (2)에서 선택한 보험방식의 지불률을 초과하지 않는 비율로 한다.

(3) 기준보전금액은 다음 식에 의해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text{기준보전금액} = \text{기준수입금액} \times \text{적립방식의 보상폭}$$

주: 산정 결과 엔 미만의 끝자리가 발생한 경우는 잘라버리는 것으로 한다.

(4) 적립방식의 보상 폭은 보상자격자가 10% 또는 5% 중의 어느 것을 선택한다.

제6절 농업수입금액

제1. 대상 농산물등

(1) 수입보험의 대상이 되는 농산물등(이하 「대상 농산물등」이라고 한다.)은 보험자격자가 재배 또는 사육을 하고 판매하는 농작물, 가축 및 농산물, 정미(精米), 모찌, 황차(荒茶), 수제차(仕上茶), 무말랭이, 다다미거죽, 모시, 건버섯 및 우유 등 외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험자격자가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에 간단한 가공(위탁가공을 포함)을 한 것으로 한다.

(2) (1)에 관계없이 대상 농산물에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제외한다.

① 다음에 열거하는 가축 또는 축산물

가. 육용우(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진흥기구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에 열거하는 사업 중 육용우비육경영안정특별대책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해당 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자가 사육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나. 육용자우(육용자우생산안정등특별조치법(1988년 법률 제98호) 제2조에 규정하는 육용자우 중 육용자우생산안정등특별조치법 시행령(1988년 정령 제347호) 제9조에 규정하는 월령에 도달한 것을 말한다.)

다. 육돈(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진흥기구법 시행규칙 제2조 제7호에 열거하는 사업 중 양돈경영안정대책사업의 대상이 되는 돼지(해당 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자가 사육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라. 계란

② ①에 열거한 외에 ①의 ‘가’에 열거하는 육용우 또는 ‘나’에 열거하는 육용자우에 대해 사망폐용공제의 공제관계가 존재하는 자에 대해서는 규칙 제101조 제1항 제4호의 육성·비육우, ‘다’에 열거하는 육돈에 대해 사망폐용공제의 공제가 존재하는 자에 있어서는 동항 제8호에 열거하는 육돈

제2. 농업수입금액

(1) 농업수입금액은 다음 식에 의해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text{농업수입금액} = \text{대상 농산물등의 판매금액} + \text{사업소비금액} + (\text{기말재고액} - \text{기초재고액})$$

(2) (1)의 규정에 의해 농업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금액을 대상 농산물등의 판매금액에 포함한다. 단, 보험자격자 이외의 자가 생산한 대상 농산물등의 판매금액, 기타의 대상 농산물등의 판매금액으로부터 제외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1)의 대상 농산물등의 판매금액으로부터 제외한다.

- ① 사탕 및 전분의 가격조정에 관한 법률(1965년 법률 제109호)에 근거한 감미자원작물교부금 및 전분원료용고구마교부금, 축산경영의 안정에 관한 법률(1961년 법률 제183호)에 근거한 생산자보급교부금 또는 생산자보급금 및 집송유조정금, 후계자경영안정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교부금 금액에 동조 제4항에 규정하는 조정액을 추가하여 얻은 금액(이하, 이들 교부금을 「수량불(數量拂)」로 총칭한다.)
- ② 농업협동조합등으로부터 지불되는 대상 농산물등에 관한 개산금 및 정산금
- ③ 가축전염병예방법(1951년 법률 제166호)에 근거해 지불되는 대상 농산물등에 관한 수당금
- ④ 식물방역법(1950년 법률 제151호)에 근거해 지불되는 대상 농산물등에 관한 보상금
- ⑤ 일본담배산업주식회사로부터 지불되는 앞담배재해지원금
- ⑥ 대상 농산물등에 관한 집락영농(임의조직)으로부터의 분담금(단, 구성원별 식부면적, 수확량 및 판매액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⑦ 대상 농산물등의 선물거래에서의 정산(差金)결제 이익
- ⑧ 기타의 대상 농산물등의 판매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3. 실적농업수입금액

(1) 보험자격자의 가입신청일이 속하는 연도까지의 각 청색신고 제출년도(5년을 한도로 한다.)의 농업수입금액(1년간을 초과하는 사업연도가 있을 때는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날 이후의 기간에 관계되는 부분의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실적농업수입금액」이라고 한다.)에서의 대상 농산물등에 관계되는 판매금액은 개인에 대해서는 손익계산서의 판매금액, 법인에 대해서는 손익계산서의 상품제품등 매상고 중 농산물등의 매상고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으로 한다. 단, 보험자격자 이외의 자가 생산한 대상 농산물등에 관계되는 판매금액, 그 외의 대상 농산물등에 관계되는 판매금액으로부터 제외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주: 제8장 제1절 제2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승계인 또는 양도인의 청색신고제출년을 승계인 또는 양수인의 청색신고제출년으로 취급하는 경우의 실적농업수입금액 산정은 동 (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실적농업수입금액에서의 대상 농산물등에 관계되는 판매금액에는 개인의 손익계산서의 잡수입 또는 법인(연결친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 있어서 동일.)의 손익계산서의 영업 외 수익 및 특별이익(이하 「잡수입등」이라고 한다.)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단, 제2의 (2)에 규정하는 금액은 포함한다.

(3) 실적농업수입금액에서의 대상 농산물등에 관계되는 사업용소비 금액은 개인에 대해서는 손익계산서의 가사소비사업소비금액에서 소비금액을 뺀 금액, 법인에 대해서는 손익계산서의 사업소비고 중 보험자격자가 생산한 대상 농산물등에 관계되는 금액으로 한다.

(4) 실적농업수입금액에서의 대상 농산물등에 관계되는 기말재고는 개인에 대해서는 손익계산서의 기말에 보유하는 농산물의 재고, 법인에 대해서는 손익계산서의 기말상품제품원재료등재고 중 보험자격자가 생산한 대상 농산물등에 관계되는 금액으로 한다.

- (5) 실적농업수입금액에서의 대상 농산물등에 관계되는 기초재고는 개인에 대해서는 손익계산서의 기초에 보유하는 농산물의 재고, 법인에 대해서는 손익계산서의 기초상품제품원재료등재고 중 보험자격자가 생산한 대상 농산물등에 관계되는 금액으로 한다.
- (6)수입보험에 가입해 있던 연도에 관계되는 대상 농산물등에 관계되는 사업용 소비 금액, 기말재고 및 기초재고는 해당 각 연도에 대해 (3)부터 (5)까지의 규정에 의해 보험자격자가 전국연합회에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제4. 예상농업수입금액

- (1) 제2장 제1절 제5의 「농업경영에 관한 계획」(양식 4호)에 관계되는 서류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보험기간 중에 예상되는 농업수입금액(이하 「예상농업수입금액」이라고 한다.)에서의 대상 농산물등에 관계되는 예상수입금액은 다음에 열거하는 금액을 합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① 보험자격자가 생산하는 대상 농산물등 중 보험기간에 판매가 예상되는 것의 종류별 수량에 예상판매단가를 곱해 얻은 금액
 - ② 보험자격자가 생산하는 대상 농산물등 중 수량불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에 관계되는 보험기간에 수확 또는 출하가 예상되는 수량에 보험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해당 교부금의 예상단가를 곱해 얻은 금액
- (2) 예상농업수입금액에서의 대상 농산물등에 관계되는 사업용소비의 예상금액은 보험자격자가 생산하는 대상 농산물등 중 보험기간에 사업용소비에 충당하는 것이 예상되는 것의 종류별 수량에 보험기간의 「농업경영에 관한 계획」(양식 4호)에 관계되는 서류에서 보험자격자가 (1)의 ①의 예상판매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재한 예상단가를 곱해 얻은 금액의 합계 금액으로 한다.
- (3) 예상농업수입금액에서의 대상 농산물등에 관계되는 예상기말재고는 보험자격자가 생산하는 대상 농산물등 중 보험기간 종료 시의 예상재고수량에

- (1)의 ①의 예상판매단가를 곱해 얻은 금액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 (4) 예상농업수입금액에서의 대상 농산물등에 관계되는 예상기초재고는 보험 자격자가 해당 보험기간 개시 전에 생산한 대상 농산물등의 종류별 보험기간 개시 시의 예상재고수량에 (1)의 ①의 예상판매단가를 곱해 얻은 금액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제7절 기준수입금액

제1. 산정방법의 원칙

- (1) 전국연합회는 보험자격자의 실적농업수입금액의 평균액(이하「과거의 평균수입」이라고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수입금액으로 정한다.
- (주1) 산정 결과 1엔 미만의 끝자리가 생긴 경우에는 잘라버리는 것으로 한다.
- (주2) 보험자격자가 청색신고제출년도 중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연도에 그 기간의 농업수입금액이 0엔인 것이 있을 때에 그 연도 이외의 청색신고제출년도의 농업수입금액을 이용하여 기준수입금액을 산정하는 취지의 신청을 한 때는 전국연합회는 (1)에 관계없이 그 연도 이외의 각 청색신고년도의 농업수입금액의 평균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수입금액으로 정한다.
- (2) 전국연합회는 예상농업수입금액이 과거의 평균수입을 밑도는 경우에는 (1)에 관계없이 해당 예상농업수입금액을 기준수입금액으로 정한다.

제2. 산정방법의 특례

전국연합회는 경영면적 확대에 따라 예상농업수입금액이 과거의 평균수입을 상회하는 경우에 보험자격자가 신청한 때는 제1의 규정에 관계없이 <별지1>의 「기준수입금액의 산정방법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수입금액의 조정방법」에 기초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수입금액으로 정한다.

제8절 보험료 및 적립금

제1. 보험료 산정방법

(1) 보험료는 다음 식에 의해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text{보험료} = \text{보험금액} \times \text{보험료율}$$

주: 산정 결과 엔 미만의 끝자리가 발생한 경우는 잘라버리는 것으로 한다.

(2) 보험료 중 국고부담분(이하 「국고부담보험료」라고 한다.)은 다음 식에 의해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text{국고부담보험료} = \text{보험금액} \times \text{기준보험료율} \times 1/2$$

주: 산정 결과 엔 미만의 끝자리가 발생한 경우는 잘라버리는 것으로 한다.

(3) 보험료 중 피보험자의 부담분(이하 「피보험자부담보험료」라고 한다.)은 다음 식에 의해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text{피보험자부담보험료} = \text{보험료} - \text{국고부담보험료}$$

(4) 보험료율 및 기준보험료율은 법 제180조 제3항에 근거하여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보험료표준율을 기초로 하여 전국연합회가 사업규정에서 정한 위험단계별 보험료율 및 기준보험료율 중 피보험자가 속하는 위험단계 구분에 관계되는 것을 적용한다. 위험단계별 보험료율 및 기준보험료율과 더불어 피보험자가 속하는 위험단계구분을 정하는 방법은 별지2와 같다.

제2. 적립금 산정방법

특약보전금에 충당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적립금은 다음 식에 의해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text{적립금} = \text{보전대상금액} \times 1/4 \text{ (국고부담 75\%)}$$

주: 산정 결과 엔 미만의 끝자리가 발생한 경우는 잘라버리는 것으로 한다.

제9절 사무비

전국연합회는 사업연도마다 전국연합회가 필요로 하는 사무비 예정액에서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부담에 관계되는 부분의 금액, 기타 수입예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해서 얻은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0절 보험료등 상쇄의 제한

피보험자는 전국연합회에 지불할 보험료 및 사무비에 대해 상쇄(相殺)를 가지고 전국연합회에 대항할 수 없다.

제11절 피보험자가 준수할 사항

전국연합회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① 장부의 작성 및 보존

보험기간 중에 다음에 열거하는 장부를 작성하고, 각각 정하는 사항의 기록 및 보존을 하는 것.

가. 농작업일지

보험기간의 영농계획(제2장 제1절 제5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동일)의 대상 농산물등의 종류별로 식부, 시비 및 방제, 수확등(축산물의 경우는 수정, 분만, 밀소(素畜)의 도입, 급이, 투약 및 출하 등) 작업 연월일 및 내용

나. 사업소비 장부

대상 농산물등을 사업소비한 연월일, 수량 및 용도 등

다. 판매 장부

세법에 근거해 기록할 사항(판매금액 및 수량 등)

㉞ ‘가’ 및 ‘나’의 보존기간은 보험기간 종료일의 익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② 영농계획의 변경 통지

보험기간 중에 보험기간의 영농계획에 기재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3장 제1절 제1에 근거하여 전국연합회에 영농계획의 변경을 통지하는 것.

③ 과거의 청색신고결산서의 변경 통지

과거의 청색신고결산서(기준수입금액의 산정에 이용된 것에 한한다.)의 내용에 대해 경정(更正)의 청구 또는 수정신고 등에 의해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전국연합회에 통지하는 것.

④ 조사 등의 협력

전국연합회로부터 제13절에 규정하는 조사 및 수입보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자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에 협력하는 것.

제12절 보험사고 방지 의무

- (1) 피보험자는 통상의 농업인이 실시하는 농업경영에 관계되는 노력, 기타 보험 사고 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 (2) 전국연합회는 (1)의 노력, 기타 보험사고 발생의 방지에 대해 피보험자를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행정기관, 연구기관 등과 협력을 도모한다.
- (3) 전국연합회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발생의 방지를 위해 특히 필요한 처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비용은 전국연합회 부담으로 한다.

제13절 조사

- (1) 전국연합회는 보험사고 발생의 방지 또는 보험사고의 인정을 위해 필요한 때는 언제라도 피보험자 및 그 관계자의 사무소, 포장, 기타 시설에 들어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2) 전국연합회는 (1)의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피보험자 및 그 관계자에게 통지하고,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3) 전국연합회는 피보험자가 조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와 조사 결과 부정이 인정된 경우는 보험금등을 면책으로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제14절 보험금 및 특례보전금의 지불

제1. 보험금의 지불

- (1) 전국연합회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 중 농업수입금액이 보험한도액에 달하지 않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불한다.
- (2) 보험금은 보험한도액, 보험방식의 지불률, 피보험자로부터 제출된 「보험기간의 농업수입금액실적신고서 겸 보험금등청구서」(양식 11호)의 농업수입금액에 기초하여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한다.

$$\text{보험금} = (\text{보험한도액} - \text{보험기간 중 농업수입금액}) \times \text{보험방식의 지불률}$$

주: 산정 결과 엔 미만의 끝자리가 발생한 경우는 잘라버리는 것으로 한다.

- (3) 보험기간 중 농업수입금액은 제1장 제6절 제3의 규정에 의해 산정하는 실적 농업수입금액에 준해 산정하고, 후계자경영안정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교부금 금액에 동조 제4항의 조정액을 더하여 얻은 금액이 동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교부금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한다.

제2. 특약보전금 지불

- (1) 전국연합회는 적립방식에 대해 피보험자의 보험기간 중 농업수입금액이 보전한도액에 달하지 않는 경우에 특약보전금을 지불한다.
- (2) 특약보전금은 보전한도액, 적립방식의 지불률 및 피보험자로부터 제출된 「보험기간의 농업수입금액실적신고서 겸 보험금등청구서」(양식 11호)의 농업수입금액등에 기초하여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한다.

$\text{특약보전금} = (\text{보전한도액} - \text{보험기간의 농업수입금액}) \times \text{적립방식의 지불률}$ $\text{보전한도액} = \text{보험한도액} - \text{기준보전금액}$ <p>※ 단, 특약보전금은 보전대상금액 또는 피보험자가 지불한 적립금 금액에 4를 곱해 얻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p>

주: 산정 결과 엔 미만의 끝자리가 발생한 경우는 잘라버리는 것으로 한다.

제3. 배상금등의 취급

보험기간 중 농업수입금액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배상금, 기타 금전 급부(이하 「배상금등」이라고 한다.)가 이미 지불되어 있는 경우에 다음 식에 의해 산정되는 금액이 0보다 클 때는 해당 금액을 제1 및 제2에서 산정된 보험금 및 특약보전금의 합계액으로부터 차감하여 지불한다.

$\text{배상금등의 금액} - (\text{기준수입금액} - (\text{보험기간 중 농업수입금액} + \text{제1에서 산정된 보험금} + \text{제2에서 산정된 특약보전금}))$
--

제15절 보험금 및 특약보전금 지불의 면책

전국연합회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및 특약보전금(이하 「보험금등」이라고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그 지불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① 피보험자가 제2장 제1절 제1의 가입신청 시 다음에 열거하는 중요한 사실 또는 사항에 대해 약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통지하지 않거나 부실 통지를 한

때(전국연합회가 이것을 알고 있을 때 및 과실에 의해 이것을 알지 못했던 때를 제외한다.)

가. 가입신청일에 이미 재해에 의한 피해를 입은 대상 농산물등이 있는 것, 기타 보험기간의 농업수입금액이 과거의 농업수입금액을 밑도는 것이 예상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사유(단, 가입신청일에 해당 대상 농산물등을 공제목적으로 하는 공제사업 또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 공제사업 또는 수입보험의 사고발생 통지를 하고 있는 때는 제외한다.)

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방법에 변경이 있는 것

다. 가입신청에서 제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중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가) 과거의 농업수입금액에 관계되는 사항 중 대상 농산물등의 종류, 보험기간의 기초재고 및 기말재고, 판매금액, 사업소비금액 및 경영면적

(나) 농업경영에 관한 계획에 관계되는 사항 중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보험기간에 관한 것에 한한다.)

- 대상 농산물등의 종류
- 대상 농산물등의 종류별 재배면적 또는 사육두(수)수 기타 사업의 규모, 재배 또는 사양의 시기 및 경영면적
- 대상 농산물등의 종류별 보험기간의 기초재고 및 기말재고, 수확량 또는 출하두(수)수, 판매금액, 사업소비금액 및 이들 금액의 산정 기초가 되는 사항

(다) 청색신고서를 제출한 실적에 관계되는 사항

- ②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제2장 제2절의 1의 ②의 규정에 의한 제2회째 이후 분할보험료의 지불 또는 제2장 제3절의 2의 (1)의 ① 및 제3장 제2절 제 1의 ①에 규정하는 보험료 증액분의 지불을 지체한 때.
- ③ 피보험자가 제11절에 규정하는 피보험자가 준수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
- ④ 피보험자가 제12절 (1)에 규정하는 통상적인 농업인이 시행하는 농업경영에 관계되는 노력, 기타 보험사고 발생 방지의 의무를 태만한 때.

- ⑤ 피보험자가 제12절 (3)에 규정하는 전국연합회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 방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
- ⑥ 피보험자가 제4장에 규정하는 사고발생 통지를 태만하거나, 또는 악의 혹은 중대한 과실에 의해 부실 통지를 한 때.
- ⑦ 피보험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피보험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는 친족 또는 피보험자가 고용하는 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에 의해 농업수입금액 감소가 발생한 때.
- ⑧ 전쟁, 기타 변란에 의해 농업수입금액 감소가 발생한 때.
- ⑨ 피보험자가 식물방역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2장 보험계약의 체결

제1절 가입신청

제1. 가입신청서등 제출

전국연합회는 보험자격자가 수입보험 가입신청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이하 「가입신청서등」이라고 한다.)를 보험기간 개시 전에 사업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단, ②에 열거하는 서류 중 가입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것은 청색신고서를 제출한 후 세금신고 기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 ① 「가입신청서」(양식 1호)
- ② 「과거의 농업수입금액신청서」(양식 2호)
(첨부서류)
 - 세금 신고서류
개인: 소득세의 확정신고서B 제1표 및 청색신고결산서
법인: 법인세의 신고서의 별표1 및 별표4, 손익계산서
- ③ 「대상 농산물등의 종류별 판매금액을 정리하기 위한 보조 양식(form)」
(농업소득용: 양식 3호의 1, 일반·법인용: 양식 3호의 2)
- ④ 「농업경영에 관한 계획」(양식 4호)

제2. 「가입신청서」 작성

- (1) 「가입신청서」(양식 1호)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① 보험자격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이하 동일.), 주소, 연락처 및 경영형태
 - ② 가입신청일이 속하는 연도까지의 청색신고 제출년도의 연수(年數) 또는 사

업연도 수 및 해당 청색신고 제출년도에 관계되는 청색신고의 종류

③ 다음에 열거하는 보상내용

가. 보험방식의 보상한도

나. 보험방식의 지불률

다. 기준수입금액 산정방법의 특례 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는 그 취지

④ 적립방식 신청을 하는 경우는 그 취지 및 다음의 보상내용

가. 적립방식의 보상폭

나. 적립방식의 지불률

⑤ 보험료 및 적립금의 분할지불 선택 유무

⑥ 농업수입금액 감소 가능성에 관한 다음에 열거하는 중요한 사항

가. 이미 재해에 의한 피해를 입은 대상 농산물등이 있는 것, 기타 보험기간의 농업수입금액이 과거의 농업수입금액을 밑도는 것이 예상되는 사유의 유무

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방법 변경의 유무

주: 적립금 분할지분은 신규로 적립방식을 선택하는 보험기간에 한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전국연합회는 보험자격자에 대해 「가입신청서」(양식 1호)의 작성 시 「가입 신청에 관한 서약 사항」(양식 1호 별지1)을 서약하도록 한다.

제3. 「과거의 농업수입금액신고서」 작성

「과거의 농업수입금액신청서」(양식 2호)는 청색신고 제출년도의 각 연도의 농업수입금액에 대해 대상 농산물등의 종류별로 정리하여 작성한다.

제4. 「대상 농산물등의 종류별 판매금액 정리를 위한 보조 양식(form)」 작성

(1) 「대상 농산물등의 종류별 판매금액을 정리하기 위한 보조 양식」(양식 3호의 1, 3호의 2)은 장부와 판매전표를 이용하여 재배 또는 사육한 모든 농산물등의

종류별로 판매금액을 정리하여 작성한다.

(2) 청색신고결산서에서의 소비세 취급에 대해 내세(內稅)방식 또는 외세(外稅)방식 중 어느 것인지를 기재한다.

(주1) 소비세 취급에 대해서는 과거의 농업수입금액 및 보험기간의 농업수입금액의 계상에서 동일 방식을 이용한다.

(주2) 보험기간의 농업수입금액에 대해 소비세 취급을 변경하는 경우는 가입신청에서 그 취지를 신청하는 것으로 하고, 변경 후의 방식에 맞추어 과거의 농업수입금액을 수정한다.

제5. 「농업경영에 관한 계획」 작성

(1) 「농업경영에 관한 계획」(양식 4호)은 다음의 계획으로 이루어진다.

- ① 「보험기간의 영농계획」
- ② 「보험기간의 영농계획에 기초하여 보험기간 중에 예상되는 농업수입금액」
- ③ 「농업경영의 목표」

(2) 「보험기간의 영농계획」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단, 가입신청일에 보험기간의 영농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전년의 영농계획등을 참고로 하여 기재하고, 보험기간 개시 후에 영농계획을 변경한다.

- ① 농산물등의 종류
- ② 농산물등의 종류별 재배면적 또는 사육두(수)수, 기타 사업의 규모
- ③ 농산물등의 종류별 재배 또는 사육 시기
- ④ 기준수입금액 산정방법의 특례 중 별지1의 1의 (1)의 규모확대 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는 농산물등(별 및 벌꿀을 제외한다.)에 관한 가입신청일이 속하는 연도까지의 5년간(농업경영을 시행한 기간이 5년이 안 되는 때는 그 시행 기간) 및 보험기간의 각 연도 말의 경영면적

(3) 「보험기간의 영농계획에 기초하여 보험기간 중에 예상되는 농업수입금액」에는 대상 농산물등의 종류별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또, 전국

연합회는 보험자격자에 대해 ①에 관해 과거의 실제 단수 데이터를 정리한 「보험기간의 예상 단수 시산표」(양식 5호의 1) 및 「보험기간의 예상 출하율 시산표」(양식 5호의 2)를, ③에 관해 과거의 판매단가 데이터를 정리한 「보험기간의 예상판매단가 시산표」(양식 6호)를 제출하도록 한다.

- ① 보험기간의 수확에 관계되는 재배면적 또는 출하에 관계되는 사육두(수)수, 기타 사업의 규모 및 단위당 예상수확량 또는 예상출하율
 - ② 보험기간의 예상수확수량 또는 예상출하수량
 - ③ 예상판매수량 및 예상판매단가
 - ④ 예상판매금액
 - ⑤ 수량불(數量拂) 대상이 되어 있는 대상 농산물등에 관계되는 보험기간의 예상수확수량 또는 예상출하수량 및 보험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수량불 예상단가
 - ⑥ 예상수량불금액
 - ⑦ 예상사업소비수량 및 예상사업소비단가
 - ⑧ 예상사업소비금액
 - ⑨ 보험기간 개시 시 및 보험기간 종료 시의 예상재고수량 및 기초재고 및 기말재고에 관계되는 예상단가
 - ⑩ 예상기초재고 및 예상기말재고
- (4) 「농업경영의 목표」에는 농업경영의 현황 및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해 취할 조치에 대해 기재한다. 목표년도는 원칙적으로 가입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5년 후로 한다.

그런데, 인정농업인(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1980년 법률 제65호. 이하 「기반강화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정농업인을 말한다.) 또는 인정취농자(기반강화법 제14조의 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정취농자를 말한다.)의 경우는 이들의 기재를 생략시킬 수 있다.

제6. 가입신청서등의 접수

(1) 전국연합회는 보험자격자로부터 가입신청서등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이하 「승낙거부 사유」라고 한다.)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가입신청을 승낙한다. 또, 해당 승낙을 가지고 수입보험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한다.

- ① 보험자격자가 제8장 제2절 제5의 (1)의 ②의 중대 사유에 의해 수입보험 보험계약이 해제된 것이 있는 자일 것
- ② 보험자격자가 제8장 제2절 제5의 (1)의 ③의 보험료, 적립금 또는 사무비 불납부에 의해 수입보험 보험계약이 해제된 것이 있는 자일 것(제2장 제2절 1의 ①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지불을 지체하여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 ②의 규정에 의한 제1회째 분할보험료 지불을 지체하여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 3의 규정에 의한 사무비 지불을 지체하여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 가입신청에 관계되는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개시일이 해제된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하 「보험기간종료일」이라고 한다.)로부터 기산(起算)하여 3년을 경과하고 있는 경우와 불납부로 되어 있던 보험료 및 사무비 전액을 전국연합회에 지불한 경우를 제외한다.)
- ③ 보험자격자가 제1장 제15절 ②의 규정에 해당한 일이 있는 자일 것(가입신청에 관한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이 동절 ②의 규정에 해당한 때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을 경과하고 있는 경우 및 불납부되어 있던 보험료 전액을 전국연합회에 지불한 경우를 제외한다.)
- ④ 보험사고의 발생이 상당한 확실성을 가지고 예상되는 것.
단, 가입 신청일에 해당 대상 농산물등을 공제목적으로 하는 공제사업 또는 수입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 공제사업 또는 수입보험의 사고발생 통지를 하고 있는 때는 제외한다.
- ⑤ 기준수입금액의 적정한 설정이 곤란한 것

- ⑥ 보험사고 발생의 적정하고 원활한 확인이 곤란한 것이 예상되는 것.
 - ⑦ 통상의 비배관리 혹은 사육관리가 행해지지 않거나, 또는 행해지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
 - ⑧ ①부터 ⑦까지의 외에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입보험의 본질에 비추어 현저히 형평성이 결여되고, 수입보험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상당(相當)한 사유가 있을 것.
- (2) 대상 농산물등 중 특정 종류등만이 (1)의 ④부터 ⑧까지의 승낙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울러 「보험기간의 영농계획」 및 「보험기간의 영농계획에 기초한 보험기간 중에 예상되는 농업수입금액」에서 해당 특정 종류등에 관계되는 금액을 기타의 종류등에 관계되는 금액과 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특정 종류등에 관계되는 금액을 농업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취지의 조건을 붙여 가입신청을 승낙한다.
- (3) 대상 농산물의 생산을 하는 경지 중 특정 경지만이 (1)의 ④부터 ⑧까지의 승낙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울러 「보험기간의 영농계획」 및 「보험기간의 영농계획에 기초한 보험기간 중에 예상되는 농업수입금액」에서 해당 특정 경지에 관계되는 금액을 타 경지등에 관계되는 금액과 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특정 경지에 관계되는 금액을 농업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취지의 조건을 붙여 가입신청을 승낙한다.

제7. 기준수입금액등의 산정

전국연합회는 가입신청서등에 근거하여 제1장 제5절 및 제7절부터 제9절까지에 따라 기준수입금액, 보험한도액, 기준보전금액, 보험금액, 보전대상금액, 보험료, 적립금 및 사무비를 산정한다.

제8. 「보험증권」 및 「보험료 및 적립금통지서」 작성 및 송부

(1) 전국연합회는 수입보험 가입신청을 승낙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보험증서」(양식 7호)를 작성하고, 전국연합회 회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 ① 피보험자 성명
- ② 기준수입금액
- ③ 보험방식의 보상내용
- ④ 적립방식의 보상내용
- ⑤ 보험기간 개시일 및 보험기간 종료일
- ⑥ 보험료 금액, 피보험자가 속하는 위험단계 및 보험료를
- ⑦ 적립금 금액
- ⑧ 사무비 금액
- ⑨ 보험료 및 적립금 지불 방법
- ⑩ 「보험증서」(양식 7호)를 발행한 연월일

(2) 전국연합회는 보험료 및 적립금 금액, 사무비 금액, 지불기한 및 대체계좌 등을 내용으로 한 「보험료 및 적립금통지서」(양식 8호)를 작성한다.

(3) 전국연합회는 「보험증서」(양식 7호) 및 「보험료 및 적립금통지서」(양식 8호)를 작성 후 가입신청서 복사본을 첨부하여 피보험자에게 송부한다.

제9. 불승낙 통지

전국연합회는 수입보험 가입신청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는 그 취지를, 이유를 첨부하여 보험자격자에게 통지한다.

제2절 보험료, 적립금 및 사무비 징수

1. 보험료 징수

전국연합회는 「보험료 및 적립금통지서」(양식 8호)에 의해 통지한 보험료에 대해 피보험자가 가입신청에서 선택한 지불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수한다.

① 일괄지불

보험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사업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보험료 전액을 징수한다.

② 분할지불

가. 제1회째 지불

보험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사업규정에서 정한 날까지 보험료 총액을 분할횟수로 나눈 금액을 징수한다.

주: 보험료 총액을 분할횟수로 나눔으로써 1엔 미만의 끝자리가 발생하는 경우는 제1회째 금액에 산입한다.

나. 제2회째 이후 지불

각 분할지불월의 말일(최후의 지불에서는 보험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월의 초일부터 기산하여 8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사업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각각 보험료 총액을 분할횟수로 나눈 금액을 징수한다.

2. 적립금 수령

전국연합회는 「보험료 및 적립금통지서」(양식 8호)에 의해 통지한 적립금에 대해 피보험자가 가입신청에서 선택한 지불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령한다.

① 일괄지불

가. 전년에 적립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보험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사업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적립금 전액을 수령한다.

나. 전년에 적립방식을 선택한 경우

보험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기산하여 8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사업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적립금 금액(적립금에 잔여가 있는 경우는 적립금과 그 잔여와의 차액)을 수령한다.

② 분할지불

가. 제1회째 지불

보험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사업규정에서 정한 날까지 적립금 총액을 분할횟수로 나눈 금액을 수령한다.

주) 적립금 총액을 분할횟수로 나눔으로써 1엔 미만의 끝자리가 발생하는 경우는 제1회째 금액에 산입한다.

나. 제2회째 이후 지불

각 분할지불월의 말일(최후의 지불에서는 보험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월의 초일부터 기산하여 8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사업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각각 적립금 총액을 잔여 분할횟수로 나눈 금액을 수령한다.

3. 사무비 징수

전국연합회는 「보험료 및 적립금통지서」(양식 8호)에 의해 통지한 사무비에 대해 보험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사업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사무비 전액을 징수한다.

4. 징수방법

- (1) 보험료, 적립금 및 사무비 징수는 원칙적으로 계좌이체에 의해 한다.
- (2) (1)의 경우에는 계좌이체일을 지불일로 간주한다.

제3절 가입신청일이 속하는 해의 농업수입금액신청서 제출에 관계되는 기준수입금액 수정

1. 기준수입금액 수정

- (1) 전국연합회는 제2장 제1절 제1의 단서 규정에 의한 가입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거의 농업수입금액신고서」(양식 2호)의 제출(이하 「실적 서면 제출」이라고 한다.) 시에 피보험자에게 기준수입금액 산정방법 특례 적용의 신청 유무를 확인한다.
- (2) 전국연합회는 실적 서면 제출이 있었던 때는 기준수입금액, 보험한도액, 기준보전금액, 보험금액, 보전대상금액, 보험료, 적립금 및 사무비를 수정한다.
- (3) 전국연합회는 실적 서면 제출이 있었던 때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방식 및 적립방식의 지불률 수정 신청 유무를 확인한다. 이 경우에 피보험자가 수정을 신청할 때의 수정 후의 지불률은 (2)의 규정에 의한 수정 후의 보험금액 또는 보전대상금액이 (2)의 규정에 의한 수정 전의 보험금액 또는 보전대상금액으로부터 (2)의 규정에 의한 수정 후의 기준수입금액 및 해당 수정 전의 지불률에 의해 산정된 보험금액 또는 보전대상금액까지의 범위 내가 되도록 선택하게 한다.
- (4) 전국연합회는 제1절 제8과 마찬가지로 「보험증서」(양식 7호) 및 보험료, 적립금 및 사무비 추가지불 또는 반환 유무 및 그 금액, 추가지불의 경우의 지불기한, 대체계좌 등을 내용으로 한 「보험료 및 적립금변경통지서」(양식 9호)를 작성하고, 피보험자에게 송부한다.

2. 보험료, 적립금 및 사무비의 추가징수·반환

- (1) 1의 (2)의 규정에 의해 보험료, 적립금 및 사무비가 증액된 경우에는 전국연합회는 피보험자가 가입신청에서 선택한 지불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

혐료, 적립금 및 사무비 증액분을 징수한다.

① 보험료

가. 일괄지불

사업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해당 증액분을 징수한다.

나. 분할지불

(가) 분할횟수가 남은 경우(실적 서면 제출을 한 날부터 최종 분할회 지불기한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동일.)

해당 증액분을 잔여 분할횟수로 나눈 금액을 나머지 각 분할회의 지불액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주) 증액분을 나머지 분할횟수로 나눔으로써 1엔 미만의 끝자리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 분할회의 지불액에 산입한다.

(나) 분할횟수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실적 서면 제출을 시행한 날부터 최종 분할회 지불기한까지의 기간이 1개월이 안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사업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해당 증액분을 징수한다.

② 적립금

가. 일괄지불

(가) 전년에 적립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사업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해당 증액분을 수령한다.

(나) 전년에 적립방식을 선택한 경우

사업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해당 증액분을 수령한다.

나. 분할지불

(가) 분할횟수가 남아 있는 경우

해당 증액분을 잔여 분할횟수로 나눈 금액을 나머지 각 분할회의 지불액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주) 증액분을 나머지 분할횟수로 나눔으로써 1엔 미만의 끝자리가 발생하

는 경우는 다음 분할회의 지불액에 산입한다.

(나) 분할횟수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사업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해당 증액분을 수령한다.

③ 사무비

사업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해당 증액분을 징수한다.

(2) 1의 (2)의 규정에 의해 보험료, 적립금 및 사무비가 감액된 경우에는 전국연합회는 피보험자가 가입신청에서 선택한 지불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료, 적립금 및 사무비 감액분을 피보험자에게 반환한다.

① 보험료

가. 일괄지불

사업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해당 감액분을 반환한다.

나. 분할지불

(가) 분할횟수가 남은 경우

감액 후의 보험료가 지불완료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액분을 잔여 분할횟수로 나눈 금액을, 나머지 각 분할회의 지불액으로부터 뺀다. 또, 지불완료 보험료가 감액 후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그 차액을 반환하고, 나머지 분할회에서의 지불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주) 감액분을 나머지 분할횟수로 나눔으로써 1엔 미만의 끝자리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 분할회의 지불액에서 뺀다.

(나) 분할횟수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사업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해당 감액분을 반환한다.

② 적립금

가. 일괄지불

(가) 전년에 적립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사업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해당 감액분을 반환한다.

(나) 전년에 적립방식을 선택한 경우

사업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해당 감액분을 반환한다.

나. 분할지불

(가) 분할횟수가 남아 있는 경우

감액 후의 적립금이 지불완료 적립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액분을 나머지 분할횟수로 나눈 금액을, 나머지 각 분할회의 지불액으로부터 뺀다. 또, 지불완료 적립금이 감액 후의 적립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지불완료 적립금과 감액 후의 적립금과의 차액을 반환하고, 나머지 분할회에서의 지불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주) 감액분을 나머지 분할횟수로 나눔으로써 1엔 미만의 끝자리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 분할회의 지불액에서 뺀다.

(나) 분할횟수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사업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해당 감액분을 반환한다.

③ 사무비

사업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해당 감액분을 반환한다.

제4절 독촉 및 연체금

1. 독촉

전국연합회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에 의해 기한을 지정하여 보험료 또는 사무비 지불을 독촉한다.

- ① 분할지불에 관계되는 분할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제2회째 이후 지불의 지불기한이 경과해도 해당 기한까지 지불할 분할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은 때.
- ② 제2장 제3절의 2의 (1)의 ① 및 제3장 제2절 제1의 ①의 규정에 의해 보험료 증액분을 징수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해당 지불의 지불기한이 경과해도 해당

기한까지 지불할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은 때.

- ③ 제2장의 제3절의 2의 (1)의 ③ 및 제3장 제2절 제1의 ③의 규정에 의해 사무비 증액분을 징수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해당 지불의 지불기한이 경과해도 해당 기한까지 지불할 사무비를 지불하지 않은 때.

2. 연체금

전국연합회는 1의 ①부터 ③까지 열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 또는 사무비를 지불하지 않은 자로부터 해당 보험료 또는 사무비 금액에 대해 연 10.75퍼센트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불기한의 익일부터 그 완납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의해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주1) 해당 보험료 또는 사무비 금액이 2천 엔 미만일 때는 연체금은 징수하지 않고, 해당 금액에 1천 엔 미만의 끝자리가 있을 때는 그 단수를 잘라버리고 계산한다.

(주2) 계산한 연체금 금액이 1천 엔 미만일 때는 해당 연체금은 징수하지 않고, 해당 금액에 100엔 미만의 끝자리가 있을 때는 그 단수를 잘라버리는 것으로 한다.

(주3) 전국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연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3장 영농계획 변경

제1절 영농계획 변경 통지

제1. 영농계획 변경 통지

- (1) 전국연합회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경영에 관한 계획」(양식 4호) 중 「보험기간의 영농계획」을 변경한 경우는 「보험기간의 영농계획에 기초한 보험기간 중에 예상되는 농업수입금액」을 아울러 변경하고, 원칙적으로 변경에 관계되는 농산물 식부 후 1개월 이내에 통지하도록 한다. 단, 제4장의 사고발생 통지를 한 경우는 영농계획의 변경을 통지하게 할 필요는 없다.
- (2) (1)의 통지 시 피보험자는 이미 재해에 의한 피해를 입은 대상농산물등이 있는 것, 그 외에 보험기간에서의 농업수입금액이 과거의 농업수입금액을 밑도는 것이 예상되는 사유의 유무에 대해서도 아울러 통지하도록 한다.
- (3) 전국연합회는 피보험자가 영농계획의 변경에 의해 신규로 기준수입금액 산정방법 특례(별지1의 (1)의 규모확대 특례에 한한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된 때는 (1)의 통지 시에 해당 특례 적용의 신청 유무를 확인한다.

제2. 기준수입금액 변경

1. 기준수입금액 변경

- (1) 전국연합회는 제1의 (1)의 통지가 있을 때는 제1장 제5절부터 제9절까지에 맞추어 기준수입금액, 보험한도액, 기준보전금액, 보험금액, 보전대상금액, 보험료, 적립금 및 사무비를 변경한다.
- (2) 전국연합회는 제1의 (1)의 통지가 있을 때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방식 및 적립방식의 지불률 변경 신청 유무를 확인한다. 이 경우에 피보험자가 변경을

신청할 때의 변경 후의 지불률은 (1)의 규정에 의한 변경 후의 보험금액 또는 보전대상금액이 (1)의 규정에 의한 변경 전의 기준수입금액 또는 보전대상금액으로부터 (1)의 규정에 의한 변경 후의 기준수입금액 및 해당 변경 전의 지불률에 의해 산정되는 보험금액 또는 보전대상금액까지의 범위 내가 되도록 선택하게 한다.

2. 「보험증서」 및 「보험료 및 적립금변경통지서」 작성 및 송부

- (1) 전국연합회는 제2장 제1절 제8과 마찬가지로 「보험증서」(양식 7호) 및 보험료, 적립금 및 사무비 추가지불 또는 반환 유무 및 그 금액, 추가지불의 경우 지불기한, 대체계좌 등을 내용으로 한 「보험료 및 적립금변경통지서」(양식 9호)를 작성한다.
- (2) 전국연합회는 「보험증서」(양식 7호) 및 「보험료 및 적립금 변경통지서」(양식 9호)를 작성 후 변경 후의 「농업경영에 관한 계획」(양식 4호)의 「보험기간의 영농계획」(양식 4호) 및 「보험기간의 영농계획에 기초한 보험기간 중에 예상되는 농업수입금액」의 복사본을 첨부하여 피보험자에게 송부한다.

제2절 보험료, 적립금 및 사무비 추가징수 및 반환

제1. 보험료, 적립금 및 사무비 추가징수

제1절 제2의 1의 규정에 의해 보험료, 적립금 및 사무비가 증액된 경우에는 전국연합회는 피보험자가 가입신청에서 선택한 지불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료, 적립금 및 사무비 증액분을 징수한다.

① 보험료

가. 일괄지불

사업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해당 증액분을 징수한다.

나. 분할지불

(가) 분할횟수가 남아 있는 경우(영농계획 변경 통지일부터 최종 분할회의 지불기한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동일.)

해당 증액분을 나머지 분할횟수로 나눈 금액을 나머지 각 분할회의 지불액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주) 증액분을 나머지 분할횟수로 나눔으로써 1엔 미만의 끝자리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 분할회의 지불액에 산입한다.

(나) 분할횟수가 남아 있지 않는 경우(영농계획 변경 통지의 날부터 최종 분할회의 지불기한까지의 기간이 1개월이 안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사업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해당 증액분을 징수한다.

② 적립금

가. 일괄지불

(가) 전년에 적립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사업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해당 증액분을 수령한다.

(나) 전년에 적립방식을 선택한 경우

사업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해당 증액분을 수령한다.

나. 분할지불

(가) 분할횟수가 남아 있는 경우

해당 증액분을 나머지 분할횟수로 나눈 금액을 나머지 각 분할회의 지불액에 추가하여 수령한다.

주) 증액분을 나머지 분할횟수로 나눔으로써 1엔 미만의 끝자리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 분할회의 지불액에 산입한다.

(나) 분할횟수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사업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해당 증액분을 반환한다.

③ 사무비

사업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해당 증액분을 징수한다.

제2. 보험료, 적립금 및 사무비 반환

제1절 제2의 1의 (1)의 규정에 의해 보험료, 적립금 및 사무비가 감액된 경우에는 전국연합회는 피보험자가 가입신청에서 선택한 지불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료, 적립금 및 사무비 감액분을 피보험자에게 반환한다.

① 보험료

가. 일괄지불

사업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해당 감액분을 반환한다.

나. 분할지불

(가) 분할횟수가 남아 있는 경우

감액 후의 보험료가 지불완료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액분을 잔여 분할횟수로 나눈 금액을 나머지 각 분할회의 지불액으로부터 뺀다. 또, 지불완료 보험료가 감액 후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그 차액을 반환하고, 나머지 분할회에서의 지불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주) 감액분을 나머지 분할횟수로 나눔으로써 1엔 미만의 끝자리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 분할회의 지불액에서 뺀다.

(나) 분할횟수가 남아 있지 않는 경우

사업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해당 감액분을 반환한다.

② 적립금

가. 일괄지불

(가) 전년에 적립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사업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해당 감액분을 반환한다.

(나) 전년에 적립방식을 선택한 경우

사업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해당 감액분을 반환한다.

나. 분할지불

(가) 분할횟수가 남아 있는 경우

감액 후의 적립금이 지불완료 적립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액분을 잔여 분할횟수로 나눈 금액을 나머지 각 분할회의 지불액으로부터 뺀다. 또, 지불완료 적립금이 감액 후의 적립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그 차액을 반환하고, 나머지 분할회에서의 지불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주) 감액분을 나머지 분할횟수로 나눔으로써 1엔 미만의 끝자리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 분할회의 지불액에서 뺀다.

(나) 분할횟수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사업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해당 감액분을 반환한다.

③ 사무비

사업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해당 감액분을 반환한다.

제4장 사고발생 통지

제1절 사고발생 통지

제1. 사고발생 통지

(1) 전국연합회는 피보험자에게 대상 농산물등의 종류별 농업수입금액이 보험기간의 예상농업수입금액의 9할을 밑도는 것이 예상되는 사유(대상 농산물등의 수확량 혹은 출하량의 감소 또는 품질 저하에 관한 것에 한한다. 이하 「통지대상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고발생통지서」(양식 10호)를 작성케 하고 전국연합회에 통지하도록 한다.

- ① 통지대상 사고의 발생 연월일
- ② 통지대상사고에 관한 대상 농산물등의 종류
- ③ 대상 농산물등의 수량감소 또는 품질 저하의 정도
- ④ 통지대상 사고의 종류
- ⑤ 기타 피해상황에 관한 사항
- ⑥ 연결자금 대부 신청 유무

(2) 전국연합회는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강구한 대처내용을 명확히 하는 서류(농작업일지 등)를 언제라도 관람할 수 있도록 보존시키는 것으로 한다.

제2. 사고발생 통지의 접수, 확인 및 지도

- (1) 전국연합회는 피보험자로부터 사고발생 통지가 있는 때에는 사고발생 통지의 접수부에 접수일, 피보험자 성명, 통지 내용 등을 정리한다.
- (2) 전국연합회는 통지된 사고 내용의 통지 건수가 해당 피보험자가 영농을 하는

지역에서 적은 경우에는 해당 사고가 지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고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고가 아닌 때에는 피보험자가 통상적인 농업인이 행하는 농업경영에 관한 노력, 기타 보험사고 발생의 방지(적기 방제, 배수 대책, 방호책 설치 등)를 태만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피보험자에 대한 청취(聞取)와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확인한다.

- (3) 전국연합회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방지의 대처를 함으로써 보험금등의 지불이 감소한다고 예상되는 경우는 필요에 따라 지도를 한다.

제3. 사고발생통지서 반송

전국연합회는 「사고발생통지서」(양식 10호)에 피보험자로부터 통지된 회수 및 접수 연월일 및 지도사항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을 기재하고, 피보험자에게 반송한다.

제2절 자기 사정에 따른 재배 또는 사육 중지의 통지

제1. 자기 사정에 따른 재배 또는 사육 중지의 통지

전국연합회는 피보험자에게 영농계획에 기재한 대상 농산물등의 식부(축산물에 있어서는 수정 또는 도입)를 한 후 자기 사정에 따라 그 재배 또는 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는 경우는 지체 없이 대상 농산물등의 종류별로 재배 또는 사육의 중지 연월일, 중지에 관계되는 면적 등을 기재한 「사고발생통지서」(양식 10호)를 통지하도록 한다.

주) 해당 자기 상황에 의한 재배 또는 사육 중지에 의한 농업수입금액 감소는 수입보험의 보전대상으로는 되지 않는다.

제2. 재배 또는 사육 중지의 통지의 접수

전국연합회는 피보험자로부터 자기 사정에 의한 재배 또는 사육 중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사정에 의한 재배 또는 사육 중지의 통지의 접수부에 접수일, 피보험자 성명, 통지 내용 등을 정리한다.

제3. 농업수입금액 감소액의 산정 방법

- (1) 자기 사정에 의한 재배 또는 사육 중지에 의한 농업수입금액 감소는 수입보험의 보전대상으로는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농업수입금액의 감소금액은 보험금등의 산정에서 보험기간의 농업수입금액에 포함한다.
- (2) 해당 농업수입금액의 감소금액은 해당 중지에 관계되는 면적, 「농업경영에 관한 계획」(양식 4호)에서 보험자격자가 예상판매금액을 산출할 때에 이용한 예상단수 및 예상판매단가에 의해 산정한다.

제5장 보험금 및 특약보전금 청구 및 지출

제1. 「보험기간의 농업수입금액실적신고서 겸 보험금등청구서」 제출

전국연합회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기간에 관계되는 청색 신고서를 제출한 후 세금신고 기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① 및 ②에 열거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 ① 「보험기간의 농업수입금액실적신고서 겸 보험금등청구서」(양식11호)(첨부서류)
 - 세금신고서류
개인: 소득세의 확정신고서B제1표 및 청색신고결산서
법인: 법인세 신고서의 별표1 및 별표4, 손익계산서
 - 보험기간의 재고표
 - 사업소비장부
- ② 「대상 농산물등의 종류별 판매금액을 정리하기 위한 보조 양식」(농업소득용: 양식3호의 1, 일반·법인용: 양식3호의 2) (첨부서류)
 - 발작물의 직접지불교부금에서의 수량불 교부금계산서
 - 감미(甘味)자원작물교부금결정 및 지불통지서
 - 전분원료용고구마교부금결정통지서
 - 생산자보급교부금 또는 생산자보급금 및 집송유조정금 금액을 기재한 서면

제2. 「보험기간의 농업수입금액실적신고서 겸 보험금등청구서」 접수 및 확인

- (1) 전국연합회는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기간의 농업수입금액실적신고서 겸 보험금등청구서」(양식11호) 등의 제출이 있고, 피보험자가 보험금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청구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 내용에 기초하여 피보험자의 경영노력 부족이 없었는지를 확인한다. 또, 필요에 따라 피보험자와

해당 피보험자의 거래처등에 조회한다.

- ① 수입감소 요인이 수량감소인 경우는 요인 발생의 이유, 피보험자로부터의 사고발생 통지의 유무, 보험사고 발생 방지의 대처 내용
 - ② 수입감소 요인이 가격저하인 경우는 요인 발생의 이유, 의도적 가격인하 유무
- (2) 전국연합회는 (1)의 확인 결과 사고발생 통지를 태만한 경우, 의도적인 염가 판매를 한 것이 확실한 경우 등 제1장 제15절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보험금등을 면책으로 한다.
- (3) 전국연합회는 (2)의 규정에 의해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별지3> 「면책의 범위 및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험금 및 특약보전금 계산방법」에 기초하여 보험기간 중 농업수입금액을 조정하고 보험금등을 산정한다.

제3. 보험금등의 예상금액 통지

전국연합회는 제1장 제14절에 의해 산정한 보험금등의 예상금액등을 기재한 「보험금등(예상액) 통지서」(양식 12호)를 작성하고, 「보험기간의 농업수입금액 실적신고서 겸 보험금등청구서」(양식11호) 등의 접수일부터 기산하여 1개월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통지한다. 단, 해당 예상금액등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확인을 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경우는 그 제한은 없다.

또, 「보험금등(예상액) 통지서」(양식 12호)에는 다음 보험기간에서 적용되는 보험료율의 위험단계 구분 및 보험료율의 예상을 기재한다.

제4. 보험금등의 청구

전국연합회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의 농업수입금액이 보험한도액(적립방식을 선택한 경우는 보전한도액)을 밑돌 때는 다음 중 한 방법에 의해 보험금등을 청구하도록 한다.

① 「보험기간의 농업수입금액실적신고서 겸 보험금등청구서」등의 제출 시에 청구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제1의 규정에 의해 「보험기간의 농업수입금액실적신고서 겸 보험금등청구서」(양식 11호)를 제출할 때에 아울러 전국연합회에 보험금등을 청구한다.

② 「보험금등 (예상액) 통지서」수령 후에 청구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제3의 규정에 의해 「보험금등 (예상액) 통지서」(양식 12호)를 접수하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금등 청구서」(양식 13호)를 작성하고 전국연합회에 보험금등을 청구한다.

제5. 보험금등의 지불

(1) 전국연합회는 피보험자가 제4의 ①의 규정에 의해 보험금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의 농업수입금액실적신고서 겸 보험금등청구서」(양식 11호)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4의 ②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보험금등의 지불을 한다. 단, 보험금등을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확인을 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경우는 이 제한은 없다.

(2) 전국연합회는 보험금등의 이체 후 지체 없이 「보험금등불입액통지서 겸 적립금통지서」(양식 14호)를 작성하고 피보험자에게 통지한다.

또, 피보험자가 익년의 보험기간에 적립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경우는 「보험금등불입액통지서 겸 적립금통지서」(양식 14호)에 특약보전금 지불 후의 적립금 추가지불액, 잔여 등을 기재한다.

(3) 전국연합회는 특약보전금에 대해서는 특약보전금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 제2장 제2절의 2의 지불기한까지 적립금으로 지불되고, 아울러 해당 지불기일부터 특약보전금 지불을 받기까지의 사이에 감소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지불한다. 단,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 피보험자가 해당 금액을 해당 지불기한까지 전국연합회에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 제한은 없다.

제6.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취득

(1) 전국연합회는 보험금등을 지불한 때는 다음에 열거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사고에 의한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이하 제6에서 「피보험자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해 당연히 피보험자에게 대위(代位)한다.

① 전국연합회가 지불한 보험금등의 금액

② 피보험자채권 금액에서 보험금등이 지불되지 않은 손해액을 공제한 금액

(2) (1)의 ①에 열거하는 금액이 보험계약에 의해 보전할 손해액에 부족할 때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채권 중 전국연합회가 (1)의 ①의 규정에 의해 대위한 부분을 뺀 부분에 대해 해당 대위에 관한 전국연합회 채권에 앞서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한다.

제6장 연결자금 대부

제1절 대부 대상자

- (1) 연결자금 대부 대상이 되는 자(이하 「대부 대상자」라고 한다.)는 피보험자 중 보험금등의 지불이 예상되는 자(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료 및 사무비 전액을 지불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로 한다.
- (2) 연결자금 대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통지대상 사고에 의해 대상 농산물등에 상당한 수량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3) 연결자금의 대부 시기 및 횟수는 사고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2절 신청절차

1. 연결자금 대부 신청

전국연합회는 대부 대상자가 연결자금 대부를 희망하는 경우는 제4장 제1절 제1에 근거한 「사고발생등통지서」(양식 10호)의 제출 시에 연결자금 대부를 희망하는 취지를 기재하도록 한다.

2. 연결자금 대부한도액 산정 및 통지

- (1) 전국연합회는 피보험자로부터 연결자금 대부를 희망하는 취지의 신청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보험기간 중 농업수입개산액, 보험금지불개산액, 특약보전금지불개산액 및 연결자금 대부한도액을 산정한다.
 - ① 보험기간 중 농업수입개산액
보험기간 중 농업수입개산액은 사고발생 통지에 관계되는 대상 농산물등의 종류별로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합제한 금액으로 한다.

보험기간 중 농업수입개산액 = 예상농업수입금액 - 보험기간 중 수입감소개산액

보험기간 중 수입감소개산액 = (사고발생 전 예상수확수량 - 사고발생 후 예상수확수량) × 평균단가

가. 사고발생 전 예상수확수량

사고발생 전 예상수확수량은 제2장 제1절 제5의 「농업경영에 관한 계획」(양식 4호)의 「보험기간의 영농계획에 근거한 보험기간 중에 예상되는 농업수입금액」에 기재한 예상수확량으로 한다.

나. 사고발생 후 예상수확수량

사고발생 후 예상수확수량은 「사고발생등통지서」(양식 10호)에서 수량감소 정도별로 기재한 식부면적에 다음 표의 왼쪽 란에 열거하는 수량감소 정도의 구분에 따른 이 표의 우측 란의 비율 및 「농업경영에 관한 계획」(양식 4호)의 「보험기간의 영농계획에 근거한 보험기간 중에 예상되는 농업수입금액」에 기재한 예상단수를 곱해 얻은 수량을 예상수확수량으로부터 뺀 수량으로 한다.

수량감소 정도	감소비율
10% 미만·피해 없음	0할
10% 이상 50% 미만	0할
50% 이상 100% 미만	5할
100%	10할

다. 평균단가

평균단가는 「농업경영에 관한 계획」(양식 4호)의 「보험기간의 영농계획에 근거한 보험기간 중에 예상되는 농업수입금액」에 기재한 예상판매단가로 한다.

② 보험금지불개산액 및 연결자금 대부한도액

보험금지불개산액, 특약보전금지불개산액 및 연결자금 대부한도액은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주) 연결자금 대부한도액은 1만 엔 단위로 하고, 1만 엔 미만의 끝자리가 발

생한 경우에는 잘라버리는 것으로 한다.

가. 보험방식만의 경우

$$\begin{aligned} \text{보험금지불개산액} &= (\text{보험한도액} - \text{보험기간 중 농업수입개산액}) \times \text{보험방식의 지불률} \\ \text{대부한도액} &= \text{보험금지불개산액} \times 0.8 \end{aligned}$$

나. 적립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경우

(가) 보험기간 중 농업수입개산액이 보험한도액 미만인 경우

$$\begin{aligned} \text{보험금지불개산액} &= (\text{보험한도액} - \text{보험기간 중 농업수입개산액}) \times \text{보험방식의 지불률} \\ \text{특약보전금지불개산액} &= \text{피보험자가 지불한 적립금}(\ast) \text{ 금액} \times 4 \\ \text{대부한도액} &= (\text{보험금지불개산액} + \text{특약보전금지불개산액}) \times 0.8 \\ \ast & \text{ 피보험자가 지불한 적립금 금액은 前 보험기간에서의 적립금의 잔여, 해당 보험기간에 지불된 적립금 금액} \\ & \text{ 및 전 보험기간에서의 연결자금 대부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 \end{aligned}$$

(나) 보험기간 중 농업수입개산액이 보험한도액 이상인 경우

$$\begin{aligned} \text{특약보전금지불개산액}(\ast 1) &= (\text{보전한도액} - \text{보험기간 중 농업수입개산액}) \times \text{적립방식의 지불률} \\ \text{대부한도액} &= \text{특약보전금지불개산액} \times 0.8 \\ \ast 1. & \text{ 특약보전금지불개산액은 피보험자가 지불한 적립금}(\ast 2) \text{ 금액에 4를 곱해 얻은 금액이 상한} \\ \ast 2. & \text{ 피보험자가 지불한 적립금 금액은 前 보험기간에서의 적립금의 잔여, 해당 보험기간에 지불된 적립금} \\ & \text{ 금액 및 전 보험기간에서의 연결자금 대부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 \end{aligned}$$

(2) 전국연합회는 연결자금 대부한도액등을 기재한 「연결자금대부한도액통지서」(양식 15호)를 작성하고, 「연결자금차입신청서」(양식 16호) 및 「연결자금차용서」(양식 17호)를 첨부하여 피보험자에게 송부한다.

그런데, 과거에 면책이 되어 보험금등이 지불되지 않았던 것 또는 연결자금의 상환기한까지 상환하지 않았던 것이 있는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그 절차에 필요한 서류도 송부한다.

3. 연결자금 대부 신청

- (1) 전국연합회는 피보험자에게 대부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연결자금차입신청서」(양식 16호) 및 「연결자금차용서」(양식 17호)를 작성시켜 연결자금 대부를 신청하도록 한다.
- (2) 전국연합회는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피보험자에게 그 절차를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제3절 연결자금 대부

- (1) 전국연합회는 피보험자로부터 「연결자금차입신청서」(양식 16호) 및 「연결자금차용서」(양식 17호) (보증인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때 및 제1절의 (1)의 대부 대상자등에 해당하지 않은 때를 제외하고, 연결자금 대부를 결정한다. 또, 해당 결정을 가지고 연결자금 대부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한다.
- (2) 연결자금의 대부는 무이자로 한다.
- (3) 전국연합회는 연결자금 대부 후 신속하게 「연결자금이체통지서」(양식 18호)를 작성하고 피보험자에게 송부한다.

제4절 연결자금 상환 및 반환

제1. 연결자금 상환

연결자금 상환은 제5장 제5에 의해 피보험자에게 지불되는 보험금등을 충당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등의 금액 및 연결자금 대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보험금등의 금액이 연결자금 대부액을 밑돌지 않는 경우

가. 전국연합회는 제5장 제5에서 보험금등의 지불 시에 피보험자에게 지불할 보험금등의 금액으로부터 연결자금 대부액을 뺀 금액을 지불한다.

나. 전국연합회는 신속히 「연결자금상환완료통지서」(양식 19호)를 작성하고 피보험자에게 송부한다.

또, 피보험자로부터 해당 대부에 관계되는 「연결자금차입신청서」(양식 16호) 및 「연결자금차용서」(양식 17호)(보증인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증인에 관계되는 서류)의 반력을 요구받은 때는 신속히 피보험자에게 송부한다.

② 보험금등의 금액이 연결자금 대부액을 밑도는 경우

가. 전국연합회는 제5장 제5에 의한 보험금등의 지불은 하지 않고, 연결자금 대부액, 보험금 및 특약보전금 지불결정액, 정산부족금액 등을 기재한 「연결자금정산부족금상환청구서」(양식 20호)를 작성하고 피보험자에게 통지한다.

나. 전국연합회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통지한 정산부족금액을 사업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상환하도록 한다.

다. 전국연합회는 연결자금 대부금의 상환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신속히 「연결자금상환완료통지서」(양식 19호)를 작성하고 피보험자에게 송부한다.

또, 피보험자로부터 해당 대부에 관한 「연결자금차입신청서」(양식 16호) 및 「연결자금차용서」(양식 17호)(보증인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증인에 관한 서류)의 반력을 요구받은 때는 신속히 피보험자에게 송부한다.

제2. 연결자금 반환

1. 대부계약의 무효

(1) 피보험자가 허위 신청 또는 부정한 수단에 의해 대부를 받았다고 인정된 경우는 전국연합회는 해당 연결자금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정하는 기일 까지 연결자금 대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취지를 기재한 「연결자금반환청

구서」(양식 21호)를 작성하고 피보험자에게 송부한다.

- (2) 전국연합회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통지한 반환청구금액을 전국연합회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반환하도록 한다.
- (3) 전국연합회는 연결자금 대부금의 반환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신속히 「연결자금반환완료통지서」(양식 22호)를 작성하고 피보험자에게 송부한다.

2. 보험계약의 실효, 취소, 무효 또는 해제

보험계약이 실효, 취소, 무효 또는 해제된 경우는 연결자금 대부계약도 이에 수반하여 실효, 취소, 무효 또는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전국연합회는 「연결자금반환청구서」(양식 21호)를 작성하고, 피보험자에 대해 지정하는 기일까지 대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한다.

3. 적립방식의 해제

적립방식이 해제로 된 경우는 전국연합회는 「연결자금반환청구서」(양식 21호)를 작성하고, 피보험자에 대하여 지정하는 기일까지 대부금 중 적립방식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청구한다.

제3. 독촉 및 연체금

- (1) 전국연합회는 피보험자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연결자금 대부금을 상환 또는 반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해 독촉장을 발부하고, 해당 대부액의 금액에 대해 연 10.75%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불기한의 익일부터 그 완납일 전일까지의 일수에 의해 계산한 연체금을 지불한다.
(주1) 해당 대부액의 금액이 2천 엔 미만일 때는 연체금은 징수하지 않고, 해당 금액에 1천 엔 미만의 끝자리가 있을 때는 그 단수를 잘라버리고 계산한다.

(주2) 계산한 연체금 금액이 1천 엔 미만인 때는 해당 연체금은 징수하지 않고, 해당 금액에 100엔 미만의 끝자리가 있을 때는 그 단수를 잘라버리는 것으로 한다.

- (2) 전국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연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3) 전국연합회는 (1)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상환 또는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다시 한 번 기한을 지정하고 이것을 독촉하는 것으로 하며, 그래도 상환 또는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불 독촉 신청등의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

제7장 재보험 절차

제1절 재보험료 납입

제1. 농림수산대신에 대한 통지

전국연합회는 월별로 해당 월에 보험기간이 개시하는 보험계약 내용을 취합한 「재보험인수통지서」(양식 23호)를 작성하고, 해당 각 월의 20일까지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한다. 그런데, 제출한 「재보험인수통지서」(양식 23호)의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 월별로 변경내용을 취합하여 해당 재보험인수통지서를 갱신하고, 변경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익월 20일까지 제출한다.

제2. 재보험료 납입

전국연합회는 재보험료에 관계되는 납입고지서에서 정해진 기일까지 재보험료를 납입한다. 단, 보험료 국고부담액이 재보험료를 초과할 때는 이 제한은 없다.

제2절 재보험금 청구

제1. 농림수산대신에 대한 통지

전국연합회는 연도별로 해당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이하 「재보험기간」이라고 한다.)에 보험기간이 개시하는 모든 보험계약(이하 「재보험기간별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의 손해를 취합하자마자 신속히 「보험금등집계표」(양식 24호)를 작성하고 농림수산대신에게 통지한다.

제2. 재보험금 청구

전국연합회는 재보험기간별 보험계약에서 지불할 보험금 총액이 통상책임보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재보험금청구서」(양식 25호)를 작성하고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한다.

제3. 재보험금의 개산불(概算拂) 청구

전국연합회는 재보험기간별 보험계약의 보험금 총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미 지불할 보험금의 총액이 통상책임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재보험금개산불청구서」(양식 26호)를 작성하고, 농림수산대신에게 재보험금 개산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청구할 수 있는 개산불 금액은 재보험금 예상액(지불할 보험금으로부터 통상책임보험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95%에 상당하는 액)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8장 기타

제1절 농업경영의 양도등

제1. 사망, 해산 등의 경우의 권리의무의 승계

1. 권리의무의 승계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합병에 의한 해산 혹은 분할(수입보험의 보험계약에 관계되는 농업경영의 전부를 승계시킨 경우에 한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포괄승계인은 전국연합회의 승낙을 받아 수입보험 보험계약에 관해 피보험자가 보유하고 있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해당 수입보험 보험계약에 관계되는 농업경영의 전부를 일체로 양도하고, 아울러 양도에 관한 계약 내용을 서면에 의해 명확히 한 경우의 그 양수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2. 권리의무 승계 신청

- (1) 전국연합회는 피보험자, 그 포괄승계인 또는 양수인이 1의 규정에 의한 승계를 희망하는 경우는 농업경영을 승계 또는 양도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보험계약승계승낙신청서」(양식 27호) 및 해당 승계 또는 양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계약서 사본, 피보험자 사망진단서 등)를 전국연합회에 제출한다. 또, 포괄승계인 또는 양수인이 신규로 농업경영을 개시하는 경우는 청색신고승낙신청서 사본을 제출한다.
- (2) 전국연합회는 피보험자, 그 포괄승계인 또는 양수인으로부터 (1)에 의해 「보험계약승계승낙신청서」(양식 27호)등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서류로부터 보험계약에 관계되는 농업경영의 전부가 승계 또는 양도되어 있는

것이 확인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 권리의무 승계를 승낙한다. 또, 권리의무의 승계는 전국연합회에 의한 승낙 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권리의무 승계의 승낙 또는 불승낙 통지

- (1) 전국연합회는 권리의무 승계를 승낙한 경우는 「보험계약승계승낙통지서」(양식 28호)를 작성하고, 신청을 한 해당 피보험자, 포괄승계인 또는 양수인에게 통지한다.
- (2) 전국연합회는 권리의무 승계를 승낙하지 않은 경우는 「보험계약승계불승낙통지서」(양식 29호)를 작성하고, 피보험자, 포괄승계인 또는 양수인에게 통지한다.

4. 승계된 보험계약의 변경 절차

전국연합회는 3의(1)에 의해 권리의무 승계를 승낙한 경우는 승계된 보험계약에 대해 포괄승계인 또는 양수인의 수입보험 가입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절차를 시행한다.

- ① 포괄승계인 또는 양수인이 신규로 농업경영을 개시하는 경우
전국연합회는 피승계인 또는 양도인의 계약내용과 동일 내용으로 하여 성명을 피승계인 또는 양도인으로부터 포괄승계인 또는 양수인으로 변경한 「보험증서」(양식 7호)를 작성한다.
- ② 포괄승계인 또는 양수인이 이미 수입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
전국연합회는 피승계인 또는 양도인과 포괄승계인 또는 양수인의 실적농업 수입금액을 연별로 합산하고, 제1장 제7절 및 제8절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기준수입금액, 보험료 및 적립금을 재산정하는 것으로 하고, 제2장 제1절 제8과 마찬가지로 절차를 시행한다.
피승계인 또는 양도인과 포괄승계인 또는 양수인의 수입보험 보상내용이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 표의 좌측 란에 열거하는 보상내용에 대해 각각 우측 란

에 열거하는 대응방법대로 한다.

더욱이, 기준수입금액, 보험료 및 적립금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전국연합회는 권리의무 승계 승낙의 날부터 2주 이내에 보험료 및 적립금의 차액을 추가징수 또는 반환한다.

보상내용	대응방법
청색신고실적의 연수(年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보험자와 포괄승계인 또는 양수인 중 연수(年數)가 많은 쪽을 적용한다.
기준수입금액 산정방법 특례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보험자와 포괄승계인 또는 양수인이 함께 적용하고 있는 경우는 적용한다. 피보험자와 포괄승계인 또는 양수인의 한 쪽이 적용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승계인 또는 양수인이 선택한다. 피보험자와 포괄승계인 또는 양수인이 함께 적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보험방식의 보상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보험자의 비율과 포괄승계인 또는 양수인의 비율의 범위 내에서 포괄승계인 또는 양수인이 선택한다.
적립방식의 보상 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보험자의 비율과 포괄승계인 또는 양수인의 비율의 범위 내에서 포괄승계인 또는 양수인이 선택한다(적립방식을 선택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비율을 0으로 간주한다.).
보험방식 및 적립방식의 지불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보험자의 비율과 포괄승계인 또는 양수인의 비율(적립방식을 선택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비율을 0으로 간주한다.)의 범위 내에서 포괄승계인 또는 양수인이 선택한다.
보험료율의 위험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보험자와 포괄승계인 또는 양수인의 과거의 지불보험금 실적을 합산하여 손해율을 재 계산하고, 위험단계 구분을 결정한다.

제2. 보험기간 개시일 전 농업경영의 승계 또는 양도

1. 보험기간 개시일 전 농업경영의 승계 또는 양도

(1) 보험기간 개시일 전일(前日)까지 농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양도받은(피보험자의 사망, 합병에 의한 해산 또는 분할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에서 동일.) 경우는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에 해당할 때에 한해 피승계인 또는 양도인(이하 「피승계인등」이라고 한다.)의 청색신고제출년(승계인 또는 양수인(이하 「승계인등」이라고 한다.)의 청색신고제출년을 제외한다. 이하 「피승계인등제출년」이라고 한다.)을 승계인등의 청색신고제출년으로 취급할 수 있다.

① 승계인등의 청색신고 제출년과 피승계인등제출년이 연속하고 있다고 인

정될 것.

- ② 복수의 피승계인등으로부터 농업경영을 일체적으로 승계, 또는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청색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자일 것.
 - ③ 승계인이 피승계인등의 대상 농산물등에 관계되는 농업경영의 일부를 승계하거나, 또는 양수 받은 경우에는 피승계인등의 손익계산서에 의해 해당 피승계인등의 농업경영 중 해당 승계 또는 양도에 관계되는 대상 농산물등의 수입금액을 구분할 수 있을 것.
 - ④ 승계인들이 피승계인등으로부터 승계하거나, 또는 양수받은 대상 농산물등에 관한 농업경영이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의 전부를 만족하는 것에 의해 해당 승계 또는 양도 후에도 동일성을 가지고 시행하거나, 또는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될 것.
- (2) (1)의 규정에 의해 피승계인등제출년을 승계인등의 청색신고제출년으로 취급하는 경우에 농업경영의 승계 또는 양도에 관계되는 피승계인등의 사업연도의 기간과 해당 승계 또는 양도에 의해 개시하는 승계인등의 사업연도의 기간과의 합계가 1년간일 때는 제1장 제4절 (2)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해당 승계인등의 사업연도를 그 기간이 1년간이라고 간주하고 청색신고제출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다.
- (3) 보험기간개시일 전일까지 농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양도받은 경우는 (1)①부터 ④까지에 열거하는 요건에 해당할 때에 한해 승계인등의 각 청색신고제출년의 실적농업수입금액에 피승계인등의 해당 청색신고제출년에 대응하는 각 연도의 농업수입금액(해당 승계, 또는 양수한 농업경영에 관계되는 금액에 한해 다음에 열거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을 가산할 수 있다.
- ① 피승계인이 개인이며, 아울러 승계인들이 해당 승계 또는 양도에 의해 농업을 영위하는 자로 되는 법인인 경우의 해당 승계 또는 양도에 관계되는 연도의 해당 승계 또는 양도까지 경과한 기간(해당 법인의 사업연도가 12월

31일에 종료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계되는 금액

② 피승계인이 법인이며, 아울러 승계인들이 해당 승계 또는 양도에 의해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되는 경우의 해당 승계 또는 양도에 관계되는 1년에 미달하는 사업연도(다음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계되는 금액
가. 승계인들이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가 1월 1일에 개시한 것인 경우

나. 승계인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과 해당 승계 또는 양도의 날에 개시하는 승계인들의 사업연도의 기간의 합계가 1년간인 경우

2. 청색신고제출년의 인계 절차

전국연합회는 승계인들이 1의 규정에 의해 피승계인등제출년을 청색신고제출년으로 취급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는 「농업경영의 양도에 관한 신고서」(양식 29호)에 피승계인들의 청색신고결산서 사본 및 피승계인들이 해당 농업경영에 사용한 주요 농용지, 농업용 시설 기타 자산이 승계인에게 승계 혹은 양도되거나, 또는 양도 혹은 양도된다고 예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유권이전등기의 사본, 양도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되는 것으로 한다.

제2절 보험계약의 종료

제1. 보험계약의 실효

(1) 보험계약 체결 후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에 전국연합회는 적립방식의 적립금 잔여를 반환한다. 또, 전국연합회는 이미 지불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전액을 반환하고, 이미 지불된 사무비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미경과분에 상

당하는 금액을 월할(月割)로 계산한 금액을 반환한다.

- ①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해산 혹은 분할을 하고, 아울러 제1절 제1의 1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가 이루어지 않은 것.
 - ② 보험계약자가 폐업하고, 제1절 제1의 1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유사제도에 가입한 경우는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에 전국연합회는 적립방식의 적립금 잔여를 반환한다. 또, 전국연합회는 이미 지불된 보험료 및 사무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2. 보험계약의 취소

- (1) 피보험자의 사기 또는 강박(強迫)에 의해 전국연합회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전국연합회는 피보험자에 대한 서면에 의한 통지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2) (1)의 규정에 의해 전국연합회가 보험계약을 취소한 경우는 전국연합회는 적립방식의 적립금 잔여를 반환한다. 또, 전국연합회는 이미 지불된 보험료 및 사무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3. 보험계약의 무효

- (1)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등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을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② 보험기간 개시일에 피보험자가 농업인이 아닌 경우
 - ③ 보험기간 개시일에 피보험자가 유사제도에 가입해 있는 경우
 - ④ 피보험자가 가입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보험기간에 관계되는 청색신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 (1)의 규정에 의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전국연합회는 적립방식의

잔여를 반환한다. 또, 전국연합회는 이미 지불된 보험료 및 사무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1)의 사유에 대해 피보험자가 선의로, 아울러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는 이 제한은 없다.

제4.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제

- (1) 피보험자는 전국연합회에 대한 서면 등에 의한 통지를 가지고 보험계약 또는 적립방식을 해제할 수 있다.
- (2) (1)의 규정에 의해 보험계약 또는 적립방식이 해제된 경우는 전국연합회는 적립방식의 적립금 잔여를 반환한다.
- (3) (1)의 규정에 의해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보험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국연합회는 이미 지불된 보험료 및 사무비를 반환하지 않고, 피보험자로부터 아직 지불되지 않은 보험료 및 사무비를 징수한다.

제5. 전국연합회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제

- (1) 전국연합회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는 피보험자에 대한 서면 등에 의한 통지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③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적립금만 지불을 지체한 때는 적립방식에 한해 해제할 수 있다.
 - ① 통지의무 위반
전국연합회가 농업수입금액 감소의 발생 가능성에 관한 중대한 사항으로써 가입신청 또는 영농계획 변경 시에 통지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통지를 하지 않거나, 또는 부실한 통지를 한 경우
 - ② 다음에 열거하는 중대한 사유
 - 가. 피보험자가 전국연합회에 보험금등의 수급을 목적으로 농업수입금액 감소를 발생시키거나, 또는 발생시키려고 한 경우
 - 나. 피보험자가 보험금등의 청구에 대해 사기를 하거나, 또는 사기를 하려고

한 경우

다. 피보험자가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6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인 것이 판명된 경우

라. '가'부터 '다'까지에 열거하는 사유 외에 피보험자에 대한 신뢰를 손상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존속을 곤란하게 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보험료, 적립금 또는 사무비 지불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제2장 제2절 1의 ①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지불, ②의 규정에 의한 제1회째 분할보험료 지불, 제2장 제2절 2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지불, 3의 규정에 의한 사무비 지불, 또는 제2장 제3절의 2의 (1) 및 제3장 제2절 제1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혹은 사무비 증액분 지불을 지체한 경우

④ 사업연도 또는 연결사업연도의 변경

해당 보험기간에 관계되는 사업연도 또는 연결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 된 경우 또는 1년을 초과하게 된 경우

(2) 전국연합회는 (1)의 규정에 관계 없이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1)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제를 할 수 없다.

① 보험계약 체결 시에 전국연합회가 (1)의 ①의 사실을 알거나, 또는 과실에 의해 알지 못한 때

② 전국연합회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의 매개를 할 수 있는 자(전국연합회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를 제외. 이하 「보험매개자」라고 한다.)가 피보험자가 (1)의 ①의 사실의 통지를 하는 것을 방해한 때

③ 보험매개자가 피보험자에 대해 (1)의 ①의 사실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또는 부실 통지를 하는 것을 권유한 때

(3) (2)의 ② 및 ③의 규정은 해당 각 규정에서 규정하는 보험매개자의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해도 피보험자가 (1)의 ①의 사실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또는

부실 통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4) (1)의 ①의 해제권은 전국연합회가 해제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때부터 1개월간 행사하지 않을 때는 소멸한다.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5년간을 경과한 때도 마찬가지이다.
- (5) (1)의 규정에 의해 보험계약을 해제한 경우(적립방식에 한해 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전국연합회는 적립방식의 적립금 잔여를 반환한다.
- (6) (1)의 규정에 의해 보험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전국연합회는 보험기간 개시일까지 해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지불된 보험료 및 사무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1)의 ④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제를 한 경우는 이미 지불된 보험료의 전액 및 이미 지불된 사무비의 보험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월할(月割)로 계산한 금액을 반환한다.
- (7) (1)의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제(제2장 제2절 1의 ①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지불, 제2장 제2절 1의 ②의 규정에 의한 제1회째 분할 보험료 지불, 제2장 제2절의 3의 규정에 의한 사무비 지불을 지체한 경우의 해제를 제외한다.)를 한 경우이더라도 전국연합회는 피보험자로부터 아직 지불되지 않은 보험료 및 사무비를 징수한다.

제6. 해제의 효력

- (1) 보험계약의 해제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 전국연합회는 보험계약의 해제를 한 경우에는 농업수입금액의 감소를 보전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경우에 이미 보험금등을 지불한 때는 전국연합회는 피보험자에게 반환을 청구한다.

제3절 기타

제1. 시효

- (1) 피보험자가 보험금등을 청구하는 권리는 보험기간종료일(제5장 제4의 규정에 의해 보험금등의 청구를 한 경우는 제5의 보험금등의 지불기한)의 익일부터 기산(起算)하여 3년간 행하지 않을 때는 시효에 따라 소멸한다.
- (2) 피보험자가 보험료, 적립금 및 사무비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는 제2장 제3절의 2의 (2) 및 제3장 제2절 제2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반환 기일의 익일부터, 기타의 경우에는 그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3년간 행해지지 않은 때는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 (3) 전국연합회가 보험료, 적립금 및 사무비를 청구하는 권리는 각각의 지불기한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1년간, 보험금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는 보험금의 반환의 사유가 생긴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10년간 행하지 않을 때는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제2. 유사제도로부터 수입보험으로 이행하는 경우의 유의점

- (1) 수입보험 가입신청을 하는 자가 유사제도에 가입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기간 개시일까지 해당 유사제도를 해약할 필요가 있다.
- (2) 수입보험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이더라도 다음에 열거하는 유사제도의 가입절차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① 공제사업
 - 가. 농작물공제, 과수공제의 수확공제 또는 발작물공제(공제책임기간의 종료일이 해당 보험기간 외인 경우에 한한다.)
 - 나. 원예시설공제 중 시설 내 농작물을 공제목적으로 하는 것(시설 내 농작물의 재배기간이 해당 보험기간 외인 경우에 한한다.)
 - ②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규칙 및 독립행정법인 농축

산업진흥기구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제1장 제4절의 ④의 나의 (가)로부터 (마)까지 열거하는 사업(동 사업에 관계되는 교부금 대상으로 하는 기간이 해당 보험기간 외인 경우에 한한다.)

- ③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진흥기구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가공원료유생산자 경영안정대책사업(동 사업에 관계되는 보전금의 대상으로 하는 기간이 해당 보험기간 외인 경우에 한한다.)
- ④ 후계자경영안정법에 근거하여 경영소득안정대책시행요강에 근거한 수입 감소영향완화교부금을 교부하는 사업(동 사업에 관계되는 교부금의 대상으로 하는 농산물의 수확기가 해당 보험기간 외인 경우에 한한다.)
- ⑤ 골풀·다다미거죽 농가경영소득안정화대책사업실시요강에 근거한 골풀·다다미거죽 농가경영소득안정화대책사업(동 사업에 관계되는 지원금 대상으로 하는 농산물의 수확기가 해당 보험기간 외인 경우에 한한다.)

제3. 청색신고에 수정신고가 발생한 경우의 취급

- (1) 전국연합회는 피보험자가 과거의 청색신고의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실적농업수입금액이 수정된 경우는 전국연합회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 수정이 발생한 수입에 관계되는 연도의 「과거의 농업수입금액신고서」(양식 2호)를 수정 전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 및 수정신고한 청색신고결산서 등을 제출한다.
- (2) 전국연합회는 피보험자로부터 실적농업수입금액을 수정한 취지의 신청이 있는 경우는 수정이 있던 연도 이후의 보험관계에 대해 기준수입금액등을 재산정하고, 이것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보험료, 적립금 및 사무비를 재산정한다.
- (3) 전국연합회는 (2)의 재산정 후 제3장 제1절 제2의 2의 규정에 준해 「보험증서」(양식 7호)를 작성하고 신속히 피보험자에게 교부한다.
- (4) (2)의 재산정에 의해 보험료, 적립금 및 사무비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제3

장 제2절의 규정에 준해 「보험료 및 적립금 변경통지서」(양식 9호)를 작성하고,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적립금 및 사무비 추가지불의 청구 또는 반환을 실시한다.

- (5) 이미 지불된 보험금등의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는 전국연합회는 보험금등을 재산정하고, 피보험자에게 보험금등의 추가지불 또는 반환 청구를 한다.

제4. 금융상품의 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권유방침의 책정

전국연합회는 금융상품의 판매등에 관한 법률(2000년 법률 제101호) 제9조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에 관계되는 권유에 관한 방침을 정함과 아울러 이것을 공표한다.

제5. 전국연합회의 문서 보존기간

- (1) 전국연합회의 농업경영수입보험에 관계되는 다음에 열거하는 문서(도면 및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기타 사람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록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에 대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기간을 보존기간으로 한다. 단, 특단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전국연합회는 보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① 전국연합회가 본 요령에 근거하여 작성 또는 취득하는 문서 및 해당 문서의 작성근거로 되는 문서(②에 관계되는 것을 제외한다.)

7년간

- ② 재보험인수통지서, 재보험금청구서, 재보험금개산불청구서, 기타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하는 문서

10년간

- (2) (1)의 문서의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문서를 작성 또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년도의 4월 1일로 한다.

(별지1)

기준수입금액 산정방법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수입금액 조정방법

보험자격자가 '1'에 열거하는 기준수입금액 산정방법 특례의 적용에 대해 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 보험자격자가 해당 특례별로 정하는 요건에 모두 해당할 때, 전국연합회는 '2'에 열거하는 금액(보험자격자가 규모확대 특례 및 수입상승경향 특례의 양쪽에 대해 신청을 하고 있는 경우는 2의 (1) 및 (2)에 열거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을 해당 보험자격자의 기준수입금액으로 정한다. 단, 해당 '2'에 열거하는 금액이 예상농업수입금액을 상회하는 경우는 예상농업수입금액을 기준수입금액으로 하여 정한다.

1. 기준수입금액 산정방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

(1) 규모확대 특례

- ① 예상농업수입금액이 과거의 평균수입을 상회할 것.
- ② 보험기간에서의 보험자격자의 경영면적이 가입신청일이 속하는 연도까지의 5년간(농업경영을 실시한 기간이 5년이 안 될 때는 그 시행 기간)의 경영면적(농업경영을 승계 또는 양수한 경우는 해당 승계, 또는 양수한 경영면적을 포함한다.)의 평균을 상회할 것.

(주1) 경영면적에는 별의 사유에 관한 경영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주2) 「가입신청일이 속하는 연도까지의 5년간(농업경영을 실시한 기간이 5년을 채우지 못하는 때는 그 실시 기간)」에는 청색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지 않는 연도도 포함한다.

(주3) 경영면적의 평균은 가입신청일에 가입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경영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그것을 뺀 각 연도의 경영면적을 이용

하여 계산하고, 가입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경영면적이 확정된 단계에서 그것을 추가하여 재산정한다.

(2) 수입상승경향 특례

- ① 보험자격자가 가입신청일이 속하는 연도까지의 5년간에 청색신고서를 제출한 자(제8장 제1절 제2에 의해 청색신고 제출년도의 연수 또는 사업연도수가 가입신청일이 속하는 연도까지의 5년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일 것.
- ② 예상농업수입금액이 과거의 평균수입을 상회할 것.
- ③ 실적농업수입금액의 평균증감률이 1을 상회할 것.

2. 특례를 적용한 경우의 기준수입금액

(1) 규모확대 특례

$$\text{기준수입금액} = \text{보험자격자의 단위면적당 과거의 평균수입} \times \text{보험기간에서의 보험자격자의 경영면적}$$

단위면적당 과거의 평균수입은 가입신청일이 속하는 연도까지의 5년간(가입신청일이 속하는 연도까지의 청색신고 제출년의 연수(年數) 또는 사업연도수가 5년을 채우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입신청일이 속하는 연도까지의 해당 연수(年數) 또는 사업연도 수)에 대해 각 연도의 실적농업수입금액을 해당 각 연도의 경영면적에서 제외하고 얻은 금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경영면적이 0인 연도는 제외한다.).

더욱이, 가입신청에서는 가입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까지의 4년간(가입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까지의 청색신고 제출년의 연수(年數) 또는 사업연도수가 4년에 미달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입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까지의 해당 연수 또는 사업연도 수)의 실적농업수입금액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가입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실적농업수입금액이 확정된 단계에서 해당 실적농업수입금액을 추가하여 재산정한다.

(주) 별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기준수입금액

= 보험자격자의 단위면적당 과거의 평균수입(벌 및 봉밀(蜂蜜)에 관한 것을 제외) × 보험기간의 보험자격자의 경영면적(벌의 사육에 관한 것을 제외)
+ 벌 및 봉밀에 관한 과거의 평균수입

더욱이, 가입신청에 대해서는 가입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까지의 4년간(가입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까지의 청색신고 제출년의 연수 또는 사업연도수 제출년의 연수 또는 사업연도가 4년을 채우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입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까지의 해당 연수 또는 사업연도수)의 실적농업수입금액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가입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실적농업수입금액이 확정된 단계에서 해당 실적농업수입금액을 추가하여 재계산한다.

(2) 수입상승경향 특례

기준수입금액 = 보험자격자의 해당 5년간의 과거 평균수입 × 실적농업수입금액의 평균증감률을 3승한 비율

실적농업수입금액의 평균증감률은 가입신청일이 속하는 연도까지의 4년간에 대해 각 연도의 실적농업수입금액을 그 전년의 실적농업수입금액으로 나누어 얻은 비율을 평균하여 얻은 율로 한다.

(주) 가입신청에 있어서는 가입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까지의 4년간의 실적농업수입금액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가입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실적농업수입금액이 확정된 단계에서 해당 실적농업수입금액을 추가하여 재계산한다.

기준수입금액 = 보험자격자의 해당 4년간의 과거의 평균수입 × 실적농업수입금액의 평균증감률을 3승한 율

(별지2)

수입보험 위험단계별 보험료율 설정방법

1. 기본적 사고

- (1) 국가는 원칙적으로 3년마다 과거 10년간의 각 연도의 피해율을 기초로 하여 보험료표준율을 정해 고시한다.
- (2) 전국연합회는 보험료표준율의 고시에 맞추어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서, 위험 단계구분별 예상보험금액에 의한 가중평균이 보험료표준율에 일치하도록 기준보험료율을 산정하고, 위험단계별 보험료율을 설정한다.
 - ① 위험단계 구분 수는 기준이 되는 구분을 중심으로 고위 구분과 저위 구분을 동수(同數) 설정하여 합계 21구분으로 한다.
 - ② 최저위 위험단계 구분의 기준보험료율은 보험료표준율의 5할의 율로 한다.
- (3) 피보험자에게 적용하는 위험단계 구분은 피보험자의 최근 10년간의 가중평균손해율(최근 연도의 가중치를 높인 각 연도의 손해율※의 가중평균)에 의해 매년 산정한다.

※ 손해율(= 보험금/보험료)
- (4) 피보험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이 극단적으로 변동하지 않도록 격변완화 조치를 강구한다.

2. 위험단계 설정

- (1) 피보험자별 평균손해율 정리
피보험자별 각 연도의 손해율을 정리하고, 과거 10년간의 평균손해율을 계산한다.
 - ① 피보험자별로 최근 10년간의 각 연도의 손해율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1의 (1)의 과거 10년간의 최종 연도와 해당 최근 연도를 자른다.

가. 각 연도의 손해율을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한다(「손해율」을 이용함으로써 위험단계별 보험료율의 설정에 있어서 보험한도액 구분의 차이를 감안할 필요가 없게 된다.).

$$\text{손해율} = \frac{\text{보험금}}{\text{표준보험료} \times 1} \left(= \frac{\text{피해율} \times 2}{\text{보험료표준율}} \right)$$

※1. 표준보험료 = 보험금액 × 보험료표준율

보험료표준율은 피보험자가 해당 연도에 가입한 보험한도액 구분에 대응하는 것

※2. 피해율 = 보험금 / 보험금액

나. 가입실적이 없는 연도의 손해율은 평균적 손해율이었다고 보고 100%로 한다.

② 최근 10년간의 각 연도의 손해율을 단순평균하여 평균손해율을 계산한다.

부표 1 10년간의 손해율 표 (예)

단위: %

	(n1-10)년	...	(n1-7)년	(n1-6)년	(n1-5)년	(n1-4)년	...	(n1-1)년	단순평균
손해율	100	...	100	338	0	102	...	71	103
	가입실적 없음			가입실적 있음					

자료: 농업경영수입보험사업 실시요령. p. 59.

(2) 위험단계 구분의 설정

위험단계 구분 및 각 구분에 대한 평균손해율의 범위를 설정한다.

① 위험단계 구분 수는 위험단계 구분 「0」을 중심으로 상하 10구분씩 합계 21구분으로 한다.

- ② 각 위험단계 구분에 대응하는 평균손해율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 위험단계 구분에 대응하는 평균손해율의 범위는 10%(= 100% ÷ 10 구분)의 폭을 기본으로 한다.
 나. 위험단계 구분 「0」의 평균손해율을 「95~105%」로 하고, 각 위험단계 구분의 평균손해율의 범위를 등간격으로 설정한다.
 다. 고위 손해율의 분포는 편차가 크기 때문에 평균적인 손해율(100%)의 대략 2배 이상의 평균손해율을 일괄로 하여 최고위 위험단계 구분의 평균손해율의 범위로 한다.
- ③ 각 위험단계 구분의 평균손해율의 범위에 대응하여 평균손해율이 해당 범위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를 해당 위험단계 구분에 속하는 것으로 정리한다. 더욱이,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위험단계 구분 「0」에 속한다.
- ④ 위험단계 구분별로 해당 구분에 속하는 피보험자의 예상보험금액을 합계한다. 더욱이, 보험한도액의 비율이 복수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피보험자의 보험한도액의 비율을 어느 특정 비율에 통일하도록 환산하여 보험금액을 예상한다.

예를 들면, 80%, 78%, 75%, 70%, 60%, 50%의 각 보험한도액의 비율에 대해 80%로 통일하는 경우는 78%를 선택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액에는 78분의 80을, 마찬가지로 75%, 70%, 60% 또는 50%를 선택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액에는 각각 75분의 80, 70분의 80, 60분의 80 또는 50분의 80을 곱함으로써 환산한다.

- ⑤ 각 위험단계 구분의 평균손해율의 대표치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 각 위험단계 구분의 평균손해율의 대표치는 평균손해율 범위의 중앙치로 한다.
 나. 최고위 위험단계 구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분에 속하는 피보험자의 평균손해율을 해당 피보험자별 예상보험금액으로 가중평균하여 얻은 율(표2의 예에서는 400%)을 대표치로 한다. 단, 해당 구분에 속하는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는 200%를 대표치로 한다.

(3) 위험지수의 설정

위험단계 구분별로 위험지수를 설정하고 압축한다.

- ① 각 위험단계 구분의 위험지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또, 최고위 위험단계 구분의 위험지수(위험지수의 최대치)를 K_{max} 로 호칭한다(표2의 예에서는 160).

$$\text{위험지수} = \frac{\text{각 위험단계 구분의 평균손해율의 대표치}}{\text{최저위 위험단계 구분의 평균손해율의 대표치}}$$

- ② 각 위험단계 구분의 위험지수를 각 위험단계 구분의 예상보험금액의 합계 금액에 의해 가중평균하고, 위험지수의 평균치를 산출한다(표2의 예에서는 40).
③ 위험지수를 다음과 같이 압축한다.

가. 보험료표준율에 대한 최저위 위험단계 구분의 기준보험료율 비율을 5할로 한다.
나. K_{max} (표 2의 예에서는 160)를 압축하는 배율을 다음 식에 의해 산출한다.

$$\text{압축하는 배율(倍率)} = \frac{r \times m + (1 - r) \times K_{max} - 1}{r \times (m - 1)}$$

단,

r : '가'의 비율(0.5)

m : ②에서 산출한 위험지수의 평균치(이 예에서는 40)

(따라서, 이 경우)

$$\frac{0.5 \times 40 + (1 - 0.5) \times 160 - 1}{0.5 \times (40 - 1)} \approx 5.08$$

다. 산출한 배율까지 K_{max} 를 압축하고(이 예에서는 5.08), 이에 대응하여 각 위험단계 구분의 위험지수를 다음 식에 의해 압축한다.

$$\text{압축 후 위험지수} = (\text{압축 전 위험지수} - 1) \times \frac{(\text{압축 후의 } K_{max})}{(\text{압축 전의 } K_{max})} + 1$$

부표 2 위험단계별 기준보험료를 산정의 준비에 관한 표 (예)

위험단계 구분	손해율(%)		위험 압축 전	지수	성명	예상보험금액 (만 엔)
	평균손해율(*)의 범위	대표치				
10	195 ≤ *	400(예)	160	5.08	A, B, C	1,630
9	185 ≤ * < 195	190	76	2.92	D	764
⋮	⋮	⋮	⋮	⋮	⋮	⋮
3	125 ≤ * < 135	130	52	2.31	I	1,150
2	115 ≤ * < 125	120	48	2.21	J, K	2,472
1	105 ≤ * < 115	110	44	2.10	L	2,744
0	95 ≤ * < 105	100	40	2.00	M, N	11,396
-1	85 ≤ * < 95	90	36	1.90	O	4,750
-2	75 ≤ * < 85	80	32	1.79	P	3,305
-3	65 ≤ * < 75	70	28	1.69	Q, R	6,073
⋮	⋮	⋮	⋮	⋮	⋮	⋮
-9	5 ≤ * < 15	10	4	1.08	-	0
-10	0 ≤ * < 5	2.5	1	1.00	X, Y, Z	126
			평균치			
			40			

자료: 농업경영수입보험사업 실시요령. p. 62.

3. 위험단계별 기준보험료율 및 위험단계별 보험료율 결정

(1) 위험단계별 기준보험료율 설정

보험한도액 구분별로 위험단계별 기준보험료율을 설정한다.

- ① 각 위험단계구분의 압축 후의 위험지수를 각 위험단계 구분의 예상보험금액의 합계금액에 의해 가중평균하고, 압축 후의 위험지수의 평균치를 산출한다(표의 예에서는 2.00).
- ② 다음 식에 의해 위험단계 구분별로 기준보험료율을 산정한다.

$$\text{각 위험단계 구분의 기준보험료율} = \text{보험료표준율} \times \frac{\text{각 위험단계구분의 압축 후 위험지수}}{\text{압축 후 위험지수의 평균치}}$$

(2) 위험단계별 보험료율 결정

전국연합회는 보험한도액 구분별로 (1)에서 산정한 각 위험단계 구분의 기준보험료율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규정에서 위험단계 구분별로 보

보험료를 결정한다(표3의 예는 보험료율의 상승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3) 위험단계별 보험료율의 공표

전국연합회는 (2)에 의해 위험단계별 보험료를 결정한 후 신속히 홈페이지 등에 공표함과 아울러 표3의 양식(압축 전 위험지수를 제외.)에 의해 국가에 보고한다.

부표 3 위험단계별 보험료율 표 (예)

보험한도액 구분(%)	80
보험료표준율(%)	2.500

위험단계 구분	평균손해율(*)의 범위(%)	위험지수		위험단계별 기준보험료율 (%)	위험단계별 보험료율 (%)
		압축 전			
10	195 ≤ *	160	5.08	6.346	6.346
9	185 ≤ * < 195	76	2.92	3.654	3.654
8	175 ≤ * < 185	72	2.82	3.526	3.526
⋮	⋮	⋮			
3	125 ≤ * < 135	52	2.31	2.885	2.885
2	115 ≤ * < 125	48	2.21	2.756	2.756
1	105 ≤ * < 115	44	2.10	2.628	2.628
0	95 ≤ * < 105	40	2.00	2.500	2.500
-1	85 ≤ * < 95	36	1.90	2.372	2.372
-2	75 ≤ * < 85	32	1.79	2.244	2.244
-3	65 ≤ * < 75	28	1.69	2.115	2.115
⋮	⋮	⋮			
-8	15 ≤ * < 25	8	1.18	1.474	1.474
-9	5 ≤ * < 15	4	1.08	1.346	1.346
-10	0 ≤ * < 5	1	1.00	1.250	1.250
		평균치			
		40	2.00		

자료: 농업경영수입보험사업 실시요령. p. 64.

4. 보험관계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의 판정

(1) 피보험자별 가중평균손해율 계산

매년 피보험자별로 가중평균손해율을 계산한다.

- ① 피보험자별로 최근 10년간의 각 연도의 손해율을 2의 (1)의 ①과 마찬가지로

정리한다. 단, 이 경우의 최근 연도는 보험료를 적용하는 보험관계에 관계되는 연도의 전년(前年)으로 한다.

- ② ①의 손해율에 대해 최근의 경영노력 상황 등이 좀 더 위험단계에 반영되도록 최근년도일수록 커지는 가중치(weight)에 의한 가중평균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가. 각 연도의 손해율에 다음에 열거하는 가중치를 곱한다.

10년전	9년전	8년전	7년전	6년전	5년전	4년전	3년전	2년전	전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나. ‘가’의 10년간의 합계를 가중치의 합계인 550으로 나눈다(표4의 예에서는 $37,120 \div 550 \approx 67$).

부표 4 10년간의 손해율 표 (예)

	(n2-10) 년	...	(n2-7) 년	(n2-6) 년	(n2-5) 년	(n2-4) 년	...	(n2-1) 년	합계
손해율(A)	100	...	0	102	80	40	...	58	
	↓	...	↓	↓	↓	↓	...	↓	
weight (B)	10	...	40	50	60	70	...	100	550
(A)×(B)	1,000	...	0	5,100	4,800	2,800	...	5,600	37,120

자료: 농업경영수입보험사업 실시요령. p. 65.

(2) 위험단계 구분의 판정 및 보험료율의 적용

매년 피보험자별 가중평균손해율에 의해 적용할 위험단계 구분을 판정하고, 그 연도의 보험한도액 구분에 대해 대응하는 보험료를 그 해의 보험관계에 적용한다.

- ① (1)에서 계산한 피보험자별 가중평균손해율(*)을 위험단계별 보험료율 표의 평균손해율의 범위에 맞추어 그 보험관계에 적용할 위험단계 구분을 판정한다.

※ 매년 피보험자별 손해율 데이터를 1년분 갱신하고, 가중평균손해율을

재계산하여 사용한다(표5의 예에서는 익년의 가중평균손해율은 79(= 43,250 ÷ 550).

부표 5 10년간의 손해율 표 (예: 부표 4의 익년)

	(n2-9) 년	...	(n2-6) 년	(n2-5) 년	(n2-4) 년	...	(n2-1) 년	n년	합계
손해율(A)	100	...	102	80	40	...	56	150	
	↓	...	↓	↓	↓	...	↓		
weight(B)	10	...	40	50	60	...	90	100	550
(A)×(B)	1,000	...	4,080	4,000	2,400	...	5,040	15,000	43,250

자료: 농업경영수입보험사업 실시요령. p. 66.

- ② 해당 위험단계 구분의 보험료율 중 그 연도의 보험관계가 속하는 보험한도액 구분에 속해 정해지는 것을 적용한다.

(3) 격변완화조치의 실시

전국연합회는 피보험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이 극단적으로 변동하지 않도록 격변완화조치를 강구한다.

- ① 위험단계 구분의 인상은 격변완화조치로써 연 최대 3구분까지에서 그친다.
- ② 격변완화조치가 적용된 자에 대해 익년 이후 갱신된 가중평균손해율에 의해 위험단계 구분의 판정이 ‘가’ 또는 ‘나’에 해당할 때는 각각 ‘가’ 또는 ‘나’에서 정하는 대로 한다.

가. 전년에 보험금 지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익년의 위험단계 구분이 전년보다 상위 위험단계구분이라고 판정되는 경우
전년과 동일한 위험단계 구분을 적용한다.

나. 익년의 위험단계 구분이 전년보다 2구간 이상 하위 위험단계 구분이라고 판정되는 경우
최저위 위험단계구분에 달할 때까지는 전년보다 1구간 하위 위험단계구분을 적용한다.

(별지3)

면책의 범위 및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험금 및 특약보전금 계산방법

1. 면책의 범위

전국연합회는 피보험자가 제1장 제15절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 및 특약보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전부면책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보험금 및 특약보전금은 전액 지불하지 않는다.

(2) 일부면책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대상 농산물등의 범위를 특정한 경우는 해당하는 대상 농산물등의 범위에 대해 보험금 및 특약보전금을 감액한다.

2.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험금 및 특약보전금 계산방법

보험금 및 특약보전금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방법에 의해 보험기간의 농업수입금액을 조정하고, 보험금 및 특약보전금을 계산한다.

(1) 전부면책의 경우

보험기간 중의 예상농업수입금액을 보험기간 중의 농업수입금액으로 한다.

(2) 일부면책의 경우

대상 농산물등별로 다음 방법에 의해 보험기간 중의 농업수입금액을 조정한다.

① 대상 농산물등 단위로 일부면책으로 하는 경우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대상 농산물등의 보험기간 중의 예상농업수입금액을 해당 대상 농산물등의 보험기간 중의 농업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수량단위 또는 경지단위로 일부면책으로 하는 경우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대상 농산물등에 대해 피보험자로부터 신고가 있었던 보험기간 중의 농업수입금액에 면책사유에 관계되는 수량에 대응하는 예상 농업수입금액을 가산한 것을 해당 대상 농산물등의 보험기간 중의 농업수입 금액으로 한다.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대상 농산물등의 보험기간 중 농업수입금액(조정 후)
= 피보험자로부터 신고가 있었던 대상 농산물등의 보험기간 중 농업수입금액
+ 해당 대상 농산물등의 예상농업수입금액 × 해당 대상 농산물등의 면책비율

면책비율 = 면책사유에 관계되는 수량 /
(「보험기간의 영농계획에 기초한 보험기간 중에 예상되는 농업수입금액」의 예상기초재고 수량
+ 예상수확수량)

참고문헌

- 김미복·황의식·유찬희·허주녕. 2015. 『농업재해보험 사업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진수. 2018. “1. 오스트리아.” 『주요 선진국의 농작업 재해보장 비교 연구』. 국립농업과학원·연세대학교. pp. 53-75.
- 김태후·김성섭·서상택. 2017. 3.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 조정 방안.” 『農業經濟研究』(한국농업경제학회) 제58권 제1호(2017년 3월). pp. 73-96.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연세대학교. 2016. 『주요국의 농업인 재해보장체계』.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연세대학교. 2018. 『주요 선진국의 농작업 재해보장 비교 연구』.
- 배준호·김규판·김명중·문성현·임현정·선우덕·오현석·전영수·정성춘·정형선·조성호·최동원. 2018.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주요국사회보장제도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나남.
- 백혜연·조성호·장인수·이항석. 2018. 『농작업 재해 실태조사 및 농업인안전보험 제도개선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찬희·김미복·김영준. 2015. 『농업인 안전보험료 차등지원 방안 연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최경환. 2018. “70주년을 맞은 일본 농업보험의 성과와 과제.” 『농업재해보험』 2018 가을호 (vol. 19).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보험금융원·(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 최경환. 2019. “일본의 농업경영수입보험 실시와 시사점.” 『세계농업』 제22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경환·박대식. 2001. 『농업재해대책의 실태와 개선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경환·박대식·허주녕·고성진·송태균. 2010. 『농어민 전문병원 설치 및 지원방안 검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高橋 博. 2019. 1. “二つの制度で確かな補償を.” 月刊NOSAI(全國農業共濟協會). p. 1.
- 吉井 邦恒. 2019. 1. “收入保險の加入推進について - アメリカの經營單位收入保險事例を中心に.” 月刊NOSAI(全國農業共濟協會). pp. 10-16.
- 農林水産省. 2018.4a. 農業共濟制度の見直について.(리플릿)
- 農林水産省. 2018.4b. 農業共濟制度の見直について.
- 農林水産省. 2018. 6a. 收入保險制度の導入について.
- 農林水産省. 2018. 6b. 收入保險制度の導入と農業共濟制度の見直し.

- 農林水産省. 2018. 8. 収入保険がはじまります!.
- 農林水産省. 2018. 10. 収入保険に関するQ&A.
- 農林水産省. 2018. 10. 23. 農業経営収入保険事業実施要領.
- 農林水産省. 2019. 1. 28. 農作業安全対策について.
- 農林水産省・厚生労働省. “必見! 農業者の皆さん 労災保険の特別加入をご存じですか!!”
- 三廻部真己. 2010. 『農作業事故の防ぎ方と労災補償』. 家の光協会.
- 安藤光義. 2017. 9. “収入保険制度を巡念る課題.” 月刊NOSAI(全国共済協会) 平成 29年 9月號). pp. 4-13.
- 前川 寛 編著. 2007. 『農家のためのリスク マネジメント』. 家の光協会.
- 中嶋 康博. 2019. 1. “戦後農政の變遷と収入保険の現代的意義.” 月刊NOSAI(全国農業共済協会). pp. 5-9.
- 厚生労働省・都道府縣労働局・労働基準監督署. 2019. 3. 労災保険: 農業者のための特別加入制度のしおり.
- Barry K. Goodwin and Vincent H. Smith. 1995. The Economics of Crop Insurance and Disaster Aid. The AEI Press, Washington, D.C.
- JA共済. 2019. 4. 傷害共済-突然の災害による死亡・ケガに備えられる充實のプラン.(리플릿)
- 農林水産省 農業安全対策.
<www.maff.go.jp/j/seisan/sien/sizai/s_kikaika/anzen/index.html>. 검색일: 2019. 7. 5.